

농축산식품(제1부~제4부) HSK 품목분류체계 개선방안

조현기·이민우

농축산식품(제1부~제4부) HSK 품목분류체계 개선방안

조현기 · 이민우

연구진

연구책임 | **조현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 **이민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5-07

농축산식품(제1부~제4부) HSK 품목분류체계 개선방안

발행 | 2026. 01.

발행인 | 이종우

발행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22 7층

홈페이지 www.kctdi.or.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I S B N | 978-89-6162-178-6

e-I S B N | 978-89-6162-179-3

※ 허락 없이 본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차례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3
2. 연구 필요성	6
3. 선행연구 검토	7
4. 연구 내용	8
5. 연구 방법	8

제 2 장 농축산식품 시장 현황

1. 개요	13
2. 식량 수급 현황	14
3. 국제무역 현황	18
4. 우리나라 무역 현황	21

제 3 장 제1부~제4부 HSK 체계 분석

1. HS와 품목분류	27
2. 제1부~제4부 분류체계	32
3. 세분화 수준 검토	38
4. 최근 개정 사항	41

제 4 장 HSK 체계 개선안

제1절 분석 범위	47
1. 범위의 설정 방법	47
2. 분석 대상 품목번호	50
제2절 품목별 검토 의견	52
1. 제1부 동물성 생산품	52
2. 제2부 식물성 생산품	88
3. 제3부 동물성·식물성 유지 등	107
4. 제4부 조제 식료품	111
5. 그 외 품목	172
제3절 개선안	186

제 5 장 결론

1. 시사점	193
2. 연구 한계점	195
3. 제언	195

참고문헌	197
------	-----

부록	199
----	-----

표 차례

〈표 2-1〉 2023년 양곡 수급(잠정) 상황	15
〈표 2-2〉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수급 현황	16
〈표 2-3〉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급 현황	17
〈표 2-4〉 2019년~2023년 사료 수급 현황	18
〈표 2-5〉 2020년~2025년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	19
〈표 2-6〉 2022년~2024년 수출입 규모 상위 10개 품목	23
〈표 3-1〉 HS 제1부~제4부 표제	32
〈표 3-2〉 HS 제1부~제4부 류	33
〈표 3-3〉 HS 제1부~제4부 국가별 품목번호(10단위) 개수 (Table)	39
〈표 3-4〉 HS 제1부~제4부 '기타' 품명 품목번호 신고 금액 비중	41
〈표 4-1〉 연도별 교역액 상위 10개 품목번호(유형 1)	48
〈표 4-2〉 연도별 '기타' 품명 품목번호 신고 금액 비중(유형 2)	49
〈표 4-3〉 분석 대상 HSK 품목번호(유형 1·2) 및 교역액	51
〈표 4-4〉 제0201호 및 제0202호 HSK 분류체계	53
〈표 4-5〉 주요국 분류체계(제0201.30호 및 제0202.30호) 비교	54
〈표 4-6〉 미국 분류체계 제2류 국내 주	56
〈표 4-7〉 쇠고기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57
〈표 4-8〉 수입육의 부위별 한글명칭	58
〈표 4-9〉 쇠고기 HSK 분류체계 개선안	60
〈표 4-10〉 제0203호 HSK 분류체계	61
〈표 4-11〉 제0203.29-9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62
〈표 4-12〉 주요국 분류체계(제0203.29호) 비교	63
〈표 4-13〉 돼지고기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65
〈표 4-14〉 돼지고기 HSK 분류체계 개선안	67
〈표 4-15〉 연어과의 HSK 분류체계	68
〈표 4-16〉 주요국 분류체계(제0302.14호) 비교	70
〈표 4-17〉 명태 종류별 HSK 분류체계	72
〈표 4-18〉 제0303.67-0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72
〈표 4-19〉 제0306.17호의 HSK 분류체계	75

〈표 4-20〉 제0306.17-109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76
〈표 4-21〉 주요국 분류체계(제0306.17호) 비교	77
〈표 4-22〉 제0306.33호의 HSK 분류체계	79
〈표 4-23〉 제0306.33-9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79
〈표 4-24〉 주요국 분류체계(제0306.33호) 비교	81
〈표 4-25〉 제0307.43호의 HSK 분류체계	83
〈표 4-26〉 주요국 분류체계(제0307.43호) 비교	84
〈표 4-27〉 수입식품(수산물) 검역 중량	86
〈표 4-28〉 오징어 HSK 분류체계 개선안	87
〈표 4-29〉 제0803호 HSK 분류체계	88
〈표 4-30〉 제0803.90-0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89
〈표 4-31〉 주요국 분류체계(제0203.29호) 비교	90
〈표 4-32〉 바나나 HSK 분류체계 개선안	91
〈표 4-33〉 제0901호 HSK 분류체계	92
〈표 4-34〉 주요국 분류체계(제0901.11호 및 제0901.21호) 비교	94
〈표 4-35〉 품종별 원두 종류	95
〈표 4-36〉 커피 HSK 분류체계 개선안	97
〈표 4-37〉 제1001.99호 HSK 분류체계	98
〈표 4-38〉 제1001.99-209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98
〈표 4-39〉 주요국 분류체계(제0203.29호) 비교	100
〈표 4-40〉 제1001.99호 HSK 분류체계	102
〈표 4-41〉 제1214.90-909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103
〈표 4-42〉 주요국 분류체계(제1214.90호) 비교	104
〈표 4-43〉 사료용 건조 식물검역 검사 수량	106
〈표 4-44〉 사료용 식물 HSK 분류체계 개선안	107
〈표 4-45〉 제1511호 HSK 분류체계	108
〈표 4-46〉 제1511.90-9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108
〈표 4-47〉 주요국 분류체계(제1511.90호) 비교	109
〈표 4-48〉 팜유 HSK 분류체계 개선안	111
〈표 4-49〉 제1701호 HSK 분류체계	112
〈표 4-50〉 제1701.99-0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112
〈표 4-51〉 주요국 분류체계(제1701.99호) 비교	114
〈표 4-52〉 식품공전상 설탕류의 규격	115
〈표 4-53〉 제1701호 분류체계 개선안	116
〈표 4-54〉 제1704호 HSK 분류체계	117
〈표 4-55〉 주요국 분류체계(제1704.90호) 비교	119

〈표 4-56〉 제1704호 해설서 상 설탕제품 유형	121
〈표 4-57〉 제1704.90호 HSK 별 무역량(2024)	122
〈표 4-58〉 설탕과자 HSK 분류체계 개선안	123
〈표 4-59〉 제2103.90호 HSK 분류체계	124
〈표 4-60〉 제2103.90-909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126
〈표 4-61〉 주요국 분류체계(제2103.90호) 비교	128
〈표 4-62〉 제2103.90호 HSK 별 무역량(2025년 1월 ~ 10월)	130
〈표 4-63〉 기타 소스·혼합조미료 HSK 분류체계 개선안	132
〈표 4-64〉 제2106.90호 HSK 분류체계	133
〈표 4-65〉 제2106.90-9099호 표준품명·규격코드	134
〈표 4-66〉 주요국 분류체계(제2106.90호) 비교	137
〈표 4-67〉 HS 제2106호 해설 식이보조제 정의	139
〈표 4-68〉 식이보조제와 건강기능식품 정의 비교	140
〈표 4-69〉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규격	141
〈표 4-70〉 최근 5년간 품목군별 수입식품 검사 현황	142
〈표 4-71〉 HS 2028 제2107호(식이보조제 분류)	143
〈표 4-72〉 2024년 건강기능식품 유형별 생산 현황	144
〈표 4-73〉 HS 2028 제2107호 개정안	145
〈표 4-74〉 제2202.99호 HSK 분류체계	146
〈표 4-75〉 제2202.99-9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146
〈표 4-76〉 주요국 분류체계(제2202.99호) 비교	149
〈표 4-77〉 음료류 식품 유형 및 정의	150
〈표 4-78〉 국내 음료류 시장규모(2018~2022)	151
〈표 4-79〉 음료류 HSK 분류체계 개선안	152
〈표 4-80〉 맥주와 포도주의 HSK 분류체계 비교	153
〈표 4-81〉 주요국 분류체계(제2203.00호) 비교	155
〈표 4-82〉 맥주 HSK 분류체계 개선안	157
〈표 4-83〉 주요국 분류체계(제2303.10호) 비교	158
〈표 4-84〉 전분박의 기준 및 규격	159
〈표 4-85〉 전분박 HSK 분류체계 개선안	160
〈표 4-86〉 주요국 분류체계(제2304.00호) 비교	162
〈표 4-87〉 대두박의 기준 및 규격	163
〈표 4-88〉 대두박 HSK 분류체계 개선안	164
〈표 4-89〉 제2306호 HSK 분류체계	164
〈표 4-90〉 주요국 분류체계(제2306.60호) 비교	166
〈표 4-91〉 팜유박의 기준 및 규격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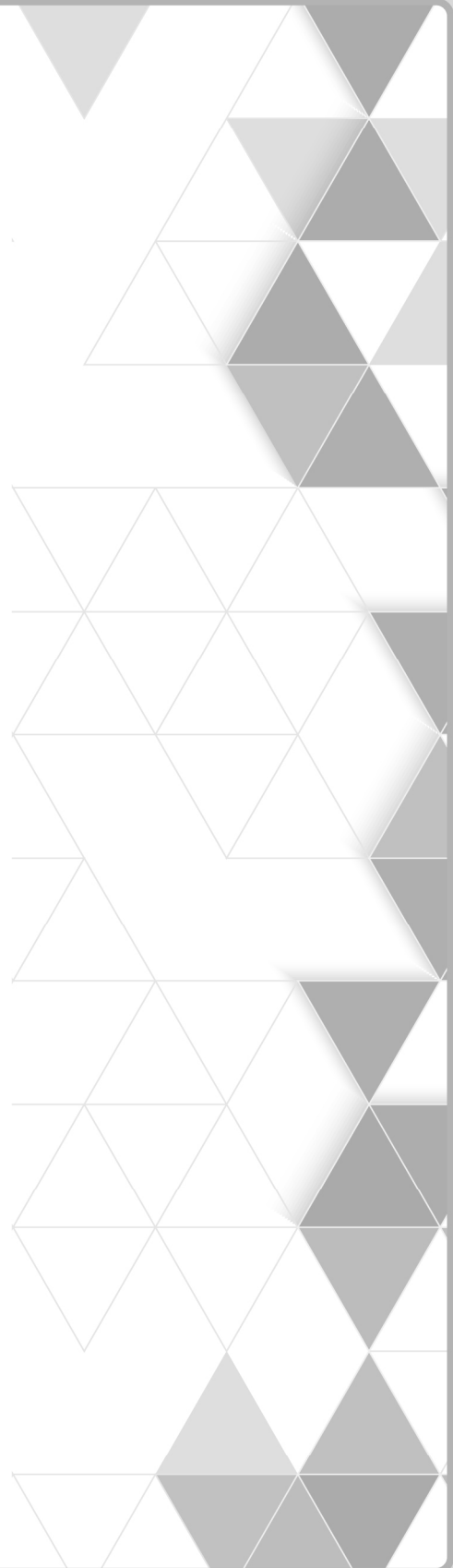
〈표 4-92〉 팜 너트·핵 오일케이크 HSK 분류체계 개선안	167
〈표 4-93〉 제2404호 HSK 분류체계	168
〈표 4-94〉 주요국 분류체계(제2404.11호) 비교	170
〈표 4-95〉 즉석식품류 식품 유형 및 정의	172
〈표 4-96〉 2024년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173
〈표 4-97〉 2024년 즉석섭취편의식품류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174
〈표 4-98〉 즉석식품 품목분류 사례	175
〈표 4-99〉 즉석식품 HSK 분류체계 개선안	176
〈표 4-100〉 대체식품의 품목분류 사례	178
〈표 4-101〉 대체식품 HSK 분류체계 개선안	179
〈표 4-102〉 국내 담배시장 중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판매 규모	181
〈표 4-103〉 가향담배 품목분류 체계(미국)	183
〈표 4-104〉 담배 종류별 정의 및 주요 유형	184
〈표 4-105〉 가향담배 HSK 분류체계 개선안	184
〈표 4-106〉 제1부~제4부 품목별 HSK 개선안	18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절차	9
[그림 2-1] 수입 상위 10개 국가(HS 제1부~제4부 기준)	20
[그림 2-2] 수출 상위 10개 국가(HS 제1부~제4부 기준)	20
[그림 2-3] 연도별 무역수지 동향(HS 제1부~제4부 기준)	21
[그림 2-4] 연도별-국가별 수입 금액 동향(HS 제1부~제4부 기준)	22
[그림 2-5] 연도별-국가별 수출 금액 동향(HS 제1부~제4부 기준)	22
[그림 3-1] HS 번호체계 예시	30
[그림 3-2] 표준품명·규격코드 예시	31
[그림 3-3] HS 제1부~제4부 국가별 품목번호(10단위) 개수 (Bar chart)	40
[그림 4-1] 제0201.30-0000호 및 제0202.3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54
[그림 4-2] 쇠고기 부위별 수입검역 현황(2025년 1월~8월)	58
[그림 4-3] 제0203.29-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63
[그림 4-4] 돼지고기 부위별 수입검역 현황(2025년 1월~8월)	66
[그림 4-5] 제0302.14-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69
[그림 4-6] 제0303.67-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73
[그림 4-7] 제0306.17-1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77
[그림 4-8] 제0306.33-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80
[그림 4-9] 제0307.43-2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84
[그림 4-10] 제0803.9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89
[그림 4-11] 제0901.11-0000호 및 제0901.21-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93
[그림 4-12] 커피 원두 품종별 국제 거래가격	96
[그림 4-13] 제1001.99-2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99
[그림 4-14] 제1214.90-9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04
[그림 4-15] 제1511.90-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09
[그림 4-16] 제1701.99-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13
[그림 4-17] 제1701.99-0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114
[그림 4-18] 제1704.90-2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18
[그림 4-19] 제1704.90-209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119
[그림 4-20] 제2103.90-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27
[그림 4-21] 제2103.90-9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128

[그림 4-22]	제2106.90-9099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35
[그림 4-23]	제2106.90-9099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136
[그림 4-24]	제2202.99-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47
[그림 4-25]	제2202.99-9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148
[그림 4-26]	제2203.0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54
[그림 4-27]	제2203.00-0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155
[그림 4-28]	제2303.1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58
[그림 4-29]	제2304.0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61
[그림 4-30]	제2306.6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65
[그림 4-31]	제2404.11-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169
[그림 4-32]	제2404.11-0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170

1. 서론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해 식량 공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식량자급률은 49%로,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자원의 자급도는 매우 낮다. 특히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2.2%에 불과하여, 축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옥수수·밀·콩 등 사료용 곡물의 해외 의존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¹⁾.

최근 기후변화, 팬데믹,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제한되자, 밀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한 사례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식량안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식량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전형적인 순수입국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 규모는 중국·일본·멕시코 등에 이어 세계 7위에 해당한다²⁾. 무역수지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였으나, 농식품 부문의 무역수지는 3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³⁾. 이는 식량 공급의 해외 의존 구조가 국가 전체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4.

2) 국회예산정책처, “곡물수급안정사업 정책분석”, 2021.

무역수지의 구조적인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 농축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다만 국내 생산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운 일부 농축산물과 조제 식품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 식량 작물인 쌀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하여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과자·베이커리 제품에는 8%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미국·중국·EU·호주 등 주요 농축산물 수입 상대국과 체결한 FTA로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역 물품에 관세율이 철폐·인하되면서, 관세를 통한 시장 보호 기능은 과거보다 약화된 상태이다.

농축산물 대외무역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다만 최근의 통상환경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24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이 2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최대 수입국 임에도 불구하고⁴⁾,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계 해소를 명분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지속하여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양국 사이에 무역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미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로 한 시장 개방 압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식량안보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치적 민감성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 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예기치 못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식량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수급관리 정책의 설계·집행·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무역통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무역통계의 수집 기반이 되는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는 농축산·식품 분야의 단순한 체계로 인해, 품목별 특성에 따른 무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HSK는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결정과 무역통계 작성을 위한 상품 분류체계로, 1988년에 발효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를 국내 규칙으로 수용한 것이다. HSK 품목번호는 관세부과와 무역통계 작성 기준이 되는 10자리의 숫자 코드로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통해 결정된다. 품목번호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수출입 요건, 간이환급액, 원산지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무역 과정에서 상품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분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5.

4) USMEF, "U.S. Pork Exports Record-Large in 2024; Beef Export Value Trends Higher", 2025.

무역통계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수출입 금액이 집계되기 때문에, 통계 측면에서도 품목 분류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HSK가 다양한 국제무역 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얼마나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통계의 활용 가능성과 정책적 유용성이 크게 좌우된다.

HS의 분류체계는 가장 큰 범주인 부(Section)에서 류(Chapter)·호(Heading)·소호(Subheading)의 순서로 수직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부’는 총 21개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식량 공급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축산·식품류는 주로 제1부부터 제4부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 HSK의 제1부부터 제4부는 미국·EU 등 농축산업 강국의 분류체계 대비 세분화 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품명이 ‘기타’인 품목번호의 사용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다양한 교역 상품의 체계적 분류에 한계가 있다. 2024년에 제1부부터 제4부 상품의 수출입 금액 526억 달러 중 ‘기타’ 품목번호로 신고된 금액은 174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33%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품이 집중된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의 수출입 금액 중 ‘기타’ 품목번호 신고 비중이 19%에 불과한 점과 대비된다.

‘기타’ 품목번호는 현재의 분류 기준으로는 특정 번호에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품목들을 포괄하는 잔여 호로, 모든 수출입 물품을 예외 없이 분류체계 내에 수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기타’ 품목번호의 사용 비중이 너무 높으면 교역 물품의 실체가 통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고, 그 결과 품목별 수급 파악과 관리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분류체계 중 세부 분류가 미비하거나 ‘기타’ 품목번호 사용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품목군에 대하여 신규 품목번호를 신설함으로써, 하위 분류 단위에서 더욱 정밀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수급 관리 정책 부문에서 무역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급망 위기, 시장개방 확대 등 급변하는 대외무역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제1부~제4부 HSK 분류체계의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류 품목의 특성, 무역 패턴, 주요 교역상대국의 분류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HSK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필요성

HSK의 기본원칙은 모든 수출입 물품이 통관단계에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류체에 따라 물품의 색인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⁵⁾.

HSK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체계적 분류는 국가 무역통계 자료 수집을 위한 기준이 된다. 무역통계는 국가별·상품별 수출입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 무역정책 수립뿐 아니라, 시장 분석, 기업 의사결정 등 국민 경제활동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국내 가격 안정, 수급 관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제1부부터 제4부까지 현행 HSK는 주요국의 분류체계에 비해 세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구조가 단순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주요 축산물인 돼지고기(HS 0203)의 경우, HSK의 10단위 품목번호는 8개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14개, EU는 30개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울러 ‘기타’ 품목번호의 사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통계 작성 시 해당 번호에 교역량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수급 관리 등 필요한 정책 조치를 설계·집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식량안보 위협 요인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정밀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식량안보 상 중요 품목의 수급 파악과 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류체계의 세분화 수준이 주요 교역상대국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 국가 간 통계와 관세 체계 비교·분석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부부터 제4부 내에서 주요 교역상대국 수준의 세분화가 필요한 영역을 선별해 10단위 품목번호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수급 관리와 통계 작성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HSK 체계에서는 개별 무역량 파악이 어려운 품목과 ‘기타’ 품목번호 사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군에 우선 순위를 둔다.

궁극적으로 농축산물·식품 분야에서 HSK의 통계 작성 기능을 강화하여 식량자원의 수급 관리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설계·집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교한 무역통계를 통해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5) 신성식·최해범, “HSK의 개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20.

3. 선행연구 검토

최세균 외(2006)는 관세 회피 방지와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의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주요국에 비해 단순한 현행 구조를 정비해 향후 시장개방 협상에서 관세율 감축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특히 ‘기타’로 포괄 분류되는 품목에 개별 품목번호를 부여해 통계 작성과 적정 관세율 부과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임정빈 외(2008)는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분류체계가 주요국 대비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 설정 또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어 관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기준이 가공단계 및 품목별 기준을 주로 사용하는 데 반해, 주요국은 성분, 용도, 포장 규격, 품질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관세의 산업 보호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적정 관세의 부과 및 이를 통한 시장 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정환 외(2007)는 유제품 분야에서 고율 관세 회피를 위해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유사품목이 대량 수입됨에 따라 국산 제품의 시장수요가 잠식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체품의 분류를 품목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수입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신성식 외(2020)는 미국·EU·중국·일본의 품목분류체계의 세분화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및 추가적인 코드 부여체계를 대비한 HSK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품목에 신설 코드를 부여할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맞물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체식품의 HS 품목분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지수(2025)는 대체식품의 품목분류 현황을 분석하고, 대체식품에 따른 HS 품목분류 변화가 관세 및 수출입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식품 분야로 HS 품목분류 논의를 확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HS 품목분류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고, 주요 주제를 탐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분류체계상의 문제 진단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분류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낙농품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된 연구를 제외하면 제1부부터 제4부까지 농축산·식품

류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식량안보 이슈와 맞물려 농축산물·식품 교역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HSK의 역할이 증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HSK 분류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1부부터 제4부의 세부 품목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먼저 농축산물·식품 시장의 국내외 현황과 무역 지표를 개괄하였다. 다음으로 농축산물·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HSK 제1부부터 제4부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체계의 세분화 정도를 다른 경제권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분류체계상 개편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한 뒤, 세분화(10단위 품목번호 신설·조정) 등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연구 방법

본 연구는 HS 제1부부터 제4부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및 식품 분야를 논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해당 부 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HSK 품목번호를 특정하는 절차를 분석에 앞서 선행하였다.

먼저, 검토 대상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HS 6단위의 국제 공통 분류에서 우리나라가 10단위로의 추가적인 세분화를 실행하지 않은 품목. 둘째, 동일 6단위 내에서 ‘기타’ 품목번호로 무역 통계 집계가 과도하게 집중된 품목. 셋째, 앞선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계상 목적, 무역 패턴,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세분화 필요성이 뚜렷한 품목이 각각의 유형에 해당한다. 1·2 유형의 경우 연구 실효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교역액 상위 품목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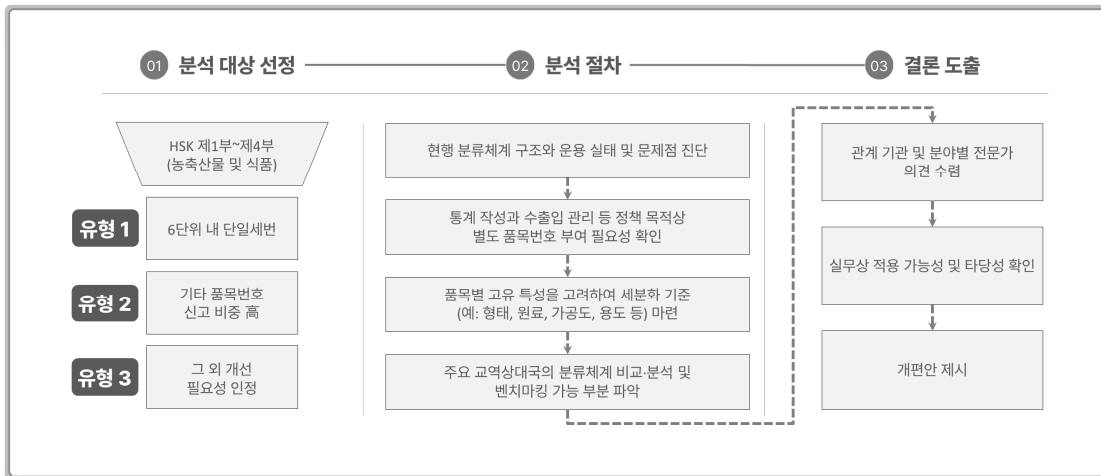
분류체계 개편안 도출을 위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검토 품목에 대해 현행 분류체계의 구조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품목번호 편중, 세분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둘째, 통계 작성과 수출입 관리 등 정책 목적상 별도 품목번호 부여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셋째,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 기준(예: 형태, 원료, 가공도, 용도 등)을 마련한다. 넷째,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분류체계와의 차이를 검토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

여 분류 실무상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현행 HSK 체계에 10단위 품목번호의 조정, 신설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실용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확보한다.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절차



II. 농축산식품 시장 현황

• 제1부~제4부 HSK 체계 연구 •

제2장

농축산식품 시장 현황

1. 개요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축산·식품 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동 산업은 농·축·수산물 등 1차 산물의 생산부터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제조·유통·소비에 이르는 광범위한 가치사슬을 포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중요성 또한 크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팬데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 자급 기반 강화를 위한 농축산·식품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지 부족, 산업의 영세성, 농촌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식량 자급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양곡·채소·육류는 물론, 축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사료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높은 수입 의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식량 공급 구조가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인류의 주식인 곡물의 국제 공급은 미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제한적인 공급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입 구조는 국제 가격 급등이나 공급 차질 발생 시 국내 수급 안정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농축산·식품 분야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높

은 수입 의존도에 따른 무역수지 불균형이 고착된 상황이다.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부 수급 충격에 취약한 식량안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단기간에 수입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생산 기반의 단계적 강화와 안정적인 해외 조달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자급과 수입 간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시장에서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식량 수급 현황

식량 수급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낮은 자급률은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외부 공급 충격에 따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자급 수준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세한 농업 산업구조, 농지·노동력 부족, 시장개방 확대,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법 도출이 쉽지 않다. 이러한 복합적인 제약 속에서 국제 식량의 가격·수급 변동은 국내 물가와 경제 상황, 나아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양곡 수급

양곡은 미곡·맥류, 그 밖의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등을 말한다⁶⁾.

양곡에는 쌀, 보리, 밀, 감자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주요 식량 작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양곡의 안정적 수급은 식량 확보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핵심 식량자원인 양곡의 수급 지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국내 자급 기반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4%에 불과하며, 같은 해 양곡 총공급 2,573만 톤 중 수입량이 1,744만 톤으로 약 68%를 차지했다⁷⁾.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식인 쌀의 경우 국내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밀·옥수수·대두는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사료 수요를 반영한 곡물자급률은 22.2%에 불과한데, 이는 사료 곡물(밀·옥수수·대두)을 중심으로 자급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6)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4.

〈표 2-1〉 2023년 양곡 수급(잠정) 상황

단위: 천 톤

연도	구분	합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23년	공급	25,731	5,334	353	5,069	12,134	1,508	938	395
	전년이월	3,272	1,302	59	744	1,042	110	-	15
	생산	5,019	3,764	66	52	91	130	873	44
	수입	17,440	268	228	4,273	11,001	1,268	66	337
	수요량	22,715	3,924	295	4,519	11,260	1,400	938	379
	식량	4,721	2,896	28	1,113	86	98	490	10
	가공용	5,149	817	223	1,443	1,906	256	221	282
	사료	12,424	66	35	1,923	9,241	1,036	87	36
	해외원조	52	52	-	-	-	-	-	-
	종자	97	31	3	1	0.4	3	52	6
	수출	6	6	-	-	-	-	-	-
	감모, 기타	266	55	7	38	26	8	87	45
	식량자급도(%)	49.4	104.8	29.8	1.3	4.3	28.6	103.1	10.5
	곡물자급도(%)	22.2	-	22.4	1.1	0.8	9.3	93.0	11.5
2022년	식량자급도(%)	49.0	99.1	25.4	2.0	4.5	35.7	102.5	12.7
	곡물자급도(%)	22.3	-	28.0	0.7	0.8	7.7	93.4	9.4

* 자료 : 2024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주 : 1)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2) 옥수수 식용에 제과제빵용, 곡차용, 팝콘용, 콘크리츠용을 포함

2) 채소 수급

우리나라에서 각종 음식의 양념으로 널리 쓰이는 고추의 2019-2023년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자급률이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마늘과 양파는 같은 기간 자급률이 70~90%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고추 대비 양호한 자급 구조를 보인다.

다만 세 품목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에 자급률이 하락해(고추 37.7%→30.4%, 마늘 89.4%→88.3%, 양파 96.5%→88.8%), 전반적으로 자급 기반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2〉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품목	연도	수요	수요		공급	공급	
			소비	수출(이월)		생산	수입(이월)
고추	23년	204	149	54(1)	204	62	142(-)
	22년	206	156	50(-)	206	69	136(1)
	21년	226	172	53(1)	226	93	131(2)
	20년	199	145	52(2)	199	60	133(6)
	19년	207	160	42(5)	207	78	124(5)
마늘	23년	360	359	1(-)	360	318	40(2)
	22년	351	349	-(-)	351	273	78(-)
	21년	367	367	-(-)	367	309	54(4)
	20년	417	411	2(4)	417	363	50(4)
	19년	434	426	4(4)	434	388	40(6)
양파	23년	1,321	1,315	1(5)	1,321	1,173	145(3)
	22년	1,336	1,330	3(3)	1,336	1,196	140(-)
	21년	1,654	1,643	11(-)	1,654	1,577	64(13)
	20년	1,270	1,251	6(13)	1,270	1,168	99(3)
	19년	1,652	1,600	49(3)	1,652	1,594	58(-)

* 자료 : 2024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3) 축산물 수급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축산물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가 있으며, 모두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 공급원이다.

2019-2023년 수급 추이를 보면, 쇠고기는 자급률이 36.5%에서 40.0%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자급률은 쇠고기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20년 78.0%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73.5%까지 완만히 하락하였다. 닭고기도 2019년 78%대에서 2023년 70.0%로 하락하면서 자급 상황이 악화되었다.

종합하면,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쇠고기의 자급률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입 비중이 크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급 기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품목	연도	수요	공급	공급		자급률(%)
				생산	수입	
쇠고기	23년	757	757	303.1	453.9	40.0
	22년	766.7	766.7	290	476.7	37.8
	21년	716.5	716.5	263.7	452.8	36.8
	20년	668.1	668.1	248.6	419.5	37.2
	19년	672	672	245.4	426.6	36.5
돼지고기	23년	1,521	1,521	1,118	403	73.5
	22년	1,549	1,549	1,107	442	71.5
	21년	1,430	1,430	1,097	333	76.7
	20년	1,407	1,407	1,097	310	78.0
	19년	1,390	1,390	969	421	69.7
닭고기	23년	891	891	624	267	70.0
	22년	830	830	614	216	74.0
	21년	798	798	622	176	77.9
	20년	817	817	647	170	79.2
	19년	815	815	637	178	78.2

* 자료 : 2024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4) 사료 수급

축산물 생산의 사육비 구성에서 사료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축산농가 소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축종별 사료비 비중은 육우 55.0%, 비육돈 51.4%, 육계 55.4%로, 사료비가 전체 사육비의 절반을 상회한다⁸⁾.

사료는 에너지 밀도와 섬유소 함량 등에 따라 농후사료와 조사료로 구분된다. 농후사료는 섬유질 함량이 낮고 단백질·지방 밀도가 높은 곡류(예: 옥수수·보리)와 각종 박류가 해당하며, 조사료는 짚·건초·사일리지 등으로 섬유질은 풍부하나 에너지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 사료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국내 사료 공급량은 2,817만 톤에서 2,93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농후사료는 2,365만 톤에서 2,411만 톤으로, 배합사료는

8) 통계청,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025.

같은 기간 2,086만 톤에서 2,189만 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급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자급률은 2019년 27%에서 2023년 19%로 하락하여 자급 기반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2019년~2023년 사료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연도	합계	농후사료	배합사료				농가 자급사료	조사료
			국내산	수입	자급률(%)			
2023년	29,331	24,114	21,886	4,173	17,346	19	2,228	5,217
2022년	29,617	24,311	21,829	4,280	17,182	20	2,482	5,306
2021년	28,411	23,564	21,332	5,222	15,739	25	2,232	5,218
2020년	28,164	23,472	21,319	5,276	15,736	25	2,153	4,999
2019년	28,177	23,649	20,862	5,645	14,954	27	2,787	4,791

* 자료 : 2024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주 : 1) 국내산수입 : 배합사료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

2) 배합사료 : 양축용, 어류용, 대용유용 배합사료 생산량 기준

3) '10년 이후 조사료 수급통계 산출방법 개선으로 자료 수정('21.3월)

3. 국제무역 현황

1) 국제 식량 가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FAO Food Price Index, FFPI)는 국제 식량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급 전망, 인플레이션 진단, 식량정책 논의 등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수급 관리의 선행 지표로 FFPI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

FFPI는 5개 주요 식품 그룹(곡물, 유지류, 유제품, 육류, 설탕)의 국제가격 변동을 월 별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지수의 산출 방식은 2014-2016년 동안 각 그룹의 평균 수출 점유율에 가중치를 부여한 5개 식품 그룹 가격의 평균으로 구성된다⁹⁾.

최근에 FFPI의 동향을 보면 식물성 유지와 육류·유제품 지수의 상승이 전체 지수의 강세를 이끌고 있으며, 곡물과 설탕 지수는 완만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25년 8월 FFPI는 130.1로 1월 대비 약 4.33% 상승한 수준이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

9) FAO 홈페이지, <https://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검색일 : 2025.12.02.)

던 2022년 수준을 하회하는 수치지만, 2024년 동월 대비(121.7)로는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이후 FFPI의 장기 추세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FFPI는 2020년 98.1에서 팬데믹 국면에 급등하여 2022년 144.5로 정점을 기록한 뒤, 이후에는 대체로 120~130 범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 2020년~2025년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

연도	식량가격지수 (Food Price Index)	육류 (Meat)	유제품 (Dairy)	곡물 (Cereals)	유지류 (Vegetables Oils)	설탕 (Sugar)	
20년	98.1	95.3	101.8	103.1	99.4	79.5	
21년	125.7	107.5	119.6	131.2	164.9	109.3	
22년	144.5	118.3	149.5	154.7	187.8	114.5	
23년	124.5	114.1	123.7	130.9	126.3	145.0	
24년	122.0	117.3	129.8	113.5	138.1	125.7	
25년	1월	124.7	116.7	143.1	111.8	153.0	111.2
	2월	126.6	116.9	147.7	112.6	156.0	118.5
	3월	127.2	118.3	148.7	109.7	161.8	116.9
	4월	128.2	121.6	151.7	110.9	158.0	112.3
	5월	127.1	122.8	153.6	109.0	152.2	109.4
	6월	128.1	126.0	155.5	107.3	155.7	103.6
	7월	130.0	127.2	154.6	106.5	166.8	103.3
	8월	130.1	128.0	152.6	105.6	169.1	103.6

* 자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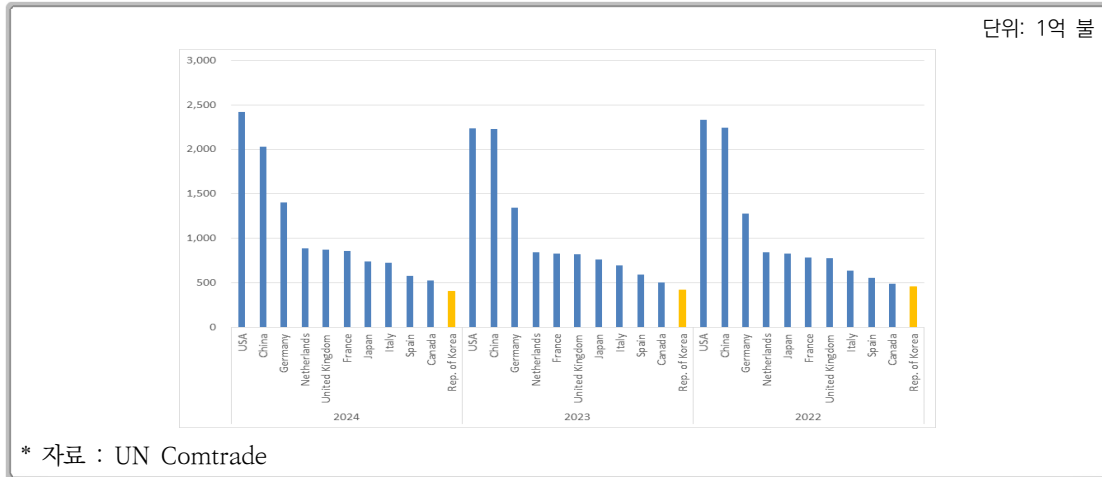
** 주 : 기준값(100) = 2014~2016년 평균 식량가격

2) 국제무역 규모

① 수입 규모

UN 국제무역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농축산·식품(HS 제1부~제4부 기준) 품목의 연도별 무역 규모 상위국 구도는 수년간 고착화된 상황이다. 수입 규모 측면에서 미국은 2022~2024년 연속하여 최대 수입국이며, 뒤이어 중국, 독일, 네덜란드 순이었다. 5위는 연도별로 변동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일본, 2023년에는 프랑스, 2024년에는 영국이 각각 5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상위 10위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2년 11위, 2023년 12위, 2024년 13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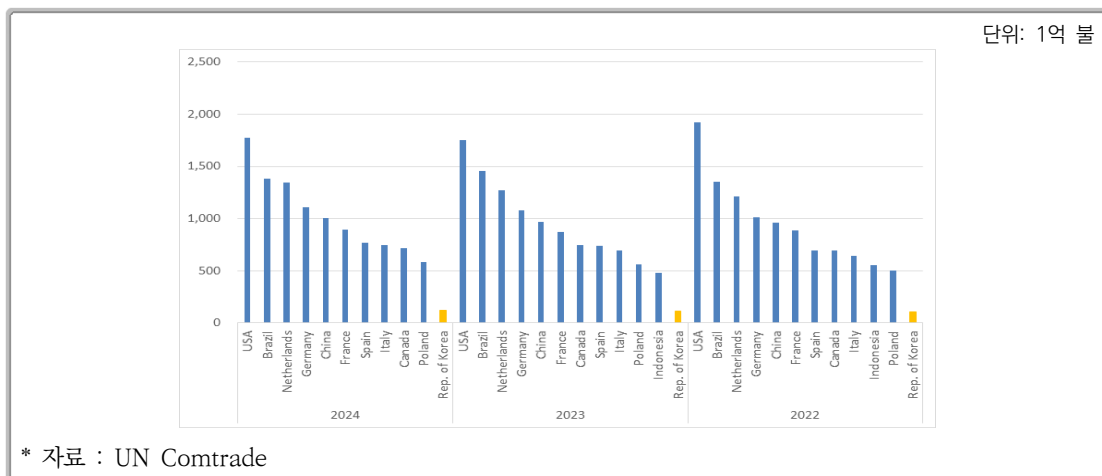
[그림 2-1] 수입 상위 10개 국가(HS 제1부~제4부 기준)



② 수출 규모

같은 기간에 수출 규모 측면에서도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으며, 브라질이 2위, 네덜란드·독일·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권 국가의 순위는 3년간 변화가 없었다. 한국의 수출 순위는 2022·2023년 40위, 2024년 34위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그림 2-2] 수출 상위 10개 국가(HS 제1부~제4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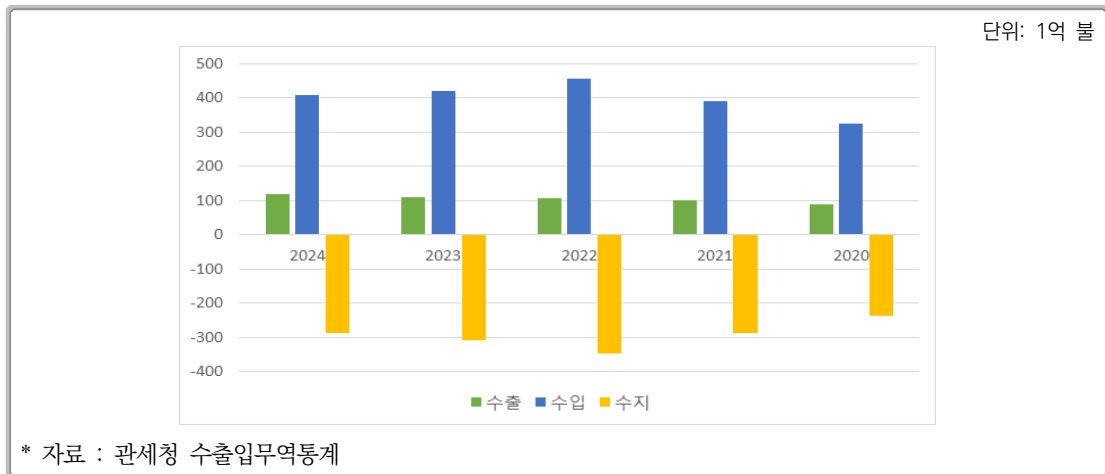
종합하면, 농축산·식품 무역은 수입 측면에서 미국·중국·독일·네덜란드, 수출 측면에서 미국·브라질·네덜란드·독일·중국을 중심으로 한 상위 국가 순위가 수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내수 시장과 높은 생산력을 갖춘 일부 국가들의 구조적 우위가 지속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특히 네덜란드는 자체 생산력에 더해 가공·재수출 무역에서의 강점이 높은 순위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수입 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즉, 수출입 규모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우리나라 무역 현황

1) 수출입 규모

우리나라의 제1부부터 제4부 품목의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4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3%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는 1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2%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최근 5년간 지속하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 347억 달러로 적자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연도별 무역수지 동향(HS 제1부~제4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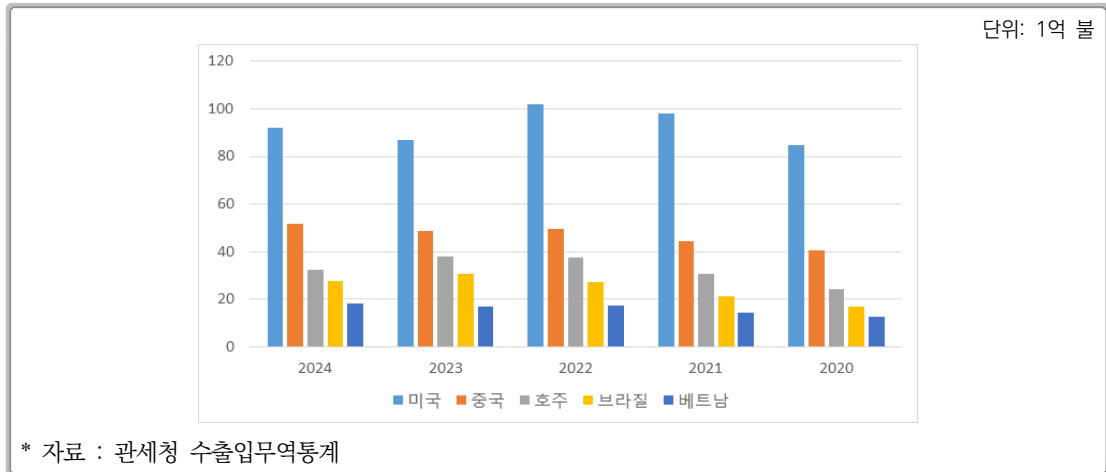


(1) 수입 규모

최근 5년간 수입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2024년 미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92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서 중국, 호주, 브라질, 베트남

남 순으로 수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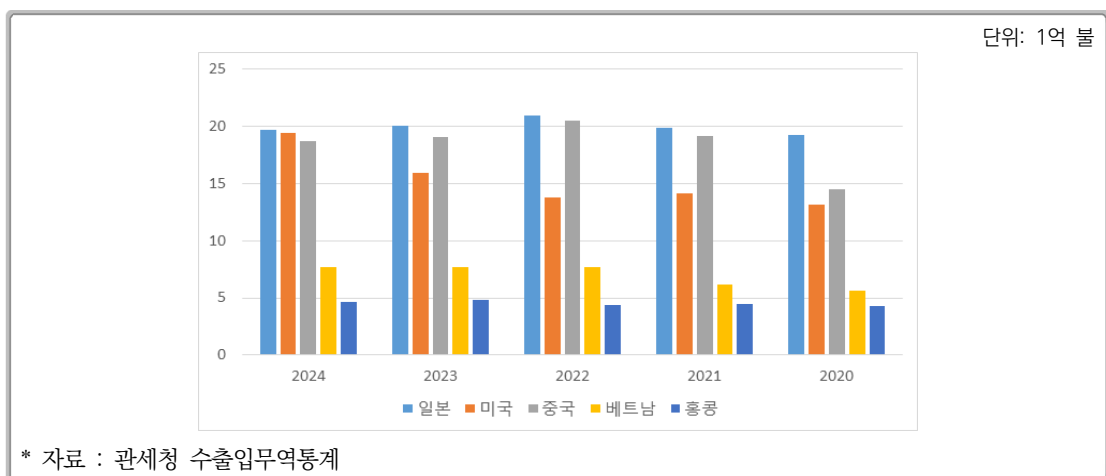
[그림 2-4] 연도별-국가별 수입 금액 동향(HS 제1부~제4부 기준)



(2) 수출 규모

최근 5년간 수출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으로 2024년 수출금액이 19억 달러에 달한다. 이어서 미국, 중국, 베트남, 홍콩 순으로 수출 규모가 컸다.

[그림 2-5] 연도별-국가별 수출 금액 동향(HS 제1부~제4부 기준)



(3) 품목별 수출입 규모

최근 3개년도(2022-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을 선별한 결과, 수입 부문에서는 옥수수가 약 106억 달러로 최대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조제 식품, 쇠고기, 돼지고기, 밀, 대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반면 수출 부문에서는 파스타가 약 3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면류에 속하는 라면의 수출 금액 증가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조제 식품, 담배, 음료, 김 등이 수출 상위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표 2-6〉 2022년~2024년 수출입 규모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불

순위	수입			수출		
	HS(6단위)	품명	금액	HS(6단위)	품명	금액
1	1005.90	기타 옥수수	10,697	1902.30	그 밖의 파스타	3,278
2	2106.90	기타 조제 식료품	6,528	2106.90	기타 조제 식료품	2,478
3	0203.29	기타 냉동 돼지고기	5,435	2402.20	곶련	2,063
4	1001.99	기타 밀과 메슬린	4,837	2008.99	기타 과일·견과류의 조제품	1,660
5	0202.30	뼈 없는 냉동 쇠고기	4,693	2202.99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1,624
6	0201.30	뼈 없는 신선·냉장 쇠고기	3,491	1212.21	식용 해초류	1,104
7	0202.20	뼈째로 절단한 냉동 쇠고기	2,967	1905.90	기타 베이커리 제품	1,097
8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719	2103.90	기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1,070
9	1201.90	기타 대두	2,572	2404.11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783
10	2304.00	대두의 오일케이크	2,546	0304.87	다랑어·가다랑어 냉동 필레	755

* 자료 : K-stat 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Ⅲ. 제1~제4부 HSK 체계 분석

• 제1부~제4부 HSK 체계 연구 •

제3장

제1부~제4부 HSK 체계 분석

1. HS와 품목분류

1) HS 협약

국제사회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상품 분류체제로 인한 불편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표 제정을 지속하여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31년 국제연맹 주도하에 제네바 품목분류표가 제정되었다. 이 분류표는 이후에 개발되는 여러 국제 분류체계의 기본 토대가 된다.

이어서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는 1959년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russels Tariff Nomenclature, BTN)를 마련했고, 1962년에는 이를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CCCN)로 개칭한다.

한편, 1950년에는 유엔 통계위원회에 의해 국가별 무역 데이터의 수집·비교를 위한 국제표준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가 도입되었다.

국제무역의 성장에 따라 CCCN의 분류로는 관세와 통계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관세협력이사회는 CCCN와 SITC를 결합한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그 결과로 1988년 발효된 HS 협약은 국제무역에서 통용되는 상품 분류체제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HS 협약은 국제무역에서의 상품 품목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통계의 수집·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HS 협약은 전문과 20개의 조

항, 그리고 부속서로 구성된다. 전문은 협약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며, 각 조항은 계약 당사국 의무, 개정 절차, 정의 등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의 부속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당사국은 협약 제3조(계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자국의 관세·통계 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키고, HS의 6단위 번호 체계를 자국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의무를 갖는다.

2) HS의 구성요소

(1) HS 해석에 관한 통칙·주·호의 용어

HS에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구성요소-① HS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GRI), ② 주(Notes), 호의 용어 (terms of the headings)-가 있다.

통칙은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원칙으로서 6개 호로 구성된다. 통칙 제1호는 품목분류의 최우선 기준으로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 주의 규정에 따라 HS 코드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통칙 제1호에 따라 상품의 HS 코드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HS 코드를 결정한다. 통칙 제5호와 제6호는 보충적 기준으로써, 통칙 제1호부터 제4호의 순차적 적용과는 별개로 적용할 수 있다.

주(Notes)는 상품의 분류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기준 등을 제시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한다. 호의 용어는 HS 체계에서 4단위(호) HS 코드 번호에 대응되는 품목명을 말한다.

(2) 부·류·절의 표제

부·류·절의 표제(Title)는 HS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이는 단지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 목적상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표제가 아니라 호의 용어·주·통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HS에는 총 21개 부가 있다. 각 부는 세부적으로 류로 나뉘는데,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존재한다. 일부 류(제28류·제29류 등)는 다시 절로 구분되는 구조이다.

3) HS 품목분류 지침

(1) HS 해설서

HS 협약 제7조(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HS 위원회는 HS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 HS 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작성할 수 있다. HS 해설서는 상품에 대한 HS 분류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통해 HS 해설서를 국내 규정으로 수용하고 있다.

(2) HS 품목분류의견서

HS 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는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한 HS 위원회의 공식 분류 의견을 수록한 자료로, 각 물품에 결정된 HS 번호와 분류 근거, 물품 설명을 포함한다. 국제적으로 품목분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HS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통해 이를 국내 규정으로 수용하고 있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우리나라는 HS 협약의 체약당사국으로서 HS 체계를 국내 품목분류표로 수용하고 있다.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98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HS 협약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HSK는 HS의 국제 공통의 6단위 번호체계를 기초로, 국내 세분화를 위한 4자리의 숫자를 더해 10단위 품목번호 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HSK 품목번호는 관세율 결정, 무역정책 집행, 통계 작성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 요건의 판단, 간이환급액 산정, 원산지 규정 적용 등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5) HS 번호체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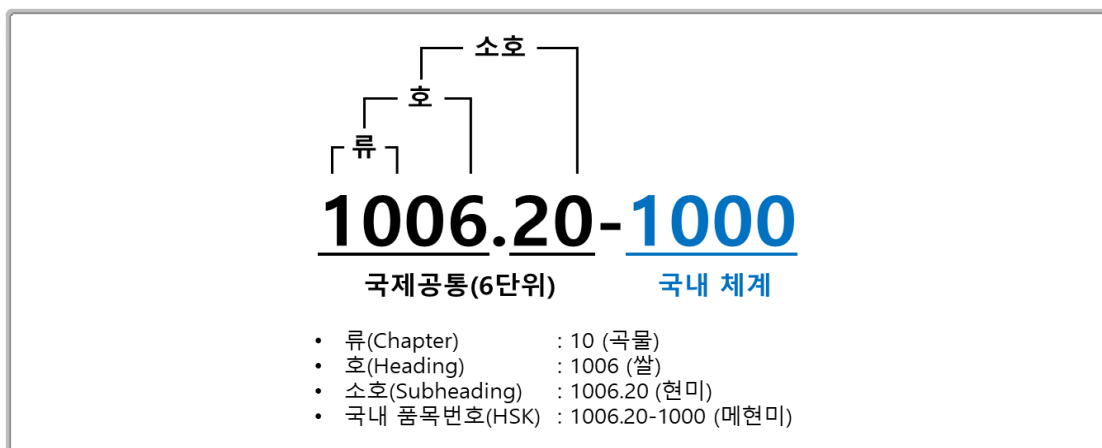
HS의 번호체계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6단위의 HS 코드는 앞의 2단위부터 류

(Chapter, 2자리), 호(heading, 4자리), 소호(Subheading, 6자리) 순서로 하위 분류가 이어진다. 상위에서 하위로 숫자 단위가 내려갈수록 분류 기준이 점차 세분화되는 구조다.

HS 협약에 따라 계약당사국은 6단위의 번호체계를 자국에서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므로 번호체계 상 6단위인 소호까지는 국제무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다만 각 국가는 통계 작성, 관세율 부과 등 자국의 목적에 따라 6단위를 초과하여, 더 많은 단위의 번호체제로 확대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가된 번호는 6단위의 범위와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 내에서만 그 효력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제 공통의 6자리 번호체계에 4자리를 추가한 10단위의 HSK 번호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림 3-1] HS 번호체계 예시



6) HS의 개정

HS는 기술 발전 및 무역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된다. 협약상에 개정 주기가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2년 이후 5년 주기의 개정 관행이 정착된 상황이다. HS는 협약 발효 이후 현재까지 7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에 시행되었다. 다음 개정은 통상의 주기에 따라 2027년이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개정 논의가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2028년에 예정되어 있다.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되는 사유로는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주요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개정,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등을 들 수 있다¹⁰⁾.

HS 개정 절차는 HS 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세협력이사회 심의를 거쳐 계약 당사국에 권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계약당사국은 HS 개정이 확정되면, 자국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된 HS와 일치시키기 위한 국내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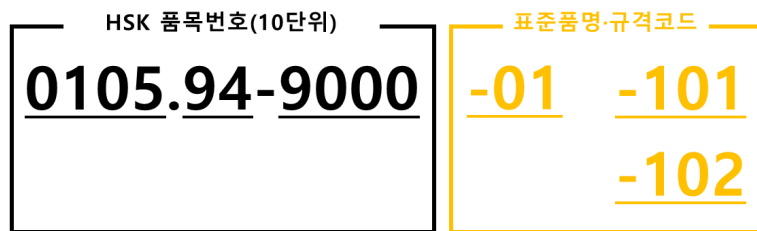
7) 표준품명 제도

표준품명은 2005년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고 수입물품의 식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표준품명은 HS와는 별도의 체계이지만 HS 품목번호와 연계된 코드 구조를 활용해 물품의 유형·용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현행 HS 체계만으로는 세부 식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표준품명에 따른 추가적인 규격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HSK 제0105.94-9000호는 살아 있는 닭이 분류되는 품목번호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닭의 개체 중량을 구분할 수 없다. 표준품명 제도는 이 품목번호에 대해 개체당 중량 2,000g 이하(-101), 2,000g 초과(-102)로 구분된 규격코드를 설정하고 있다. 해당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자는 이 규격코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¹¹⁾, 신고인이 작성한 코드에 기반하여 수입되는 닭의 개체 중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품명 제도는 HS의 물품 식별 기능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통관 및 심사를 지원한다. 2025년 기준 제1부부터 제4부까지 전체 HSK 품목번호 중 491개 번호에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그림 3-2] 표준품명·규격코드 예시



HSK	표준품명	표준규격
0105.94-9000(살아 있는 닭)	-01(기타)	-101 (개체당 중량 2,000그램 이하) -102 (개체당 중량 2,000그램 초과)

10) 김성채, “HS 개정내용 해설”, 2022.

1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2. 제1부~제4부 분류체계

1) 부(Sections)의 분류

HS의 각 부에는 해당 부가 포괄하는 상품의 범주나 형태를 나타내는 표제가 있다. 제1부부터 제4부의 표제는 농축산·식품 산업과 직접 연관된 품목을 계통적으로 분류하며, 동물성·식물성 원재료에서부터 유지, 각종 가공·조제 식품에 이르기까지 농축산·식품 산업의 전 범위를 아우른다.

〈표 3-1〉 HS 제1부~제4부 표제

부	표제(Title)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한편, HS의 구조상 농축산·식품과 연관된 모든 품목이 제1부부터 제4부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누에를 쳐서 생사를 생산하는 잠사업의 경우, 농축산 범주에 속하지만, 그 생산품인 실크는 제11부에 분류된다. 이와 유사하게 동·식물성 섬유는 제11부, 단백질성 물질 등은 제6부, 고무류는 제7부, 가죽류는 제8부 등으로 분산되어 분류된다. 이들 품목은 농축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가공 정도와 용도로 보아 화학·섬유 등 특정 산업의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식량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에 집중하고, 과도하게 연구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제1부부터 제4부 내에서만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식량 수급 문제에 있어 통계 산출과 정책 설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영역에 연구 초점을 둔다.

2) 류(Chapters)의 분류

가장 큰 범주인 부는 그다음 하위 분류인 류로 세분할 수 있다. 제1부부터 제4부는 류 기준으로 제01류부터 제24류를 포괄하며, 각각 제1부(제01~제05류), 제2부(제06~제14류), 제3부(제15류), 제4부(제16~제24류)로 구성된다.

〈표 3-2〉 HS 제1부~제4부 류

부	류(Chapters)
제1부	제01류 살아 있는 동물
	제02류 육과 식용 설육
	제0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제0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0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제0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화 장식용 잎
	제0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제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0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5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제3부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 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 품목별 분류

(1) 육류

제02류(육과 식용 설육)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 전반을 포괄한다. 이 류에 분류되는 육류는 신선·냉장·냉동 상태이거나 염장·염수장·건조·훈제 등 저장을 위한 단순 처리만 거친 것으로 한정되며, 이 범위를 넘어 가공된 육류 조제품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제02류의 세부 분류는 ①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가금류 등 동물의 종류 ② ‘육’과 ‘설육’의 구분, ③ 상태(신선·냉장·냉동) 및 염장·염수장·건조·훈제 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나뉜다.

한편, 육류가 조리 과정을 거쳐 육류 조제품으로 된 경우에는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로 분류하며, 이때 육류·설육의 함량이 조제품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해야 한다. 제16류의 하위 단위에서 육류 조제품은 제1601호부터 제1603호에 분류되며, 소시지, 파테(pâté)·육 페이스트(meat paste), 갈런틴(galantine), 리에트(rilette) 등이 이러한 조제품에 해당한다.

다만, 육류 조제품이라 하더라도 육 또는 설육으로 속을 채운 파스타·라비올리 등은 제19류(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소스 및 혼합조미료는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수프·브로드 및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역시 제21류로 각각 분류된다. 또한 사료용의 육류는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에 분류되는 등, 식품 유형과 용도에 따라 타 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2) 어류

제0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에는 수산물에 해당하는 각종 어류, 갑각류 등이 분류된다. 이 류에 분류되는 어류 등은 활어 상태이거나, 신선·냉장·냉동 상태 또는 건조·염장한 상태와 같이 조리 과정을 거치지 이전 상태에 한한다.

제03류의 세부 분류는 ①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의 구분, ② 상태(활어·신선·냉장·냉동) 및 건조·염장 처리 여부, ③ 형태(가루, 필레, 어육 등) 등을 기준으로 나뉜다.

만약 어류 등이 조리·조제 과정을 거쳤다면, 조제품으로서 제03류가 아닌 제16류에 분류해야 하며, 이때 어류 등의 함량은 조제품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해야 한다.

제16류의 하위 단위에서 어류 등 조제품은 제1604호부터 제1605호에 분류된다. 다

만, 어류 등을 기본 재료로 한 사료의 경우 제23류에 분류한다.

(3) 낙농품

제0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에 분류되는 낙농품에는 전유, 크림, 버터밀크·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케피어, 유장,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데어리 스프레드, 치즈와 커드가 있다.

제04류의 낙농품은 ① 식품 종류(밀크·크림·버터·치즈 등), ② 지방 함량, ③ 첨가물 존재(설탕·감미료 등), ④ 농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분된다.

일반적으로 단순 보존·농축·가당 수준의 처리를 거친 유제품은 제04류에 분류할 수 있지만, 우유 또는 유제품을 기초 원료로 하여 타 식품 성분과 혼합·조리되어 만든 조제품은 다른 류에 분류한다. 예컨대 곡물·전분 등과 결합한 베이커리 제품은 제19류에 분류되고, 아이스크림 제품은 제21류에 분류한다.

(4) 채소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식용 채소(예: 감자, 토마토, 파, 배추, 상추, 당근, 식용 버섯 등)는 제0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에 분류된다.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의 상태는 신선·냉장·냉동이나 일시적인 보존 처리 또는 건조한 것이다.

제07류의 채소는 ① 채소 종류(감자·토마토·배추·상추·치커리·오이 등), ② 상태(신선·냉장·냉동·건조·단순한 보존 처리) ③ 용도(종자용) 등을 기준으로 세분된다.

만약 채소가 식초, 초산 또는 설탕으로 조제·보존 처리되거나, 조리 과정을 거친 조제품, 또는 주스 등 음료 형태로 가공된 경우에는 제07류를 벗어나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에 분류한다. 이러한 품목에는 채소 절임류, 토마토 페이스트·조제품, 채소 주스 등이 있다.

아울러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료용으로 특별히 재배된 식물은 제12류(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로 분류한다.

(5) 과실·견과류

비타민·무기질·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과실·견과류는 제0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에 분류된다. 제08류의 과실·견과류는 신선·냉

장·냉동·건조한 상태로 한정하며, 만약 일시적 보존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만 이 류에 분류할 수 있다.

제08류의 과일·견과류는 ① 종류(코코넛, 캐슈넛, 바나나, 대추야자, 감귤, 포도, 멜론 등), ② 상태(신선·냉장·냉동·건조·단순한 보존 처리), ③ 탈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분된다.

다만 과일·견과류가 식초·초산 또는 설탕으로 조제·보존 처리되었거나, 조리 과정을 거친 조제품, 과일주스 등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제08류의 범위를 벗어나 제20류에 분류한다.

(6)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전 세계적인 기호식품인 커피, 차와 주로 풍미(맛·향)를 부여하기 위한 향신료는 제09류(커피·차·마테(maté)·향신료)에 분류된다.

제09류의 세부 분류는 ① 식품 종류(커피, 녹차·홍차, 후추 등), ② 형태·처리 정도(원형, 분쇄, 볶음, 탈카페인(decaffeinated) 등)을 기준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커피와 차는 처리 정도(볶음, 발효, 탈카페인 등)에 따라 하위 분류가 달라지며, 향신료는 후추, 바닐라, 계피, 정향 등 개별 품목 및 분쇄 여부에 따라 세분된다.

혼합물의 경우, 만약 향신료만으로 구성된 물품이라면 제09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향신료가 다른 식품 성분과 배합되어 조미 기능을 수행하는 혼합 조미료·혼합 조제 식품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제21류에 분류한다.

(7) 곡물

쌀과 밀을 비롯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주식으로 널리 소비되는 곡물은 가공 정도에 따라 HS 체계에서 원곡(제10류), 제분 생산품(제11류), 조제품·베이커리 제품(제19류)으로 구분된다.

먼저 제10류(곡물)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등의 원곡이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거친 곡물은 이 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쌀에 한하여,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와 같이 도정을 거친 경우에도 그 외의 다른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류에 분류할 수 있다.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에는 곡물을 분쇄하여 얻은 가루(밀가루, 쌀가루, 옥수수가루 등)가 분류된다. 다만, 곡물의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밀기울·쌀겨 등)은 제23류에 분류한다.

제19류(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에는 곡물, 곡분, 전분을 주요 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식품이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파스타, 타피오카, 콘플레이크, 빵, 과자, 비스킷, 케이크 등의 조제 식품류가 이 류에 해당한다.

(8) 유지

동물성·식물성 원료 등에서 얻어지는 지방과 오일은 제15류(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에 분류된다. 대표 품목에는 올리브유, 팜유, 대두유 등 식물성 오일, 마가린, 그리고 돼지·소·양 등 동물성 지방이 있다. 유지류는 식품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비누·양초·윤활제 등 산업적 용도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제15류의 세부 분류는 ① 성분 및 유래(동물성·식물성 등), ② 원료의 종류(대두유, 올리브유, 팜유 등) ③ 정제 여부(조유, 정제유) 등으로 구분된다.

원재료에서 유지 추출 후 남은 오일케이크, 유지박 등 잔유물은 제15류가 아니라 제23류에 분류되며, 우유로부터 얻는 버터와 유지방은 낙농품이 분류되는 제04류에 분류한다.

(9) 당류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당류(자당, 유당, 포도당, 과당 등)와, 설탕을 주요 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과자류 및 캔디류는 제17류(당류와 설탕과자)에 분류된다. 다만, 설탕 조제품이라도 초콜릿·코코아를 함유한 물품은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에 분류한다.

(10) 조제 식료품

곡물·육류·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를 가공·제조하여 생산된 조제 식료품은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에 분류한다. 이 류는 앞선 류에 포함되지 않는 조제품을 포괄하므로,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식료품이 분류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21류의 세부 분류는 ① 식품 유형(소스·수프·아이스크림 등), ② 원료의 종류(육류, 어류, 채소 등) ③ 특정 성분의 함량(버터)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 류에는 식이보조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식단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섭취되는 조제품으로서 음식물에 비타민, 무기물, 아미노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등을 더하여 건강상의 기능을 강화한 식품을 말한다.

한편 물과 음료, 주류, 식초는 제22류(음료·주류·식초)에 분류되며, 제21류의 조제 식료품과 구별되어 ① 물·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음료와 얼음, ② 발효한 알코올 음료, ③ 증류한 알코올 용액과 음료(리큐르·주정 등)와 에틸알코올, ④ 식초와 식초 대용품의 네 가지 범주를 포괄한다.

(11) 사료

가축 및 기타 동물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공급되는 사료는 구성 성분의 종류, 가공 여부, 조제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류에 분류된다. 곡물류 가운데 사료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옥수수과 밀 등은 제10류에 분류되며, 대두 및 사료용으로 특별히 재배된 식물은 제12류에 분류된다.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는 사료로 적합한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는데, 육류·어류의 분말, 옥수수·밀·보리 등의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반려동물용 사료·보조사료·배합사료·사료첨가제 등의 조제 사료가 이에 해당한다.

3. 세분화 수준 검토

1) 개요

제1부부터 제4부에 속하는 HS 6단위 기준 품목번호는 총 963개로, 이들 번호는 HS 협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각 국가는 관세 부과와 통계 작성의 필요에 맞추어 6단위 품목번호에 추가 단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자국의 품목분류표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세분화된 품목번호(통상 8단위 또는 10단위)가 많을수록 자국 분류체계가 다양한 품목을 보다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번호 수가 적을수록 세부 분류체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분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HSK와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EU의 분류체계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분류체계는 미국 통합관세율표(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를, EU는 EU 통합관세율표(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ARIC)를 말한다. 두 경제권은 농축산·식품 분야에서 우리와 교역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단위 품목분류 번호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상호 비교가 용이하다.

2) 국가별 세분화 수준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EU의 품목분류 체계별 10단위 품목번호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총 2,099개, 미국은 3,554개, EU는 4,612개의 10단위 품목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즉, 미국과 EU는 각각 한국보다 약 1.7배와 약 2.2배 더 많은 품목번호를 사용한다.

〈표 3-3〉 HS 제1부~제4부 국가별 품목번호(10단위) 개수 (Table)

부	류	한국	미국	EU
제1주	01류	69	78	99
	02류	107	163	395
	03류	448	562	889
	04류	67	272	207
	05류	60	38	26
제2부	06류	54	76	52
	07류	155	406	168
	08류	89	229	207
	09류	52	75	54
	10류	44	66	179
	11류	47	50	79
	12류	194	164	98
	13류	34	23	26
제3부	14류	17	14	6
	15류	109	110	185
제4부	16류	105	179	239
	17류	34	91	54
	18류	33	83	48
	19류	52	106	71
	20류	117	275	820
	21류	71	116	90
	22류	56	116	469
	23류	49	61	100
	24류	36	201	51
합	계	2,099	3,554	4,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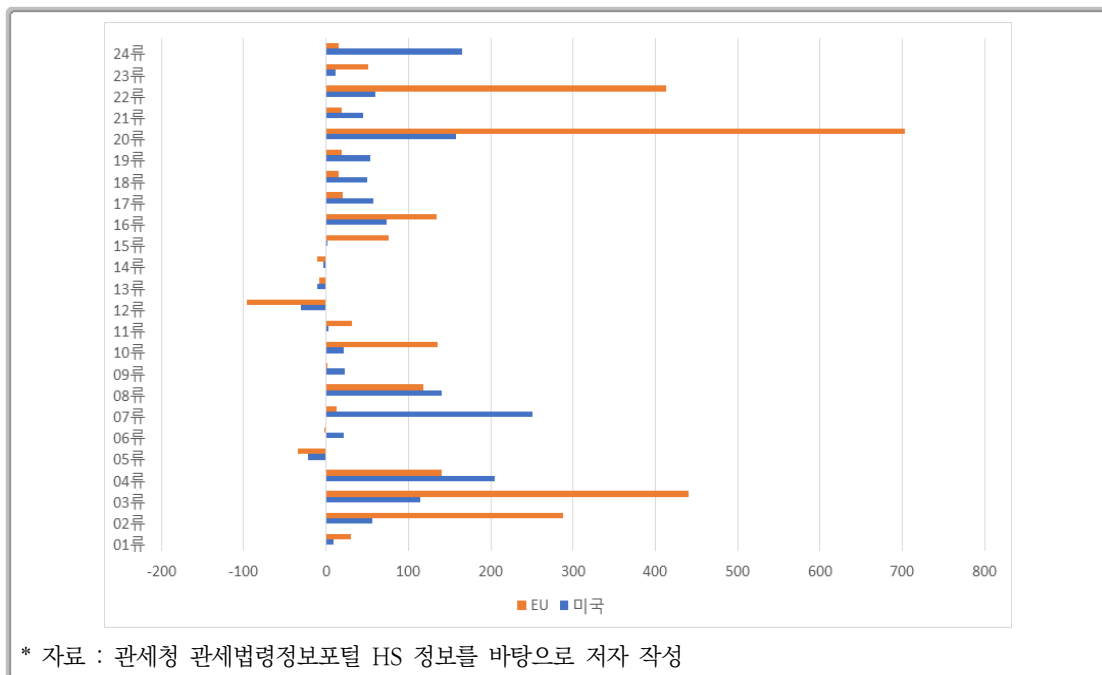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비교 결과를 시각화한 Diverging Bar 차트(그림3-3)는 각 류 별로 미국 및 EU의 10단위 품목번호 수에서 한국의 품목번호 수를 차감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X축의 기준선을 0으로 두고 양(+) 값은 해당 경제권이 한국보다 더 많은 품목번호를 사용함을, 음(-) 값은 한국이 더 많은 품목번호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미국과 EU는 제1부부터 제4부까지 대체로 한국보다 더 많은 10단위 품목번호를 운용한다. 미국은 제04류(낙농품), 제07류(채소), 제08류(과실·견과류), 제24류(담배류)에서 세분화 정도가 특히 높다. EU는 제02류(육류), 제03류(어류), 제20류(채소·과실 조제품), 제22류(음료·주류)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 한국이 더 많은 품목번호를 보유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며, 대표적으로 제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와 제13류(식물성 엑스)가 이에 해당한다.

품목별 세분된 품목번호의 개수가 경제권별로 다른 이유는 각 경제권의 관세·통계 목적과 무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EU는 더 많은 품목번호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포괄적인 번호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개별 품목의 수급 동향과 교역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HSK 분류체계의 개선은 적정 수준의 세분화를 통해 무역통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3-3] HS 제1부~제4부 국가별 품목번호(10단위) 개수 (Bar chart)



3) 품명에 따른 품목번호 신고 비중

HS 제1부부터 제4부까지 HSK 10단위 품목번호는 총 2,099개이며, 이 가운데 품목번호의 품명이 '기타(Other)'인 번호는 총 544개로 전체의 25.9%를 차지한다.

수출입 금액에서 '기타' 품목번호로 신고된 금액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제1부부터 제4부 전체 수출입 금액 52,572백만 달러 중 '기타' 품목번호 신고 금액은 17,449백만 달러로 33.19%에 해당한다. 2023년은 33.00%, 2022년은 32.13%로, 최근까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분류체계는 주요 경제권 대비 세분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동시에 '기타' 품목번호의 사용 비중이 높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분류와 통계 작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표 3-4〉 HS 제1부~제4부 '기타' 품명 품목번호 신고 금액 비중

단위: 백만 불

연도	구분	품명			신고 비중
		기타(Other)	기타 외	합계	
2024년	수입	13,420	27,313	40,734	32.95%
	수출	4,028	7,809	11,837	34.03%
	합계	17,449	35,123	52,572	33.19%
2023년	수입	13,621	28,298	41,920	32.49%
	수출	3,840	7,160	11,000	34.91%
	합계	17,461	35,458	52,920	33.00%
2022년	수입	14,354	31,106	45,461	31.58%
	수출	3,663	6,961	10,625	34.48%
	합계	18,018	38,068	56,086	32.13%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최근 개정 사항

1) 2022년 HS 제7차 개정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HS 제7차 개정판(HS 2022)은 농축산·식품 분야에 의미 있는 변화를 도입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에는 ①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② 연소 없이 흡입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 분류, ③ 미생 물성 유지의 분류 근거 명확화 ④ 버섯과 올리브유 등 주요 품목의 분류 세분화가 있다.

이는 농축산·식품 분야의 새로운 상품 등장, 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HS 분류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제1부부터 제4부까지 6단위 기준 품목 수가 기존 대비 23개 증가하였다.

(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의 가루·펠릿 통합 분류 HS 코드 신설(제0309호)

기존의 HS에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가루·펠릿은 동물별로 상이한 호에 분산되어 있었다. HS 2022는 이를 제0309호로 통합하여, 어류 등의 분말·펠릿이 동일호의 체계 안에서 세분류되도록 정비하였다.

(2) 식용 곤충 분류 HS 코드 신설(제0410.10호)

식용에 적합한 곤충을 별도로 분류하기 위해 제0410.10호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곤충류는 동물성 식품 분류체계 내에서 명확한 분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곤충을 원재료로 제조한 조제품은 제16류에 분류될 수 있도록 육류, 어류, 갑각류 등과 더불어 곤충이 호의 용어와 주 규정에 명시되었다.

(3) 미생물성 유지 분류 HS 코드 신설(제1515호)

균류에서 유래하는 유지의 분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식물성 유지와 더불어 미생물성 유지가 제1515호 내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1515.90호(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아울러 제15류의 표제·호의 용어·주 규정에도 미생물성 지방을 명시함으로써 분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4) 버섯의 분류 HS 코드 세분화(제0709호)

버섯·송로류의 분류체계를 이전보다 세분화하여, 종전에는 ‘그 밖의 버섯’으로 포괄되던 품목을 표고·송이·송로(트리플) 등 세부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5) 올리브유의 분류 HS 코드 세분화(제1509호, 제1510호)

주요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에 대해 엑스트라 버진, 버진, 기타 버진 등으로 등급별 기준에 따른 구분을 확대하였다.

(6)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 분류 HS 코드 신설(제2404호)

일반 켈련과 유사한 외형이나 불을 붙여 태우지 않고, 전용 전기기기에 장착·가열(heated)하여 니코틴을 흡입하도록 고안된 담배 제품 등 연소 없는 니코틴 제품을 분류하기 위해 제2404호가 신설되었다.

2) 2025년 HSK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HSK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9호)은 축산·식품 관련 품목의 세분류 체계 정비 및 통계관리 목적의 10단위 품목번호 신설이 이루어졌다.

(1) 냉동 생강 분류 신설 (제0910.11-3000호, 제0910.12-3000호)

기존에는 생강의 상태는 신선, 냉장, 건조한 것까지만 10단위 품목번호로 세분류하고, 그 외 상태는 모두 ‘기타’ 품목번호에 포괄되었다. 그러나 냉동 상태의 생강에 대한 관리를 위해 냉동 상태가 분류되는 품목번호(HSK 0910.11-3000, 0910.12-3000)를 새로 신설하였다.

(2) 김치제조용 다데기 분류 신설 (제2103.90-9050호)

김치제조용 다데기에 대한 수입량 등에 관리를 위해 고추다진양념이 분류되는 10단위 품목번호(HSK 2103.90-9050)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메주·혼합조미료·카레·마요네즈 등 기존에 10단위 품목번호로 세분류되던 품목과 마찬가지로 고추다진양념의 무역량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3) 비타민 기반 보조사료 분류 신설 (제2309.90-2030호)

기존에는 광물질·향미제 주성분 보조사료만 개별 품목번호가 있었으나, 거래량이 많은 비타민 주성분 보조사료를 별도로 식별하기 위해 품목번호(HSK 2309.90-2030)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보조사료를 다른 성분의 보조사료와 구분하여 무역량을 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IV. HSK 체계 개선안

• 제1부~제4부 HSK 체계 연구 •

제4장

HSK 체계 개선안

제1절 분석 범위

1. 범위의 설정 방법

1) 개요

HSK 제1부부터 제4부까지에는 약 2천 개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에는 무역 규모가 작거나, 이미 교역 상품에 대한 세분화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번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높은 품목번호를 먼저 선별한 다음, 해당 품목번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대상 품목번호의 선정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유형별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국제 공통 분류(HS 6단위)에서 우리나라가 추가 세분화(10단위 품목번호)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6단위 HS 코드에 단 하나의 10단위 품목번호만 대응하는 사례를 구분하고, 이 가운데 교역 규모가 큰 품목번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동일 6단위 내 ‘기타’ 품목번호로 신고가 편중된 경우이다. 동일 6단위에 세부적으로 복수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존재함에도 ‘기타’ 품목번호에만 교역 금액이 집중되고 있다면, 현행 분류체계의 세분화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앞선 절차로 도출되지 않더라도 통계상 목적, 무역 패턴 변화, 성장 가능성 등에 따라 세분화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2) 유형1 : 6단위에서 더 이상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유형은 6단위에서 사실상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6단위에 단 하나의 10단위 품목번호만 존재한다(품목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0000'으로 구성). 이 경우에는 특정 품목군을 별도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10단위 품목번호를 신설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 유형의 분석 대상은 최근 3개년(2022-2024년) 무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교역액 상위 10개 품목번호로 한정한다.

〈표 4-1〉 연도별 교역액 상위 10개 품목번호(유형 1)

단위: 백만 불

연도	HS	HSK	분류 품목	교역액
2024년	0202.30	0202.30-0000	뼈 없는 냉동 쇠고기	1,485
	0201.30	0201.30-0000	뼈 없는 신선냉장 쇠고기	1,125
	2304.00	2304.00-0000	대두의 오일케이크	875
	0901.11	0901.11-0000	커피(로스팅하지 않은 것)	820
	0803.90	0803.90-0000	신선-건조한 바나나	382
	0901.21	0901.21-0000	커피(로스팅한 것)	353
	2203.00	2203.00-0000	맥주	284
	2404.11	2404.11-0000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283
	0302.14	0302.14-0000	대서양, 다뉴브 연어	268
	1701.99	1701.99-0000	기타 사탕수수당	266
2023년	0202.30	0202.30-0000	뼈 없는 냉동 쇠고기	1,510
	0201.30	0201.30-0000	뼈 없는 신선냉장 쇠고기	1,141
	2304.00	2304.00-0000	대두의 오일케이크	798
	0901.11	0901.11-0000	커피(볶지 않은 것)	710
	0901.21	0901.21-0000	커피(볶은 것)	337
	0803.90	0803.90-0000	신선-건조한 바나나	304
	2203.00	2203.00-0000	맥주	294
	2303.10	2303.10-0000	전분박	278
	0302.14	0302.14-0000	대서양, 다뉴브 연어	274
	1701.99	1701.99-0000	기타 사탕수수당	265

2022년	0202.30	0202.30-0000	뼈 없는 냉동 쇠고기	1,698
	0201.30	0201.30-0000	뼈 없는 신선·냉장 쇠고기	1,232
	2304.00	2304.00-0000	대두의 오일케이크	952
	0901.11	0901.11-0000	커피(볶지 않은 것)	878
	0303.67	0303.67-0000	냉동 명태	594
	0901.21	0901.21-0000	커피(볶은 것)	359
	0302.14	0302.14-0000	대서양, 다뉴브 연어	313
	0803.90	0803.90-0000	신선·건조한 바나나	284
	2303.10	2303.10-0000	전분박	280
	2306.60	2306.60-0000	팜 너트의 오일케이크	274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유형2 : 기타 품목번호 신고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 유형은 동일 6단위 내 여러 10단위 중 ‘기타’ 품목번호로의 신고 금액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6단위로 집계된 총 교역액 대비 ‘기타’ 품명의 10단위 품목번호의 교역액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유형의 분석 대상도 유형1과 마찬가지로 3개년(2022-2024년) 별로 10단위 교역액 상위 10개의 품목번호만 선별하였다. 또한 선별된 품목번호 중 유형1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는 이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표 4-2〉 연도별 ‘기타’ 품명 품목번호 신고 금액 비중(유형 2)

연도	HSK(10단위)	교역액(A)	HS(6단위)	교역액(B)	단위: 백만 불
					신고 비중 (A/B)
2024년	2106.90-9099(기타)	2,428	2106.90	2,970	81.76%
	0203.29-9000(기타)	1,170	0203.29	1,872	62.52%
	1001.99-2090(기타)	883	1001.99	1,387	63.66%
	2202.99-9000(기타)	510	2202.99	695	73.34%
	2103.90-9090(기타)	447	2103.90	665	67.24%
	1511.90-9000(기타)	354	1511.90	590	59.96%
	0306.17-1090(기타)	341	0306.17	480	71.01%
	0307.43-2090(기타)	323	0307.43	399	81.15%
	1214.90-9090(기타)	311	1214.90	377	82.49%
	1704.90-2090(기타)	295	1704.90	424	69.43%

2023년	2106.90-9099(기타)	2,472	2106.90	3,030	81.61%
	0203.29-9000(기타)	1,071	0203.29	1,711	62.61%
	1001.99-2090(기타)	894	1001.99	1,666	53.69%
	2202.99-9000(기타)	455	2202.99	633	71.88%
	2103.90-9090(기타)	411	2103.90	625	65.78%
	0306.17-1090(기타)	330	0306.17	474	69.77%
	0307.43-2090(기타)	330	0307.43	393	83.89%
	1214.90-9090(기타)	287	1214.90	364	78.83%
	0306.33-9000(기타)	284	0306.33	479	59.36%
	1704.90-2090(기타)	267	1704.90	384	69.63%
2022년	2106.90-9099(기타)	2,448	2106.90	3,006	81.46%
	0203.29-9000(기타)	1,160	0203.29	1,855	62.56%
	1001.99-2090(기타)	1,150	1001.99	1,784	64.44%
	1511.90-9000(기타)	463	1511.90	794	58.40%
	0306.17-1090(기타)	409	0306.17	593	69.10%
	2103.90-9090(기타)	401	2103.90	595	67.52%
	2202.99-9000(기타)	396	2202.99	571	69.46%
	1214.90-9090(기타)	343	1214.90	443	77.42%
	0306.33-9000(기타)	295	0306.33	529	55.93%
	0307.43-2090(기타)	258	0307.43	314	82.17%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유형3 : 유형1·2 이외 논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형 3은 유형 1·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 무역 동향이나 향후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품목번호 신설 등 HSK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별도로 선별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수출 유망 품목이거나, 수입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HSK 체계에서는 품목 구분이 불가능하여 무역량 파악이 어려운 품목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2. 분석 대상 품목번호

앞서 제시한 유형별 품목번호 중에서 중복되는 번호를 제외하고, 이번 연구의 검토 대상 품목번호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유형 1·2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번호 개수는 총 24개이며, 부 별로는 제1부(동물성 생산품) 5개, 제2부(식물성 생산품) 5개, 제3부(동식물성 유지) 1개, 제4부(조제 식료품) 10개로 나뉜다. 해당 품목번호들의 2024년

기준 교역액은 총 139억 달러에 이른다.

유형 3에는 즉석식품류, 대체식품, 가향담배의 세 가지 품목군을 선정하였다. 즉석식품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수출 유망 품목이며, 대체식품은 향후 식량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향담배의 경우 국민 건강 관리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표 4-3〉 분석 대상 HSK 품목번호(유형 1·2) 및 교역액

단위: 백만 불

부	류	HS(6단위)	HSK(10단위)	유형	교역액			
					2024	2023	2022	
제1부	제02류(육류)	0201.30	0201.30-0000	1	1,125	1,141	1,232	
		0202.30	0202.30-0000	1	1,485	1,510	1,698	
		0203.29	0203.29-9000	2	1,170	1,071	1,160	
	제03류(어류)	0302.14	0302.14-0000	1	268	274	313	
		0303.67	0303.67-0000	1	162	171	594	
		0306.17	0306.17-1090	2	341	330	409	
		0306.33	0306.33-9000	2	218	284	295	
		0307.43	0307.43-2090	2	323	330	258	
	제2부	제08류(과실·견과류)	0803.90	0803.90-0000	1	382	304	284
		제09류(커피·차 등)	0901.11	0901.11-0000	1	820	710	878
0901.21			0901.21-0000	1	353	337	359	
제10류(곡물)		1001.99	1001.99-2090	2	883	894	1,150	
제12류(채유용 종자·과실)	1214.90	1214.90-9090	2	311	287	343		
제3부	제15류(동식물성 유지)	1511.90	1511.90-9000	2	354	293	463	
제4부	제17류(당류·설탕과자)	1701.99	1701.99-0000	1	266	265	228	
		1704.90	1704.90-2090	2	295	267	220	
	제21류(조제 식료품)	2103.90	2103.90-9090	2	447	411	401	
		2106.90	2106.90-9099	2	2,428	2,472	2,448	
	제22류(음료·주류·식초)	2202.99	2202.99-9000	2	510	455	396	
		2203.00	2203.00-0000	1	284	294	264	
	제23류(조제 사료 등)	2303.10	2303.10-0000	1	199	278	280	
		2304.00	2304.00-0000	1	875	798	952	
		2306.60	2306.60-0000	1	172	207	274	
	제24류(담배류)	2404.11	2404.11-0000	1	283	264	246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절 품목별 검토 의견

본 절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HSK 체계 개선을 위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검토는 품목번호 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현행 HSK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만약 검토 대상 품목번호에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 체계 뿐만 아니라, 표준품명 및 관련 규격도 함께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패턴을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해당 품목의 수출 또는 수입 금액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통계의 의미가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어서, 주요국의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는 국제 공통 기준인 HS 6단위 번호 체계를 각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비교 대상 국가에는 일본을 포함하였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량 자원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주식(主食)의 유형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어 비교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는 우리나라와 해당 품목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검토 대상 품목의 특성과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HSK 세분화 기준을 도출하고, 품목별 HSK 개선안을 포함한 최종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제1부 동물성 생산품

1) 제0201.30-0000호(신선·냉장 쇠고기)와 제0202.30-0000호(냉동 쇠고기)

(1) 분류체계

쇠고기는 냉장 및 냉동 여부에 따라 4단위 호에서 제0201호(신선·냉장 쇠고기)와 제0202호(냉동 쇠고기)로 분류된다. 각 호는 다시 도체·이분도체(-10), 뼈째로 절단한 것(-20), 뼈가 없는 것(-30)의 6단위 소호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뼈가 없는 것’이 분류되는 제0201.30호와 제0202.30호는 HSK 분류체계에서는 추가 세분이 없어, 하위 단위에는 단일 품목번호(HSK 0201.30-0000, 0202.30-0000)만 존재한다.

쇠고기(HS 0201 및 0202)에 대해서는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보다 적용 우선순위가 높은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40%)이 적용된다. 다만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한·미 FTA 및 한·호주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

은 통상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4-4〉 제0201호 및 제0202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000	30%	-	40%
	20				
	20	1000	30%	-	40%
	20	9000	30%	-	40%
	30	0000	30%	-	40%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000	30%	-	40%
	20				
	20	1000	30%	-	40%
	20	9000	30%	-	40%
	30	0000	30%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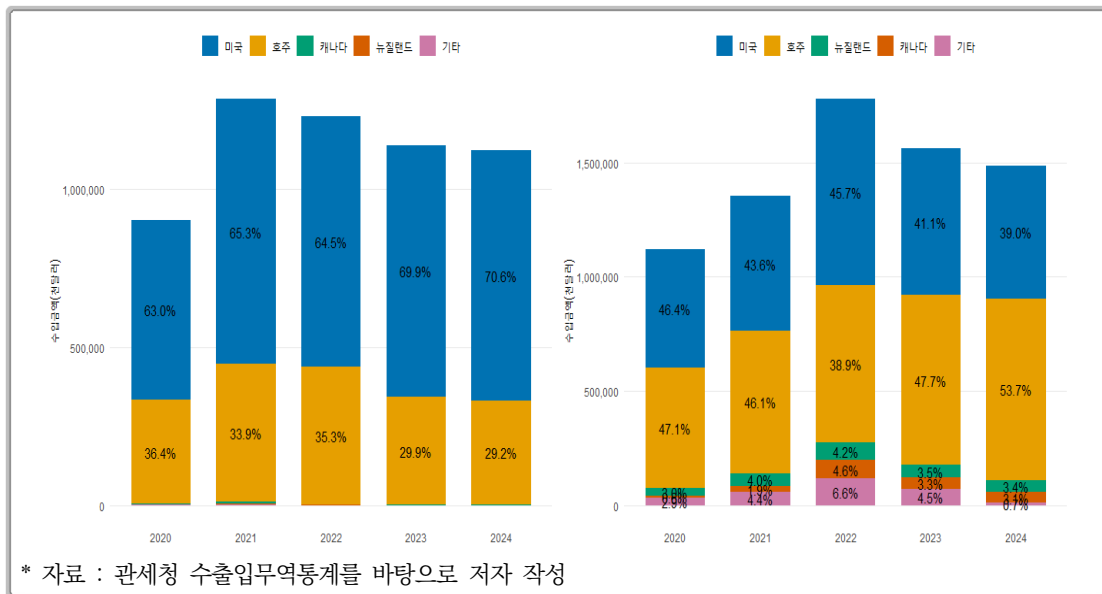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공급망은 사실상 미국과 호주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기준 냉장 쇠고기(HSK 0201.30-0000) 수입금액 중 미국과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99.8%에 달하며, 냉동 쇠고기(HSK 0202.30-0000) 역시 이들 두 국가의 비중이 92.7%에 이른다.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부터도 일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

한편, 수출 규모는 수입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냉장 쇠고기(HSK 0201.30-0000) 수출액은 277만 불, 냉동 쇠고기(HSK 0202.30-0000)는 33만 불에 불과하며, 수출 대상도 홍콩·말레이시아·몽골 등 소수 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시장이 매우 협소하다.

[그림 4-1] 제0201.30-0000호 및 제0202.3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0201.30호와 제0202.30호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호주의 분류체계는 HSK와 마찬가지로 국제 공통 소호(6단위) 이후 단위에서 추가적인 세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분류체계는 동일 소호에 대해 등심, 양지 등 일부 부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쇠고기를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해당 소호에 대해 10단위 품목번호를 최대 15개까지 설정하고 있다.

<표 4-5> 주요국 분류체계(제0201.30호 및 제0202.3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미국		호주	
0201	30						
		010	Loin		Described in general note 15 ¹²⁾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0003	Boneless
		020	Chuck, Clod and Round		Processed:		

		030	Brisket and plate	0200	High-quality beef cuts		
		090	Other	0400	Other		
				0600	Other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3 ¹³⁾ to this chapter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Processed:		
				1000	High-quality beef cuts		
				3000	Other		
				50	Other		
				5015	Fresh or chilled boneless veal cuts		
					Other:		
				5025	Rib cuts		
				5035	Chuck cuts		
				5045	Loin cuts		
				5055	Brisket cuts		
				5065	Hip cuts		
				5075	Flank or plate cuts		
				5085	Other		
				80	Other		
				8010	Bison		
				8090	Other		
0202	30	0201.30의 하위 분류체계와 동일 구조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국의 분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용·개인용·견본용·연구용·외교공관용 등과 같이 관세율할당(TRQ) 적용한도 수량 산정에서 제외(General note 15)되는 수입품과, 그 외 연간 쇠고기 수입 허용 총량 내에서 수입되는 품목(U.S. Note 3)을 구분하고 있다. 이어서 가공 여부, 등급, 부위 등의 기준에 따라 추가 세분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12) general note 15는 제2류부터 제52류에 속하는 농산물 중 이 주에서 정한 물품의 수입신고분은 각 류에 규정된 관세율할당(TRQ) 적용 한도 수량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3) U.S. note 3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연간 수입 총량이 이 주에서 명시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육류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주(U.S. Note)에서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미국 국내 주에 따르면 ‘가공(Processed) 육류’란 분쇄하거나 잘게 썬 고기, 스투용 절단육, 꼬치에 끼운 고기 등과 같이 소비자의 특정 용도에 맞게 준비된 제품을 의미한다. 또한 ‘고품질 부분육(High-quality beef cuts)’은 미국 농무부(USDA)의 프라임(Prime) 또는 초이스(Choice) 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수출국 정부 당국의 공식 인증을 받아 수출된 쇠고기를 의미한다.

〈표 4-6〉 미국 분류체계 제2류 국내 주

CHAPTER 2 Additional U.S. Not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The term **"processed"** covers meats which have been ground or comminuted, diced or cut into sizes for stew meat or similar uses, rolled and skewered, or specially processed into fancy cuts, special shapes, or otherwise made ready for particular uses by the retail consumer.

(b) The term **"high-quality beef cuts"** means beef specially processed into fancy cuts, special shapes, or otherwise made ready for particular uses by the retail consumer (but not ground or comminuted, diced or cut into sizes for stew meat or similar uses, or rolled or skewered), which meets the specifications in regulations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 Prime or Choice beef, and which has been so certified prior to exportation by an official of the government of the exporting countr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ssu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 자료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결론적으로 쇠고기에 대해 한국과 호주는 국제 공통 수준인 6단위에서 추가 세분이 없는 가장 단순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일부 부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만 쇠고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등급·가공 형태·부위 등 세부 기준을 반영하여 품목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4) 세분화 기준

① 식약처 고시에 따른 부위 명칭

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부위 구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

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규정된 쇠고기 분할 상태에 따른 부위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동 기준은 쇠고기를 10개 대분할 부위(예: 안심, 등심, 채끝, 목심 등)로 구분하고, 각 대분할을 다시 39개 소분할 부위(예: 안심살, 윗등심살, 꽃등심살, 채끝살 등)로 세분하고 있다.

이 분할 기준은 국내 규정상 표준으로서 축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구분일 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내 유통 전반에서 통일된 분류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 금액이 집중되는 특정 품목번호를 이 기준에 따라 세분화할 경우, 부위별로 실제 수입 통관된 물량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국내 수급 및 가격 관리의 정밀도와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FTA의 관세할당물량(TRQ) 내에서 주로 어떤 부위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고가 부위 중심의 수입 여부 확인 등 보다 세부적인 무역 패턴 분석이 가능하다.

〈표 4-7〉 쇠고기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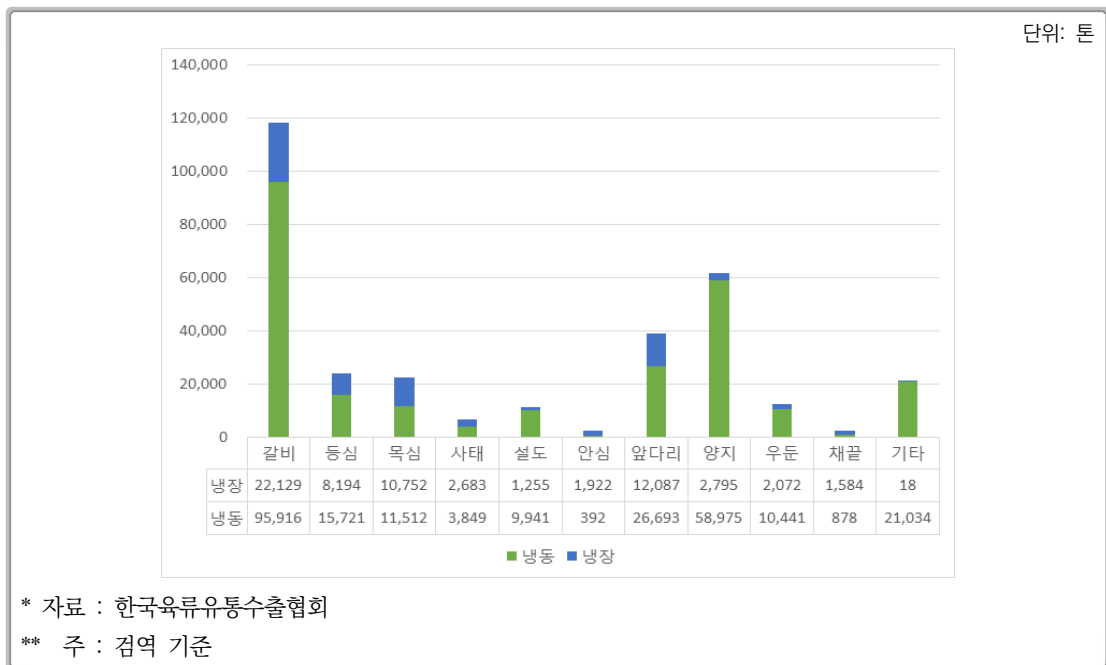
대분할 부위 명칭(10개)	소분할 부위 명칭(39개)
안 심	안심살
등 심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래등심살, 살치살
채 끝	채끝살
목 심	목심살
앞다리	꾸리살, 부채살, 앞다리살, 갈비덧살, 부채덧개살
우 둔	우둔살, 흥두깨살
설 도	보섭살, 설깃살, 설깃머리살, 도가니살, 삼각살
양 지	양지머리, 차돌박이, 업진살, 업진안살, 치마양지, 치마살, 앞치마살
사 태	앞사태, 뒷사태, 멍치사태, 아롱사태, 상박살
갈 비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 자료 : 식약처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현재는 검역 실적을 통해서만 수입 쇠고기의 부위별 수입 물량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검역 시점과 실제 통관 시점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예: 검역 후 보세 창고 내 보관), 이로 인해 실제 수입 통관이 완료된 부위별 물량을 정확히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위별 수입 실적을 보다 정밀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HSK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검역 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가장 많이 수입된 부위는 갈비이며, 그 뒤를 이어 양지, 앞다리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다. 그러나 모든 부위를 개별 품목번호로 구분하는 경우, 분류체계의 과도한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통계적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그림 4-2] 쇠고기 부위별 수입검역 현황(2025년 1월~8월)



<표 4-8> 수입육의 부위별 한글명칭

미국산	호주산	소분할부위명	대분할부위명
chuck short rip(1-5th)	chuck short rip(1-5th)	본갈비	갈 비
short rip(6-8th)	short rip(6-8th)	꽃갈비	
short rip(9-12th)	short rip(9-12th)	참갈비	
rip finger meat	-	갈비살	
-	brisket bone	마구리	
hanging tender	thick skirt	토시살	
outside skirt	thin skirt	안창살	
-	brisket point end	양지머리	양 지

pectoral meat	brisket point end-deckle off	차돌박이	
short plate/karubi plate	external flank	업진살	
internal flank plate	internal flank plate	업진안살	
-	thin flank	치마양지	
-	flap meat	치마살	
-	thin flank	앞치마살	
chuck tender/mock tender	chuck tender/mock tender	꾸리살	앞다리
top blade/flap iron/oyster	oyster blade	부채살	
-	bolar blade	앞다리살	
-	rib blade	갈비덧살	
-	blade undercut	부채덧개살	
chuck eye roll	chuck eye roll	윗등심살	등 심
rip eye roll	cube roll	꽃등심살	
-	spencer roll	아래등심살	
chuck flap	chuck flap tail	살치살	
chuck roll	neck	목심살	목 심

* 자료 : 수입육의 부위별 한글명칭(2009, 영농활용기술, 조수현)

② 쇠고기 등급 기준

쇠고기 부위별 세분 방법 외에도, 미국의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품질 등급 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세분화 방안이 있다. 다만 부위 명칭과 달리, 등급 체계는 국가별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수입 쇠고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쇠고기는 수입 규모가 매우 큰 품목으로, 미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관리 필요성이 큰 품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HSK 체계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제0201.30-0000호(냉장 쇠고기) 및 제0202.30-0000호(냉동 쇠고기) 등 일부 품목번호에 무역 통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현행 HSK 체계에서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부위별 구분이 불가능하여, 외국산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가 국내 유통시장에서 부위별로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및 가격을 부위 단위로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간 부위별 수급 동향 비교, 가격 정책 수립, 축산업계 대상 정보 제공 등의 측면에서 제

약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세분화 기준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된 쇠고기 부위 명칭에 대응되는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식약처 고시에 따른 쇠고기 대분할 부위는 총 10개이다. 다만 수입 물량 규모를 고려하여 이중 상위 5개 부위에 대해서만 별도의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 품목 번호로 포괄하였다. 이 개선안은 기존 단일 품목코드 체계를 총 6개 코드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통계 작성과 부위별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선안은 쇠고기를 부위별로만 구분할 뿐, 신설되는 품목번호 간 적용 세율 및 수입요건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표 4-9〉 쇠고기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0201	30				
		0000	뼈 없는 것	1000 (신설)	갈비
				2000 (신설)	양지
				3000 (신설)	앞다리
				4000 (신설)	등심
				5000 (신설)	목심
				9000 (신설)	기타
0202	30				
		0000	뼈 없는 것	1000 (신설)	갈비
				2000 (신설)	양지
				3000 (신설)	앞다리
				4000 (신설)	등심
				5000 (신설)	목심
				9000 (신설)	기타

2) 제0203.29-9000호(냉동 돼지고기)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돼지고기는 제0203호에서 신선·냉장(HS 0203.1-)과 냉동(HS 0203.2-)으로 구분되며, 각 범주는 다시 ‘도체·이분도체’,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의 세 소호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기타’로 분류되는 제0203.19호와 제0203.29호는 ‘삼겹살’과 그 외 품목으로 한 차례 더 세분된다. 즉, HSK 체계는 돼지고기에 대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삼겹살만을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위는 단일 품목번호로 포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돼지고기의 수입 관세율은 냉장 돼지고기(HS 0203.1-)가 22.5%로, 냉동 돼지고기(HS 0203.2-)의 25%에 비해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4-10〉 제0203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11 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12 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19	기타			
1000	삼겹살	22.5%		
9000	기타	22.5%		
2	냉동한 것			
21 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22 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29	기타			
1000	삼겹살	25%		
9000	기타	25%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0203.29-900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규격코드가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돼지고기를 목살, 전지, 사태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돼지고기 분할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일부 항목은 대분할 부위(등심)와 소분할 부위(항정살)가 혼재되어 있고, 고시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상이한 경우(전지, 사태, 뼈, 족)도 존재한다.

〈표 4-11〉 제0203.29-9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냉동 목살	-
02	냉동 전지	-
03	냉동 로인 부위	-
04	냉동 사태	-
05	냉동 뼈	-
06	냉동 족	-
07	냉동 항정살	-
08	냉동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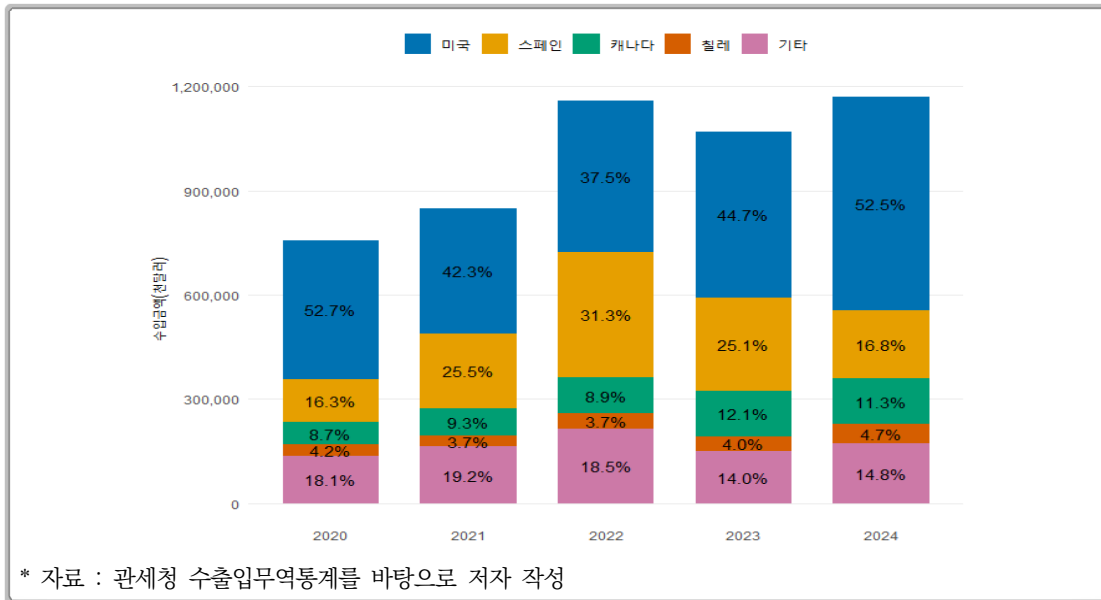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 공급망은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4년 기준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 돼지고기(HSK 0203.29-9000)의 수입 금액에서 미국·스페인·캐나다 상위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5%에 달하며, 그 외 칠레, 브라질, 독일 등에서 일부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추세를 보더라도 미국과 스페인은 매년 전체 수입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돼지고기 수출 규모는 수입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제 0203.29-9000호의 총수출액은 홍콩 844천 달러, 아랍에미리트 40천 달러에 불과하며, 수출 대상국 역시 소수 국가에 국한된다.

[그림 4-3] 제0203.29-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0203.29호에 대한 주요국의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삼겹살만을 별도 품목번호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돼지고기의 수입 가격대별로 품목번호를 세분하고 있다. 이는 저가 부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일본의 세율 체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부위를 별도로 식별하기 위한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가공육(processed) 여부를 기준으로, 호주는 갈비(ribs)를 기준으로 추가 세분을 하고 있다.

가장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상대국은 EU이다. EU는 전각(fores), 등심(loins), 안심(tenderloin), 복부살(bellies), 햄(hams) 등 주요 정형 부위를 각각 개별 품목번호로 구분하고 있다.

<표 4-12> 주요국 분류체계(제0203.29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일본		미국		EU		캐나다	
0203	29								
		010	1 Of wild boars	2000	Processed		Of domestic swine	0010	Spare ribs

		2 Other	4000	Other	1100	Fore-ends and cuts thereof	0020	Back ribs
	023	[1]Each kilogram, not more than the upper limit prices....			1300	Loin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0090	Other
		[2]Each kilogram, more than the upper limit prices....			1500	Bellies (streaky) and cuts thereof		
	024	Less than 399 yen/kg in value for customs duty				Other		
	025	Not less than 399 yen/kg in value for customs duty			55	Boneless		
	022	[3]Each kilogram, more than the gate prices of partial pig, in value for customs duty				Loins and cuts thereof, excluding tenderloin presented separately		
					5520	Loins		
					5530	Cuts		
						Other		
					5591	Tenderloin, presented separately		
					5592	Ham and cuts of ham		
					5599	Other		
					5900	Other		
					900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세분화 기준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분류체계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른 분할 기준과 부위 명칭을 원용하여 품목번호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동 기준은 돼지고기를 7개 대분할 부위(예: 안심, 등심, 목심 등)로 구분하고, 각 대분할을 다시 25개 소분할 부위(예: 안심살, 등심살, 앞등심살, 등심덧살, 목심살 등)로 세분한다. 다만 대분할 부위 중 삼겹살의 경우 이미 독립된 품목번호(HSK 0203.29-1000)가 존재하므로, 세분화 대상은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로 한정해야 한다.

〈표 4-13〉 돼지고기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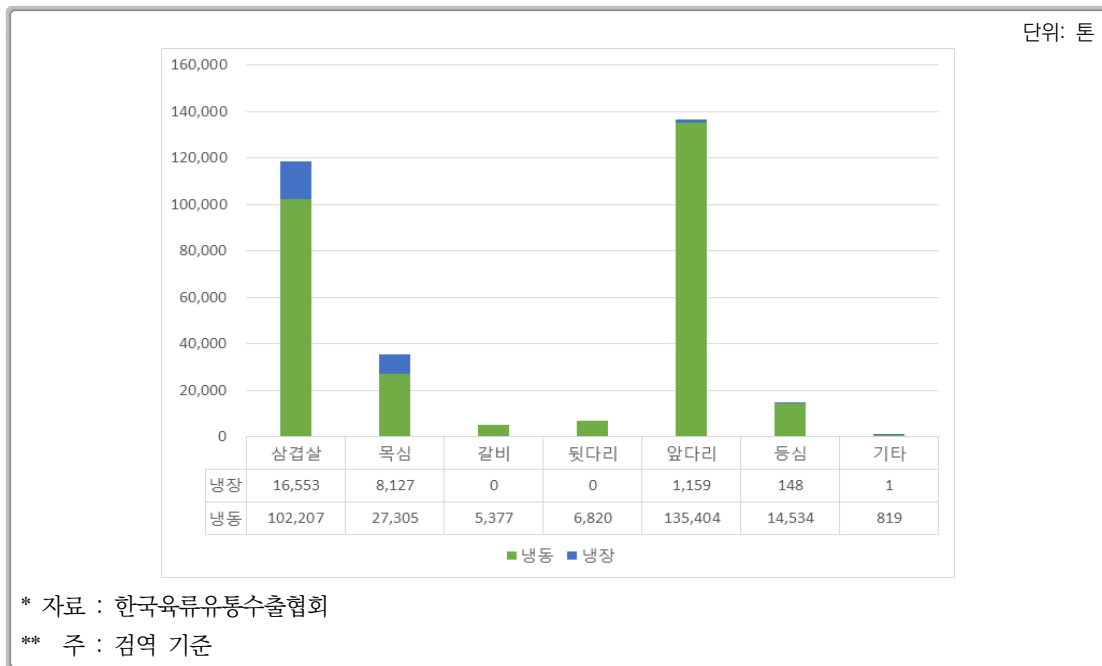
대분할 부위 명칭(7개)	소분할 부위 명칭(25개)
안 심	안심살
등 심	등심살, 앞등심살, 등심덧살
목 심	목심살
앞다리	앞다리살, 앞사태살, 향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
뒷다리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흥두깨살, 보섭살, 뒷사태살
삼겹살	삼겹살, 갈매기살, 등갈비, 토시살, 오돌삼겹
갈 비	갈비, 갈비살, 마구리

* 자료 : 식약처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축산물 검역 실적(그림 4-4)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 부위는 앞다리이며, 그다음으로 삼겹살과 목심의 수입이 많았다.

쇠고기의 분류체계 개선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위를 개별 품목코드로 각각 분리하기 보다는 앞다리, 목심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4] 돼지고기 부위별 수입검역 현황(2025년 1월~8월)



(5) 검토 의견 및 개선안

① HSK 분류체계 개선안

쇠고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육류인 돼지고기는 국내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분류하는 현행 HSK 체계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할 뿐만 아니라, ‘기타’ 품목번호(HSK 0203.29-9000)로 신고되는 비중¹⁴⁾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수입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입량 및 가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급 관리 및 정책 설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세분화 기준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된 돼지고기 부위 명칭을 활용하여 품목번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분화 방안은 앞서 쇠고기에 대한 개선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고시에 따른 돼지고기 대분할 부위를 기준으로, 전체 7개 대분할 부위 중 실제 검역 물량을 많은 5개 부위에 대한 품목번호 신설을 검토하였다. 다만 대

14) 2024년 기준 냉동 돼지고기(HS 0203.29) 수입 금액 중 62.52%가 ‘기타’ 품목번호(HSK 0203.29-9000)로 신고

분할 부위 중 삼겹살은 이미 별도 품목번호(HSK 0203.29-1000)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에는 나머지 상위 4개 부위에 대해서만 품목번호를 신설하였다.

한편, 본 개선안은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구분하되, 신설되는 품목번호 간에 적용 세율 및 수입요건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표 4-14〉 돼지고기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동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0203	29				
		1000	삼겹살	1000	삼겹살
		9000	기타	2000 (신설)	앞다리
	표준 품명	01	냉동 목살	3000 (신설)	목심
		02	냉동 전지	4000 (신설)	등심
		03	냉동 로인 부위	5000 (신설)	뒷다리
		04	냉동 사태	9000	기타
		05	냉동 뼈		
		06	냉동 족		
		07	냉동 항정살		
		08	냉동 기타		

② 표준품명 개선안

이 항목에서는 검토 대상 품목번호(HSK 0203.29-9000)에 제정되어 있는 표준품명 체계를 살펴본다. 제0203.29-9000호에는 총 8개의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으며, 각 표준품명은 돼지고기의 주요 부위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통해 HSK 품목번호 수준에서는 구별할 수 없는 돼지고기 부위별 구분을 표준품명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HSK 체계에 대한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표준품명 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분할 기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위별 명칭 사용에 있어 국내 규정과의 정합성이 부족하다.

특히, 제0203.29-9000호의 표준품명·규격코드 중 6번에 해당하는 ‘냉동 족’의 분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육류 HS 분류체계는 식용 설육(머리·족·꼬리 등)을 육류 부위와 구분하여 별도 품목번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설육에 속하는 ‘냉

동 돼지 족(frozen swine feet)’은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 ‘족’은 앞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 등으로 구성된 부위를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물품은 제0203.29-9000호(냉동 돼지고기)보다는 제0206.49-1000호(냉동 돼지 족)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전완골까지 포함한 다리 전체 부위라면 제0203.29-9000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품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족’이라는 표현 대신 식약처 고시에서 사용하는 ‘앞다리’, ‘뒷다리’ 등 보다 명확한 정형 부위 명칭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표준품명은 식약처 고시상의 부위별 명칭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일부 표준품명은 HS 분류체계상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할 물품과 혼동될 소지가 있다.

다만 앞서 도출한 돼지고기 HSK 분류체계 개선안을 전제로 할 경우, 부위별로 다른 HSK 품목분류를 통해 돼지고기 부위 구분이 가능해지므로 현재와 같은 표준품명 유지 필요성은 감소한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표준품명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품목 구분 기능을 HSK 10단위 품목번호에 직접 반영하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3) 제0302.14-0000호(신선하거나 냉장한 연어)

(1) 분류체계

연어과에 속하는 어류 중 대서양연어와 다뉴브연어는 제0302.14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연어는 신선 및 냉장한 상태로, 통째로 된 것(whole)·머리가 없는 것·창자를 뺀 것이나 뼈나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과 무관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제0304호에 속하는 필레(fillet) 및 기타 어육 제품은 제외된다. 제0302.14호에 대하여 HSK는 하위 단위에 단 하나의 품목번호(HSK 0302.14-0000)만 두고 있어,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분류체계를 갖는다.

관세율의 경우, 연어과에 속하는 모든 신선·냉장 어류에 기본세율 20%가 적용된다.

〈표 4-15〉 연어과의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1		연어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1	0000	송어	20%		
13	0000	태평양 연어	20%		
14	0000	대서양 연어와 다뉴브 연어	20%		
19	0000	기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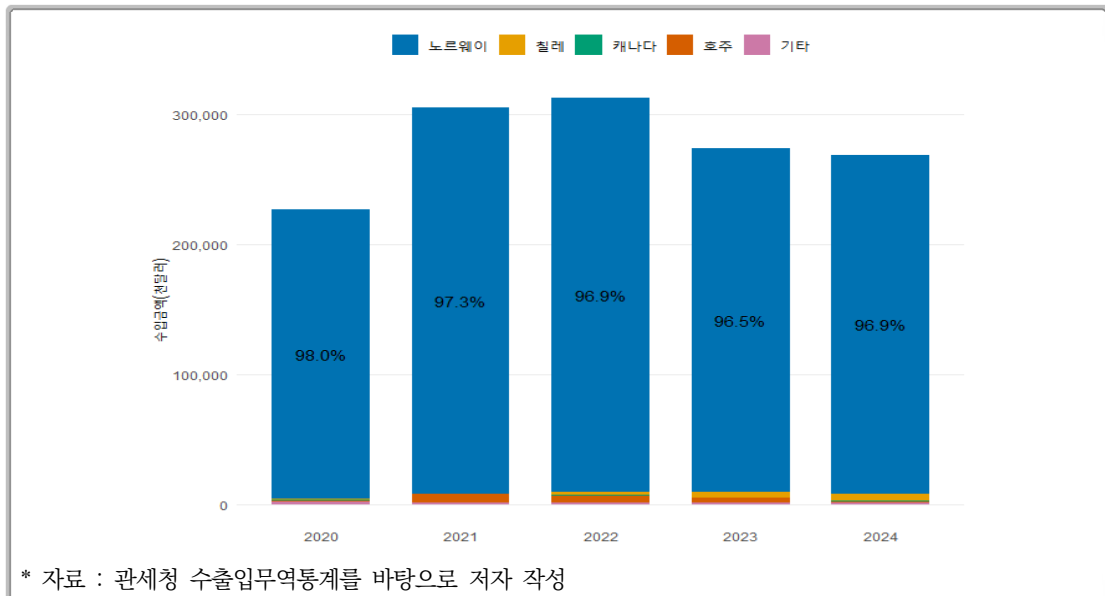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제0302.14-0000호에 분류되는 연어 수입은 최근 5년간 노르웨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노르웨이의 수입 비중은 96.9%에 달하며, 이외에 칠레, 캐나다,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도 일부 존재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연도별 수입금액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급격히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림 4-5] 제0302.14-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0302.14호에 대한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 기준인 6단위 이후 추가적인 세분 없이 단일 품목번호만 운용하고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머리 유무를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칠레는 형태와 손질 정도에 따라 ‘Whole(10)’, ‘Headed and gutted(20)’, ‘Steaked(30)’, ‘Gutted, without heads or tails(40)’, ‘Other(90)’로 비교적 상세하게 품목을 구분한다.

〈표 4-16〉 주요국 분류체계(제0302.14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노르웨이		칠레	
0302	14						
		000	Atlantic salmon(Salmo salar) and Danube salmon(Hucho hucho)	11	With head	10	Whole
				19	Other (including salmon without head)	20	Headed and gutted
				90	Other	30	Steaked
						40	Gutted, without heads or tails
						9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신선 및 냉장 연어는 현행 HSK 체계에서 단일 품목번호(HSK 0302.14-0000)에 포괄되어 분류된다. 그러나 노르웨이, 칠레 등 주요 연어 수입 상대국의 경우, 연어를 손질 상태에 따라 세분하여 각각 다른 품목번호로 구분한다.

검토 대상 품목번호의 세분화 방안으로는 ① 연어의 종(대서양연어/다뉴브연어)과 ② 형태 및 손질 정도(머리 제거 유무, 내장 제거 유무, 뼈 제거 유무 등)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있다. 종 기준은 소호 용어에 명시된 두 종을 하위 단위에서 재구분하는 방식이며, 형태·손질 기준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노르웨이와 칠레의 분류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상기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 기준에 의한 세분화는 통계적 실익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노르웨이산 연어는 대부분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로, 종(대서양연어 및 다뉴브연어) 기준에 따른 품목 구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두 종은 서식 환경(해양 및 내륙 하천)과 외형에서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식 연어는 사실상 대서양연어에 한정된다. 이로 인해 수입 단계에서 종을 기준으로 분류하더라도, 대부분의 무역량이 대서양연어에 해당하는 단일 품목번호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내로 반입되는 연어는 대부분 HOG(Head On, Guttled: 머리 포함·내장 제거) 형태이며, 이들은 국내에서 뼈 제거, 소분, 포장 등 추가 가공을 거쳐 유통된다. 또한 연어의 대표적인 손질 형태인 필레(fillet)는 이미 다른 호(HS 0304)에 분류되므로, 검토 대상 품목번호에는 필레 형태가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연어에 대한 현재의 단일 품목번호(HSK 0302.14-0000) 체계는 수입 구조·국내 유통 상황 및 분류체계를 고려할 때 종 또는 형태 기준에 따른 세분화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일 품목번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제0303.67-0000호(냉동 명태)

(1) 분류체계

①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냉동 명태는 제0303.67호에 분류되며, 이 호에는 HS 해설서 규정에 따라 통째로 된 것(whole), 머리가 제거된 것, 창자가 제거되었으나 뼈나 연골이 남아 있는 채 절단된 형태가 포함된다. 반면, 어육을 절단·분리한 필레 및 기타 어육 제품은 제0304호로, 건조 명태, 훈제 명태, 염장 어란(명란)은 제0305호로 각각 분류된다.

제0303.67호에 대하여 HSK는 하위 단위에 단일 품목번호(HSK 0303.67-0000)만을 두고 있어, 별도의 세분화 없이 단순한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0303.67-0000호의 기본 관세율은 10%이며, 2025년에는 조정관세 22%가 우선 적용되고 있다.

〈표 4-17〉 명태 종류별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조정관세 (2025-01-01 ~ 2025-12-31)
0303	67	0000	명태(냉동)	10%	22%
0302	55	0000	명태(신선·냉장)	20%	
0304	75	0000	명태 필레(fillet)	10%	
0305					
	20	4010	염장 어란	20%	
	49	2000	명태 (훈제)	20%	
	53	1000	명태 (건조)	20%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0303.67-000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규격코드가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생선 손질 방식에 따른 일반적인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 규격에서는 명태의 포란 여부(알 포함 여부)와 크기(S/M/L/XL)를 추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 4-18〉 제0303.67-0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냉동명태(내장제거)	1. 포란여부 N : 알이 없는 것 Y : 알이 있는 것 2. 21.5kg당 마리수 L : 21마리~33마리 M : 34마리~69마리 S : 70마리아상 XL : 20마리이하
02	냉동명태(머리,내장제거)	1. 포란여부 N : 알이 없는 것 Y : 알이 있는 것 2. 21.5kg당 마리수 : Size L : 21마리~33마리 M : 34마리~69마리 S : 70마리아상 XL : 20마리이하
03	냉동명태(원형)	1. 포란여부 N : 알이 없는 것 Y : 알이 있는 것 2. 21.5kg당 마리수

		L : 21마리~33마리 M : 34마리~69마리 S : 70마리이상 XL : 20마리이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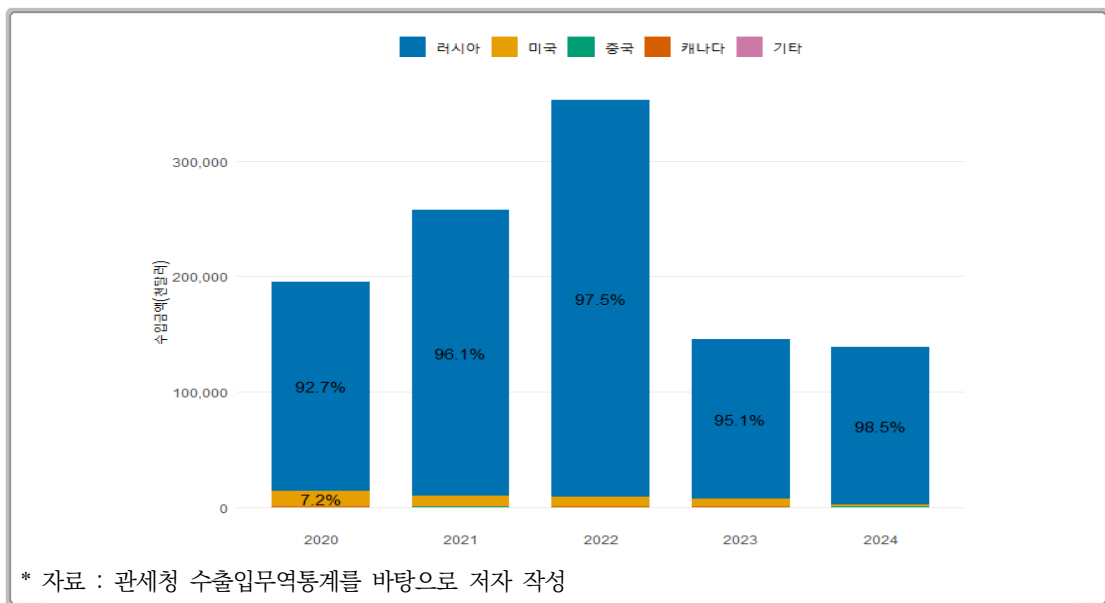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냉동 명태(HSK 0303.67-0000)의 수입은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러시아산이 전체 수입금액의 98.5%를 차지하였다. 반면 미국은 2020년 7.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1%대에 그쳤다.

총수입금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급감한 이후 2024년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6] 제0303.67-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냉동 명태에 대해서는 러시아, 미국, 일본 모두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제0303.67호의 하위 단위에 단일 품목번호만을 두는 단순한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HSK 체계는 냉동 명태를 단일 품목번호(HSK 0303.67-0000)에 포괄하고 있어 해당 번호로 무역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품목번호를 세분화하여 물품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경우, 무역 통계의 활용도와 물품 식별 기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냉동 명태에 대한 HSK 분류체계는 국제 공통의 6단위 HS 코드 이후 추가 세분을 두지 않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분류체계만의 특성이 아니라, 주요 교역국들 역시 냉동 명태를 단일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단순한 분류체계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검토 대상 품목번호에 대하여 제정된 표준품명 체계를 살펴본 결과, HSK 품목번호만으로는 냉동 명태의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없지만, 표준품명을 통해 손질 상태, 포란 여부, 크기(사이즈) 등 주요 특성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현행 표준품명 체계를 10단위 품목번호 신설을 통해 HSK 체계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HSK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무역통계의 품목 식별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또한 표준품명보다 HSK 품목번호가 규범적 효력이 더 크기 때문에, HSK 단계에서 세분화가 이루어질 경우 분류체계의 명확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품목번호 신설에는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적 절차 부담이 뒤따르며, 필요 이상의 세분화는 품목번호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냉동 명태의 경우 현행 표준품명·규격코드만으로도 이미 일정 수준의 세부 구분과 품목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HSK 차원에서 추가로 품목번호를 신설할 실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표준품명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구분을 단순히 이에 대응하는 HSK 10단위 품목번호로 신설하는 방식은, 표준품명 체계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HSK 단계에서 세분화의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현행 HSK 및 표준품명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냉동 명태의 경우 HSK를 추가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현행과 동일한 단일 품목번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제0306.17-1090호(기타 냉동 새우류)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제0306.17호에는 냉수성 새우류를 제외한 ‘그 밖의 냉동 새우류’가 분류된다. HSK 체계에서는 이 호를 8단위 수준에서 ‘새우살’과 ‘그 밖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새우살’은 훈제 여부에 따라 10단위 품목번호가 다시 세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제0306.17호의 모든 하위 품목번호에는 기본관세율 20%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4-19〉 제0306.17호의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0306	17	그 밖의 새우류(냉동)			
	10	새우살			
	10	훈제한 것	20%		
	90	기타	20%		
	90				
	10	훈제한 것	20%		
	9	기타			
	91	흰다리새우	20%		
	99	기타	20%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0306.17-109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규격코드가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새우 종에 따라 홍다리얼룩새우, 흰다리새우, 기타 새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규격 항목에서는 양식 여부, 꼬리 유무, 사이즈를 세분화하고 있다.

〈표 4-20〉 제0306.17-109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홍다리얼룩새우	1. 양식여부 N : 자연산이면 R : 양식이면 2. 꼬리유무 OFF : 꼬리 제거 ON : 꼬리 있는 것 3. 1Lbs당 마리수 2S : 301마리아상 L : 51마리~100마리 M : 101마리~200마리 S : 201마리~300마리 UL : 30마리이하 XL : 31마리~50마리
02	흰다리새우	1. 양식여부 N : 자연산이면 R : 양식이면 2. 꼬리유무 OFF : 꼬리 제거 ON : 꼬리 있는 것 3. 1Lbs당 마리수 2S : 111마리아상 L : 51마리~70마리 M : 71마리~90마리 S : 91마리~110마리 UL : 30마리이하 XL : 31마리~50마리
0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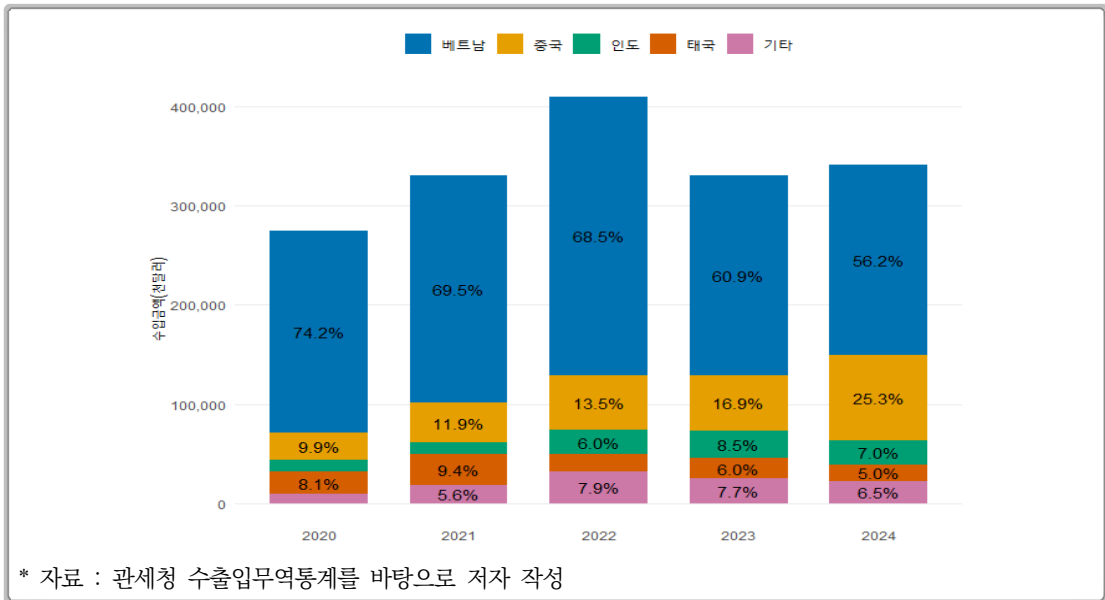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냉동 새우살(HSK 0306.17-1090, 훈제 제외)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베트남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수입금액의 약 56.2%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약 25%의 비중을 기록하며 제2의 수입 상대국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금액은 2022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7] 제0306.17-1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0306.17호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하위 단위에 단일 품목번호만을 사용하여, 5개의 품목번호로 세분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HSK에 비해 간소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최대 수입 상대국인 베트남은 먼저 종(흰다리새우·타이거새우)을 기준으로 물품을 구분한 뒤, 손질 정도(머리 유무, 꼬리 유무)에 따라 다시 세분하는 분류체계를 운용한다. 중국은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새우의 크기(사이즈)를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4-21> 주요국 분류체계(제0306.17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베트남		중국	
0306	17						
		100	Other shrimps and prawns		Giant tiger prawn	3000	Frozen other small shrimps and prawns
				11	Headless	9000	Other frozen shrimps

						and prawns
				19	Other	
					Whiteleg shrimp	
				21	Headless, with tail	
				22	Headless, without tail	
				29	Other	
				30	Giant river prawns	
				9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우리나라 HSK 체계에서는 냉동 새우류(HS 0306.17)의 무역량이 특정 ‘기타’ 품목번호(HSK 0306.17-1090)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품목번호를 세분화하여 물품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경우, 무역 통계의 활용도와 물품 식별 기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냉동 새우류에 대한 주요국의 분류체계는 전반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가장 세분화된 체계를 운용하는 베트남의 경우에도, 단순히 손질 상태에 따른 구분만을 하고 있다.

또한 검토 대상 품목번호에 대하여 제정된 표준품명 체계를 확인한 결과, HSK 품목번호만으로는 냉동 새우의 세부 형태를 식별할 수 없지만, 표준품명을 통해 새우의 종, 양식 여부, 꼬리 유무, 크기(사이즈) 등을 상당히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SK 체계에서는 단일 품목번호로 포괄하더라도 표준품명 수준에서 충분한 품목 구분 및 수입 관리가 가능한 구조이다.

이어, 현행 표준품명 체계를 HSK의 10단위 품목번호로 직접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냉동 명태 항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표준품명 체계의 오류나 HSK 차원의 세분화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도한 HSK 세분화가 행정 부담 증가와 품목번호 관리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냉동 새우의 경우 표준품명 제도를 통해 이미 품목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의 분류체계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과 동일한 단일 품목번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제0306.33-9000호(살아있거나 신선·냉장한 계)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살아 있거나 신선 및 냉장 상태의 계는 제0306.33호에 분류된다. 이 소호는 HSK 체계에서 꽃계(-10), 대계(-20), 기타(-90)로 세분되며, ‘기타’ 품목번호에는 대표적으로 왕계(킹크랩)가 포함된다. 각 품목번호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모두 20%로 동일하다.

〈표 4-22〉 제0306.33호의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0306	33	계(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10 00 꽃계	20%		
		20 00 대계	20%		
		90 00 기타	20%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0306.33-900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규격코드가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별 구분(킹크랩·털계·기타), 암수 구분, 사이즈, 다리 개수 등을 기준으로 품목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표 4-23〉 제0306.33-9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왕계(산 것, Red)	1. 암수구분 F : 암컷 M : 수컷 2. 마리당 중량 L : 3kg~4kg미만 M : 1kg~3kg미만 S : 1kg미만 UL : 5kg이상 XL : 4kg~5kg미만 3. 다리탈락개수 H : 2개 L : 0개 M : 1개 VH : 3개이상

02	왕게(산 것, Blue)	1. 암수구분 F : 암컷 M : 수컷 2. 마리당 중량 L : 3kg~4kg미만 M : 1kg~3kg미만 S : 1kg미만 UL : 5kg이상 XL : 4kg~5kg미만 3. 다리탈락개수 H : 2개 L : 0개 M : 1개 VH : 3개이상
표준품명 (03~08)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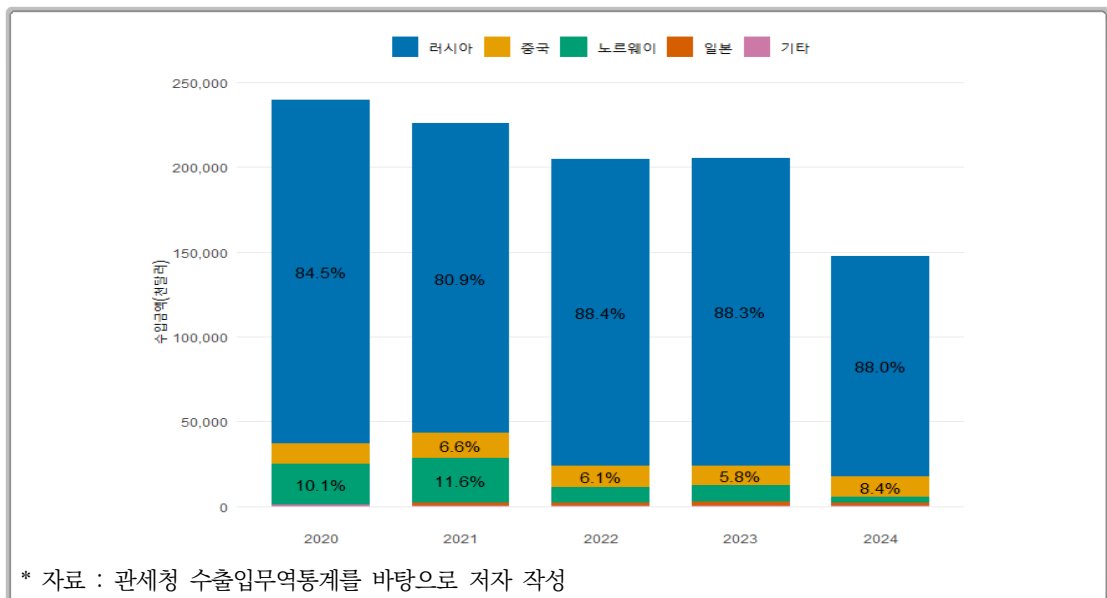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HSK 제0306.33-9000호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러시아로, 최근 5년간 전체 수입금액의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에는 중국이 러시아에 이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 수입금액은 2020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8] 제0306.33-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0306.33호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계의 종류에 따라 꽃게, 대게, 그 밖의 계의 세 품목번호로 세분하는 반면, 러시아는 브라운크랩을 별도의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운용하는 국가로, 일본은 킹크랩, 스노우크랩, 꽃게 등 주요 종을 구분하고 있으며, 중국은 종자를 기준으로 1차 구분을 한 다음, 참게, 꽃게, 킹크랩, 털게 등으로 추가 세분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표 4-24〉 주요국 분류체계(제0306.33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러시아		중국	
0306	33						
		110	King crabs	1000	Crabs of the species Cancer pagurus	10	Seedlings
			Snow Crabs	9000	Other	1000	Crab Seedlings
		121	Red snow crabs			9	Other
		129	Other			91	Chinese mitten crabs
		130	Swimming crabs			9100	Live, fresh or chilled Chinese mitten crabs in shell or without shell
		140	Horsehair crabs			92	Swimming crab
		150	Mitten crabs			9200	Live, fresh or chilled, in shell or without shell
		190	Other			99	Other
						9910	Live, fresh or chilled king crab, hairy crab, imitation rock crab, Kamchatka stone crab, short-legged stone crab, flat-legged stone crab, snow crab, Japanese snow crab
						9990	Other live, fresh or cold crabs in shell or without shell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우리나라 HSK 체계에서는 계류(HS 0306.33)의 무역량이 특정 '기타' 품목번호(HSK 0306.33-9000)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¹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품목번호를 세분화하여 물품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경우, 무역 통계의 활용도와 물품 식별 기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현재 HSK 체계에서는 꽃게(HSK 0306.33-1010), 대게(HSK 0306.33-2010) 등 소비 비중이 큰 일부 품종에 대해 별도의 품목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 품종은 모두 단일 품목번호(HSK 0306.33-9000)에 포괄하고 있다.

다만 검토 대상 품목번호(HSK 0306.33-9000)에는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HSK 체계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종별 구분(킹크랩·털게·기타), 암수 구분, 크기(사이즈), 다리 개수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HSK 체계의 물품 식별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어, 현행 표준품명 체계를 HSK의 10단위 품목번호로 직접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냉동 명태 항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표준품명 체계의 오류나 HSK 차원의 세분화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HSK 세분화는 행정 부담 증가와 품목번호 관리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류에 대해서는 현행 HSK와 동일하게 단일 품목번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제0307.43-2090호(냉동 오징어)

(1) 분류체계

제0307.43호에 분류되는 냉동 오징어류는 HSK 체계에서 갑오징어(-10)와 오징어(-20)로 구분되며, 각 호는 다시 종별로 세분되는 구조를 갖는다.

오징어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종에 따라 10%와 20%로 상이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한치·꼴뚜기 및 연육을 제외한 오징어에 대해 조정관세 22%가 부과되고 있다.

15) 2023년 기준 계가 분류되는 제0306.33호 전체 교역량 중 '기타' 품목번호인 제0306.33-9000호가 59.36%를 차지한다.

〈표 4-25〉 제0307.43호의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조정관세 (2025-01-01 ~ 2025-12-31)	
0307	43		냉동 오징어		
		10	갑오징어		
		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로시아 마크로스마(<i>Rossia macrosoma</i>)·세피올라 (<i>Sepiola</i>)속	10%	
		90	기타	20%	
		20	오징어		
		10	오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속·로리고 (<i>Loligo</i>)속·노토타다루스(<i>Nototodarus</i>)속·세 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속	10%	22%
		90	기타	2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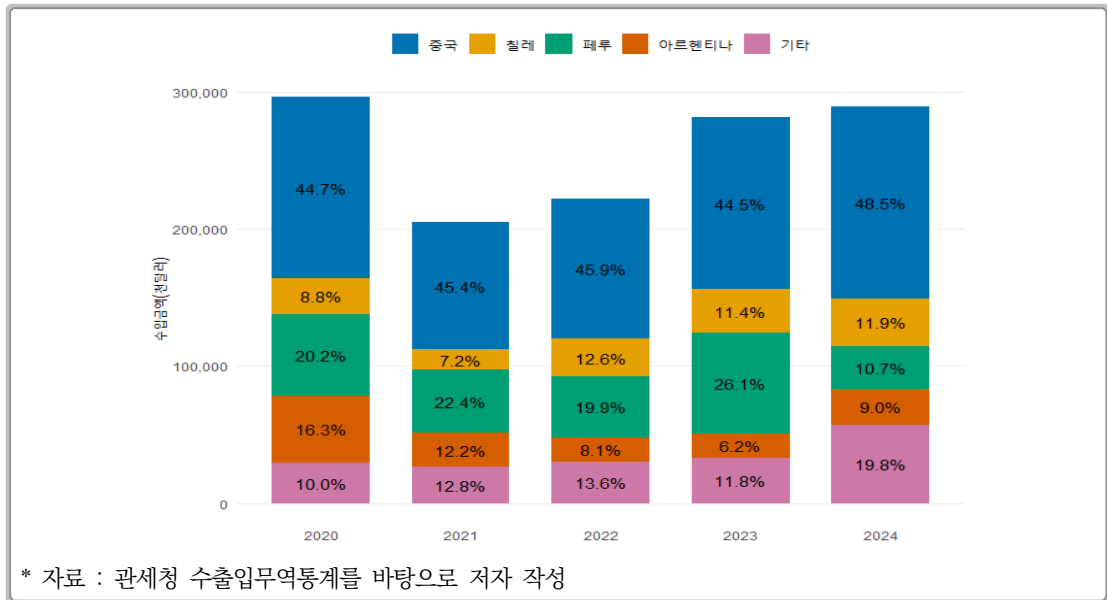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기타 냉동 오징어가 분류되는 품목번호(HSK 0307.43-2090)의 수입금액은 중국산이 약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칠레·페루·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수입금액은 2020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9] 제0307.43-2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0307.43호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HSK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먼저 구분한 뒤 각 범주 내에서 하위 종을 추가로 세분하는 방식이다. 일본·중국·칠레 역시 오징어를 종별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운용하며, 이 가운데 칠레는 종별 구분 뿐만 아니라 필레, 날개, 몸통 등 부위별 세분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4-26> 주요국 분류체계(제0307.43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중국		칠레
0307	43					
		010	Mongo ika	1000	Frozen cuttlefish (Sepia, Giant monkfish, Sepia) and squid (Ocellated squid, Loligo, Sepia, Sepia)	10 Squid(Ommastrephes spp.)
		020	Neon flying squid (Ommastrephe	9000	Other frozen cuttlefish and squid	20 Cuttlefish fillets or red squid

		s bartramii)			
	030	Japanese flying squid (Todarodes pacificus), jumbo flying squid(Dosidicus gigas)....			30 Cuttlefish wings or red squid
	090	Other			40 Tubes or pods of cuttlefish or red squid
					9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세분화 기준

① 생물학적 분류

현행 HSK는 일부 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징어를 동일한 품목번호에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에서는 종별 무역량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 종별 수급 동향이나 무역 패턴을 파악할 수 없다. 생물학적 분류에 따른 HSK 세분화는 교역 규모가 크거나 상품 특성이 뚜렷한 주요 종을 중심으로, 별도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별도의 품목번호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오징어 종으로는 *Dosidicus gigas*, *Illex argentinus*, *Todarodes pacificus* 등을 들 수 있다.

*Dosidicus gigas*는 일반적으로 ‘대왕오징어’로 알려진 종으로, 비교적 저가의 원료로서 가공식품 제조에 주로 활용된다. *Illex argentinus*는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오징어’로 불리며 국제 교역량이 매우 큰 종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널리 분포하는 *Todarodes pacificus* 역시 국내외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종이다.

② 부위별·손질 상태에 따른 구분

본 항목에서의 HSK 세분화는 수입되는 오징어가 어떠한 형태로 손질·가공된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오징어는 손질 상태에 따라 전체(whole), 슬라이스(slice), 필레(fillet), 날개(wing), 몸통(tub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분류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칠레 사례와 유사한 세분화 방식이다.

(5) 검토 의견 및 개선안

2024년 기준 냉동 오징어가 분류되는 제0307.43호의 전체 교역량 중 ‘기타’ 품목번호(HSK 0307.43-2090)가 81.1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목번호에 교역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기타’ 품목번호를 세분화하여 물품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이를 통해 무역 통계의 활용성 및 물품 식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SK 개선 방향을 다음의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하였다.

① 개선안-1

본 개선안은 냉동 오징어에 대하여 부위별·손질 상태별 구분을 세분화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수입 형태를 몸통, 지느러미, 필레 등 주요 부위와 손질 상태별로 세분화하여 품목번호에 반영할 경우, 부위별 수입 현황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오징어 제품의 형태를 수입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징어를 부위별로 세분화할 때 주요 쟁점은 어떤 부위를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수입되는 오징어의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HSK 체계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검역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냉동 오징어의 수입 형태를 간접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체, 지느러미, 다리, 슬라이스 등의 부위가 수입 검역 중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안은 이들 주요 부위를 기준으로 HSK 품목번호를 세분화하였다.

〈표 4-27〉 수입식품(수산물) 검역 중량

대표품목별(수산물)	수입식품 검역 중량(KG)		
	2024년	2023년	2022년
오징어(냉동)	39,873,061	37,736,172	34,789,462
오징어(냉동,동체)	21,340,802	32,999,475	22,998,009
오징어(냉동,지느러미)	21,215,304	22,467,538	24,340,272
오징어(냉동,동체,자숙)	10,444,382	18,858,947	17,186,953
오징어(냉동,다리)	6,249,468	12,741,598	8,051,644
갑오징어(냉동)	4,774,990	4,676,343	4,432,205
갑오징어(냉동,동체)	935,213	996,121	746,007
오징어(냉동,지느러미,자숙)	471,410	1,253,923	902,008

아르헨티나짧은꼬리오징어(냉동)	344,838	1,550	24,650
갑오징어(냉동,슬라이스(S),포장횡감)	243,916	194,706	201,643
오징어(냉동,자숙)	145,650	38,440	180,936
오징어(냉동,다리,자숙)	145,394	486,660	94,400

* 자료 : 수입식품정보마루

② 개선안-2

특정 오징어 종은 국제무역에서 상업적 가치가 높은 수산물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한 *Todarodes pacificus* 종과 남미 해역에서 주로 어획되는 *Dosidicus gigas*, *Illex argentinus* 등이 대표적이다. 본 안은 현재 ‘기타’ 품목번호에 포괄되어 분류되고 있는 오징어를 주요 종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산지·가격·품질 등이 상이한 오징어 종을 구분하여 무역 통계 집계가 가능하다.

오징어에 대한 현행 관세율표 체계의 특징은 일부 특정 종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그 외 오징어에는 2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타’ 품목번호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20%)이 적용되고 있는 주요 종을 별도의 품목번호로 구분하는 것은, 종별 세율 차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표 4-28〉 오징어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①		개선안 ②
0307	43				
		20 오징어			
		10 오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90 기타	91 (신설) 전체	20 (신설)	<i>Todarodes pacificus</i> 종 (살오징어)
			92 (신설) 동체	30 (신설)	<i>Dosidicus gigas</i> 종 (아메리카대왕오징어)

					93 (신설)	지느러미	40 (신설)	Illex argentinus 종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 오징어)
					94 (신설)	다리	90	기타
					95 (신설)	슬라이스		
					99 (신설)	기타		

2. 제2부 식물성 생산품

1) 제0803.90-0000호(신선하거나 건조한 바나나)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바나나는 제0803.90호에 분류된다. 현행 HSK 분류체계에서는 제0803.90호를 추가로 세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 단위에는 단일 품목번호(HSK 0803.90-0000)만이 존재한다. 외형은 바나나와 유사하지만 전분질 비중이 높은 플랜틴(plantain)은 별도의 소호인 제0803.10호에 분류되며, 제0803.90호에 속하는 바나나와는 함께 분류되지 않는다.

제0803.90호의 기본 관세율은 30%이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신선 바나나에 대해 200,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었다.

〈표 4-29〉 제0803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할당관세 (2025-01-24 ~ 2025-06-30)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000 플랜틴(plantain)	30%	
	90 0000 기타	30%	0%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0803.90-000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수입 바나나를 ① 그린 바나나, ② 캐번디시 바나나, ③ 기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품명별 세부 규격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표 4-30〉 제0803.90-0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그린바나나	-
02	캐번디시 바나나	-
03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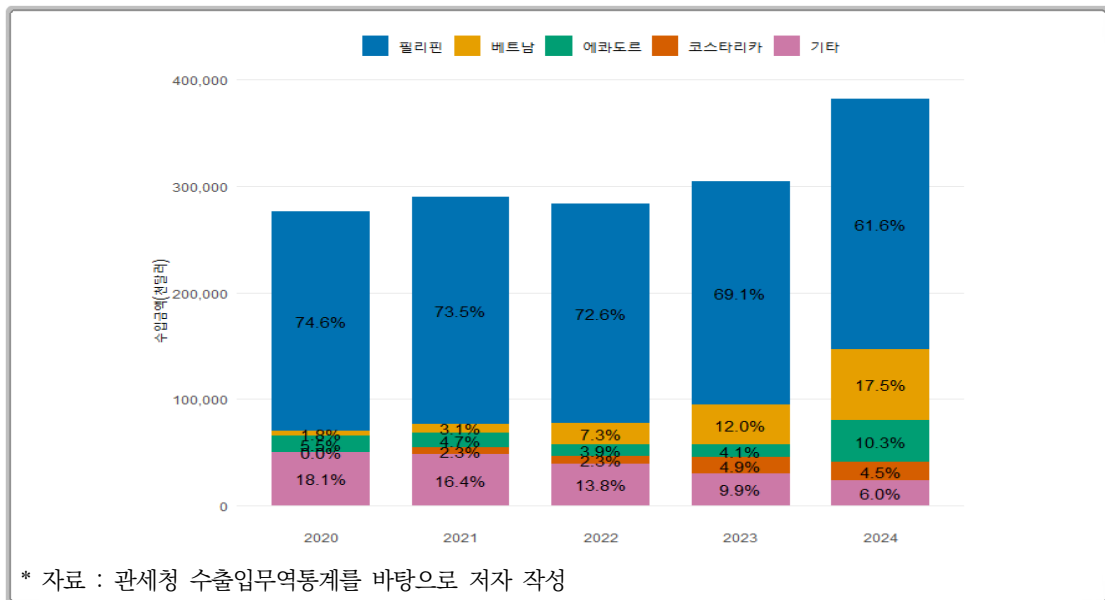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바나나(HSK 0803.90-0000)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필리핀으로, 최근 5년 간 수입금액 비중이 과반을 상회한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1.8%에서 17.5%로 비중을 크게 확대하며 제2의 공급국으로 부상하였고, 에콰도르 또한 5.5%에서 10.3%로 상승하였다.

전체 바나나 수입금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4년에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4-10] 제0803.9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바나나의 주요 수입 상대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은 품종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바나나를 Lady's finger banana(-10), Cavendish banana(-20), Chestnut banana(-30), 기타(-90)로 구분하며, 이는 국제 공통 6단위 이후 추가 세분 없이 단일 10단위 품목번호(HSK 0803.90-0000)만을 사용하는 우리 HSK 체계에 비해 보다 세분화된 구조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조 바나나와 신선 바나나를 먼저 구분한 뒤, 신선 바나나는 다시 수입 시기를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계절(여름·겨울)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체계를 분류상에 반영한 것이다.

〈표 4-31〉 주요국 분류체계(제0203.29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필리핀		베트남	
0803	90						
			Freshed	10	Lady's finger banana	10	Lady's finger banana
		100	(1)If imported during the period from 1st April to 30th September	20	Cavendish banana (Musa acuminata)	20	Cavendish banana (Musa acuminata)
		100	(2)If imported during the period from 1st October to 31st March	30	Chestnut banana (hybrid of Musa acuminata and Musa balbisiana, cultivar Berangan)	30	Chestnut banana (hybrid of Musa acuminata and Musa balbisiana, cultivar Berangan)
		200	Dried	90	Other	9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현행 HSK 체계에서는 바나나가 분류되는 국제 공통의 6단위 번호(HS 0803.90)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세분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바나나(신선 및 건조한 것)는 단일 품목 번호(HSK 0803.90-0000)에 포괄되어 분류된다.

분석 대상 품목번호의 세분화 방안으로는 ① 필리핀·베트남 사례와 같이 품종을 기준으로 세분하는 방식과, ② 바나나의 상태, 즉 신선/건조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하는 방식

이 있다.

상기 두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나나를 품종별로 구분하는 방식은 국내 소비 구조를 고려할 때 실익이 제한적이다. 국내 시장에서 캐번디시(Cavendish) 품종이 사실상 대부분의 바나나 소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캐번디시 이외의 품종을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인 상태 기준(신선/건조)으로 품목을 세분하는 방식은 HSK 개선의 실익이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EU도 바나나의 상태(신선/건조)를 구분하는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5년 1월~6월 신선 바나나에 대한 할당관세(TRQ)가 운용된 사례에서 보듯, 상태 기준 구분은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상이한 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품목번호의 표준품명을 검토하였다. 현행 표준품명은 바나나를 ‘그린 바나나’와 ‘캐번디시 바나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 방식은 품종(캐번디시)과 숙성 상태(그린 바나나: 덜 익은 상태)가 혼재되어 있어 분류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숙성이 덜 된 캐번디시 바나나는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캐번디시가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품종이 아닌 상태(예: 그린 바나나/후숙 완료 바나나)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의 HSK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안은 먼저 신선/건조 여부를 기준으로 바나나를 구분한 뒤, 신선 바나나에 한하여 현행 표준품명 분류 기준을 개선하여 ‘그린 바나나’와 ‘그 외(후숙 상태의 바나나)’로 세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계는 관세 제도 운영상 필요한 상태 구분(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상품적으로 유의미한 구분 요소인 숙성 여부를 HSK 체계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4-32〉 바나나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동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0803	90				
		0000	기타	10	신선한 것
		표준 품명	01 그린 바나나	10 (신설)	그린 바나나
			02 캐번디시 바나나	20 (신설)	기타
			03 기타	20 00 (신설)	건조한 것

2) 제0901.11-0000호(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와 제0901.21-0000호(로스팅한 커피)

(1) 분류체계

커피가 분류되는 제0901호는 로스팅 여부에 따라 볶지 않은 커피(HS 0901.1-)와 볶은 커피(HS 0901.2-)로 구분되며, 각 범주는 다시 카페인 제거 여부에 따라 6단위 소호로 세분된다. HSK는 국제 공통 수준(HS 6단위)을 넘어서는 추가 세분을 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무역 통계는 로스팅 여부와 카페인 제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수입 관세율의 경우, 로스팅 여부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며, 볶지 않은 커피의 기본 관세율(2%)이 볶은 커피(8%)보다 낮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표 4-33〉 제0901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할당관세 (2025-01-01 ~ 2025-12-31)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 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0%
	12	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0%
	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22	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90	기타		
		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9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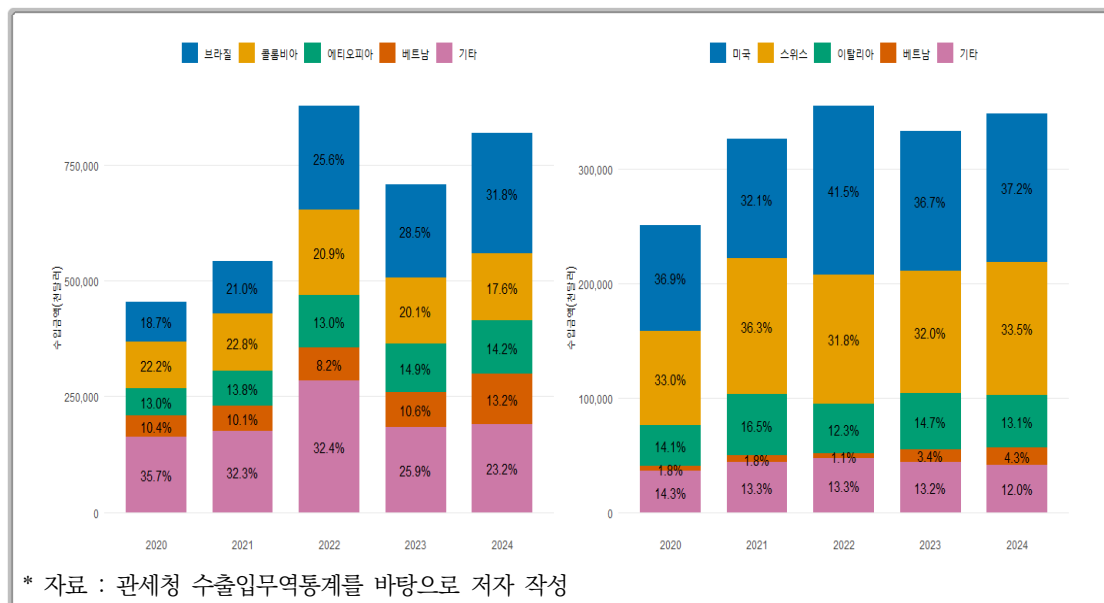
커피의 수입 구조는 소수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로스팅 여부에 따라 주요 공급국 구성이 상이한 점이 특징이다. 볶지 않은 커피(HSK 0901.11-0000)의 경우, 2024년 기준 브라질이 수입금액 비중 31.8%로 최대 수입국이며, 그 뒤를 콜롬비아, 에

티오피아, 베트남이 있다.

반면 볶은 커피(HSK 0901.21-0000)는 주로 미국과 스위스로부터 수입되며, 두 국가의 합계 비중은 2024년 기준 70%를 상회한다. 이 외에 이탈리아가 13.1%, 베트남이 4.3%의 비중을 차지한다.

요컨대, 볶지 않은 커피는 브라질·콜롬비아·에티오피아·베트남을 중심으로, 볶은 커피는 미국·스위스·이탈리아·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그림 4-11] 제0901.11-0000호 및 제0901.21-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카페인 함유 커피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을 비롯해 주요 커피 공급국인 브라질·콜롬비아는 단순한 체계를 운용하는 반면, 미국과 베트남은 비교적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분류체계는 품종(Arabica/Robusta/Other)을 1차 기준으로 설정한 뒤, 각 품종별로 유기농 인증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함으로써 품종과 인증 여부를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볶은 커피(HS 0901.21)에 대해서는 2kg 이하 소매포장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베트남은 품종(Arabica/Robusta/Other) 및 분쇄 여부(볶은 커피의 경우)를 기준으로 커피를 분류하고 있다.

〈표 4-34〉 주요국 분류체계(제0901.11호 및 제0901.21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미국		베트남	
0901	1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0	Not decaffeinated	20	Arabica
					Arabica:	30	Robusta
				0015	Certified organic	90	Other
				0025	Other		
					Robusta:		
				0035	Certified organic		
				0040	Other		
					Other		
				0050	Certified organic		
				0065	Other		
0901	2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0	Not decaffeinated		Unground
					In retail containers weighing 2kg or less:	11	Arabica
					Arabica:	12	Robusta
				0015	Certified organic	19	Other
				0020	Other	20	Ground
					Robusta:		
				0025	Certified organic		
				0029	Other		
					Other:		
				0040	Certified organic		
				0049	Other		
					Other:		

			0055	Certified organic		
			0065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커피는 수입 규모가 매우 큰 품목으로, 로스팅 여부에 따라 주요 공급국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현행 HSK 체계는 커피에 대해 비교적 단순한 분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HSK 0901.11-0000)와 로스팅한 커피(HSK 0901.21-0000) 등 일부 품목번호로 무역통계가 과도하게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번째는 커피 품종에 따른 구분 방식으로, 아라비카(Arabica)와 로부스타(Robusta) 등 주요 품종별로 HSK 품목번호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미국과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체계이다. 두번째는 포장 형태에 따른 구분 방식으로, 유리병·종이백·티백·캡슐 등 소매용 포장과 대용량 벌크 포장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상기 두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 품종과 관련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전 세계 커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종으로, 맛과 향, 재배 환경, 주요 용도, 가격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라비카는 일반적으로 고급 품종으로 인식되어 단가가 높고, 주로 스페셜티 커피나 카페용 원두로 사용된다.

반면 로부스타는 아라비카에 비해 재배가 용이하고 가격이 낮으며, 카페인 함량이 높아 인스턴트 커피의 주요 원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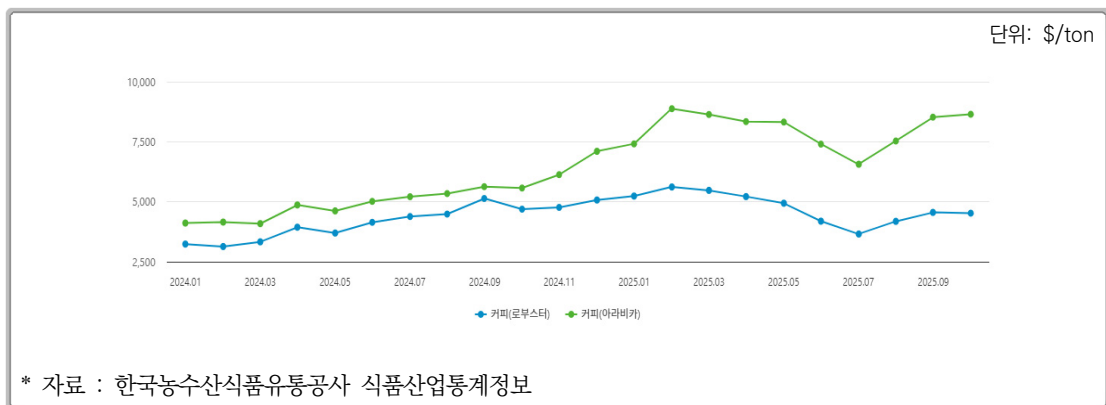
〈표 4-35〉 품종별 원두 종류

원두 종류	주요 특징
아라비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라비카는 전 세계 커피 원두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함 과일, 꽃, 초콜릿 등 다양한 향미를 지니고 있으며 부드럽고 균형잡힌 맛을 제공하며, 섬세한 산미가 특징임 로부스타 대비 카페인 함량이 낮아 부드럽고 쓴맛이 덜함 열대 기후 지역의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그 기후와 토양이 독특한 향미와 품질에 영향을 미침 주요 재배지는 에티오피아, 케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브라질, 자메이카, 멕시코, 인도 등임

로부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부스타는 전 세계 커피콩 생산량의 약 45% 정도를 차지함 • 아라비카에 비해 향기가 약하고 쓴맛이 강하며 산미가 적은 편이지만, 카페인 함량은 아라비카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음 • 아라비카처럼 높은 고도가 아니어도 다양한 고도에서 재배가 용이함 • 30도 이상의 온도에 7-8일 견딜 수 있고 기생충과 질병에도 강해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함 • 커피 블렌딩이나 인스턴트와 같은 대량 생산용 커피 제품에 주로 사용됨 •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견된 수집종이며 베트남, 브라질,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함
------	--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4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커피)

[그림 4-12] 커피 원두 품종별 국제 거래가격



이처럼 커피 품종 간 가격 및 주요 용도의 차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역 통계 작성 시 품종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충분한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커피의 품종을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수입 통계를 품종별로 집계할 경우, 품종별 수입가격 및 물량 변동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스페셜티·인스턴트 등 용도별 수요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둘째, 포장 형태에 따른 구분은 커피의 용도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로스팅 한 원두의 경우 사무공간, 카페, 가정에서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소매용(유리병, 종이백, 캡슐 등)과, 주로 제조용에 사용되거나 판매 전에 추가 소분이 필요한 대용량 벌크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용 포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2kg 이하를 소매용 포장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매용 포장은 약 200g~1kg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량 1kg을 기준으로 소매 포장과 벌크 포장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HSK 개선안은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재배·소비되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기준으로 품종별 세분화를 실시하고, 로스팅 원두에 대하여는 소매 포장된 형태를 추가로 구분하는 체계이다.

〈표 4-36〉 커피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동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000 (신설)	아라비카
				2000 (신설)	로부스타
				9000 (신설)	기타
	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0	소매용 포장(1kg 이하)
				1010 (신설)	아라비카
				1020 (신설)	로부스타
				1090 (신설)	기타
				90	기타
				9010 (신설)	아라비카
				9020 (신설)	로부스타
				9090 (신설)	기타

3) 제1001.99-2090호(제분용 밀과 메슬린)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제1001.99호에 분류되는 밀(듀럼밀 제외)은 HSK 체계에서 용도에 따라 사료용(-10), 제분용(-20), 기타(-90)로 세분되며, 각 용도별 품목은 다시 밀과 메슬린으로 구분된다. 기본 관세율은 밀 1.8%, 메슬린 3%이며, 사료용 밀은 다른 품목보다 낮은 0% 관세율이 적용된다.

〈표 4-37〉 제1001.99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1001	99	기타 밀과 메슬린(meslin)			
	10	사료용			
	10	메슬린(meslin)	3%		
	90	기타	0%		
	20	제분용			
	10	메슬린(meslin)	3%		
	90	기타	1.8%		
	90	기타			
	10	메슬린(meslin)	3%		
	90	기타	1.8%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1001.99-2090)에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밀의 경도와 품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밀의 상업적 분류체계를 반영한 구분으로 볼 수 있다.

〈표 4-38〉 제1001.99-209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경질의 밀	1. 품종 01 : 적색 겨울밀 02 : 기타
02	연질의 밀	1. 품종 01 : 백색밀 02 : 기타
03	기타	1. 품종 01 : 백색밀 02 : 봄밀 03 : 적색 봄밀 04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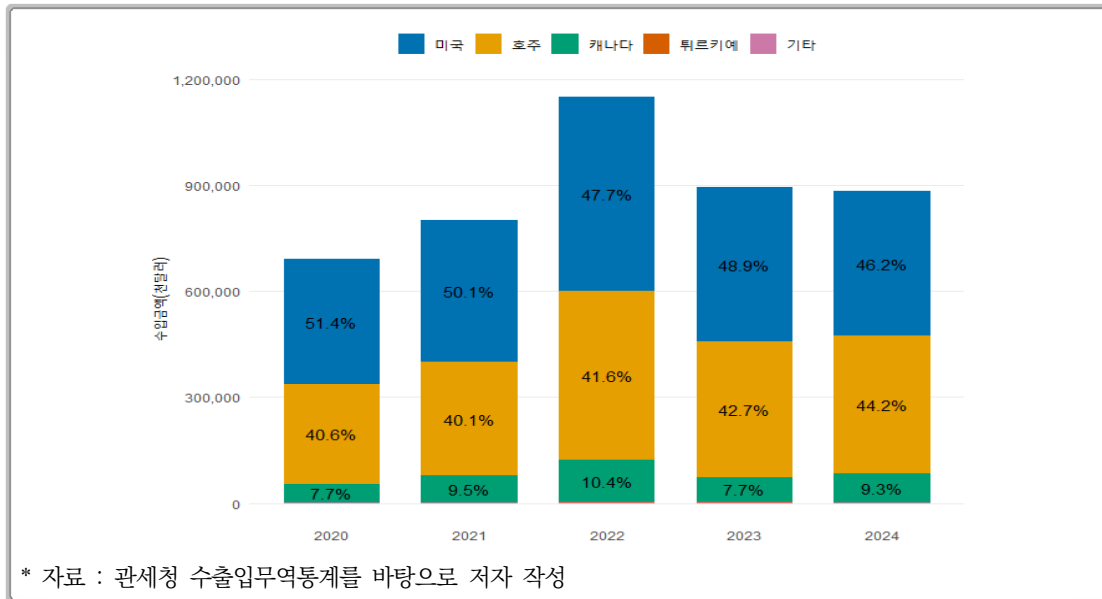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제분용 밀의 수입은 주로 미국과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두 국가가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2020년 51.4%에서 2024년 46.2%로 점유율이 다소 감소한 반면, 호주는 같은 기간 40.6%에서 44.2%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캐나다는 8~10% 수준의 점유율을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국가는 수입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수입금액은 2022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후 소폭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3] 제1001.99-2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1001.99호의 밀에 대한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수급안정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수입분을 먼저 구분한 후, 그 밖의 물량에 대해서 사료용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단일 품목번호만을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미국의 분류체계는 유기농 인증 여부, 파종 시기(spring/winter), 색상(red/white), 경도(hard/soft), 등급, 단백질 함량 등을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하여, 비교 대상국 가운

데 가장 세분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표 4-39〉 주요국 분류체계(제0203.29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미국		호주
1001	99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2....	00	Other	0024 Other
	011	-- Meslin	0005	Canadian western extra strong hard red spring (CWES/HRS) wheat	
		-- Other		Other:	
	016	--- For feeding purposes		Certified organic:	
	019	--- Other	0007	Red spring wheat	
		- Other	0009	Other	
	091	-- Meslin		Other:	
		-- Other		Red spring wheat:	
	096	--- For feeding purposes		Grade 1:	
	099	--- Other	0010	Having a specified protein content not exceeding 12.9% by weight	
			0017	Having a specified protein content exceeding 12.9% but not exceeding 13.9% by weight.	
			0018	Having a specified protein content exceeding 13.9% by weight	
				Grade 2:	
			0027	Having a specified protein content not exceeding 12.9% by weight	
			0030	Having a specified protein content exceeding 12.9% but not exceeding 13.9% by weight.	
			0033	Having a specified protein content exceeding 13.9% by weight.	

				0036	Other red spring wheat		
				0045	White winter wheat		
				0055	"Canadian" western red winter wheat		
				0065	Soft white spring wheat		
				0097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현행 HSK 체계는 제1001.99호에 해당하는 밀을 총 6개의 10단위 품목번호로 세분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전체 교역량의 63.66%가 제1001.99-2090호(기타 제분용 밀)에 집중되는 등 특정 품목번호로 교역량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품목번호를 세분화하여 물품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경우, 무역 통계의 활용도와 물품 식별 기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주요 밀 생산국은 상업적 분류체계를 통해 밀을 구분하고 있다. 미국은 파종 시기(봄·겨울), 껍질 색상(적색·백색), 경도(경질·연질)를 기준으로 대표 품종을 분류한다. 경질밀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종실이 단단해 주로 제빵용으로 사용되며, 연질밀은 단백질 함량이 낮고 종실이 부드러워 제과용에 적합하다.

주요 품종으로는 경질 적색 겨울밀(Hard Red Winter Wheat, HRW), 연질 적색 겨울밀(Soft Red Winter Wheat, SRW), 경질 적색 봄밀(Hard Red Spring Wheat, HRS), 연질 백색밀(Soft White Wheat, SW), 경질 백색밀(Hard White Wheat, HW)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밀의 단백질 함량은 7.0~13.0% 사이이며, 이는 밀가루의 종류와 용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이러한 상업적 분류 기준을 HSK 체계에 반영할 경우, 수입밀의 용도별, 품질별 수급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무역 통계 및 수급 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실익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 분류체계는 이미 밀의 주요 용도인 사료용과 제분용을 HSK 체계에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제분용 밀이 분류되는 제1001.99-2090호의 경우 표준품명을 통해 경질·연질 여부와 주요 품종(적색 겨울밀, 백색밀, 봄밀 등)을 추가로 세분하고 있다.

비록 주요 밀 생산국인 미국의 분류체계만큼 세밀한 상업적 분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표준품명 및 필수규격 신고를 통해 일정 수준의 세부 구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HSK 체계의 개정 필요성은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수입 밀에 대하여 HSK 체계는 이미 용도(사료용·제분용)를 기준으로 품목번호를 나누고 있고, 표준품명 체계는 제분용 밀의 상업적 분류체계를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한 HSK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제1214.90-9090호(기타 사료용 식물)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제1214.90호의 사료용 식물은 HSK 체계상 뿌리채소류(-10)와 기타(-90)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기타(-90)는 다시 루우산(알팔파) 베일(묶음)과 그 밖의 품목으로 세분된다.

이 호의 해설서에 따라 뿌리채소류에는 스위트(rutabaga), 멥골드(mangold), 사료용 순무(turnips), 사료용 당근(백색 또는 담황색) 등이 포함된다. 루우산의 경우 베일 형태만이 제1214.90호에 분류되며, 가루나 펠릿 형태는 제1214.10호로 분류된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루우산 베일의 기본세율은 1%로 가장 낮은 반면, 뿌리채소류와 루우산 외 기타 품목에는 미추천 시 100.5%(W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표 4-40〉 제1001.99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할당관세 (2025-01-01 ~ 2025-12-31)
				기본	W1	W2	
1214	90		기타 사료용 식물				
		10 00	사료용 뿌리채소류	20%	5%	100.5%	0% (900,000톤)
		90	기타				
		1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11	사료용	1%			
		10	기타	18%			
		90	기타	20%	5%	100.5%	0% (900,000톤)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1214.90-909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건조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들 품목은 모두 상업적 활용도가 높아 실제 유통 및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이다.

〈표 4-41〉 제1214.90-909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귀리건초	-
02	라이그래스건초	-
03	버뮤다그래스건초	-
04	블루그래스건초	-
05	오차드그래스건초	-
06	티모시건초	-
07	페스큐건초	-
08	클라인그래스건초	-
09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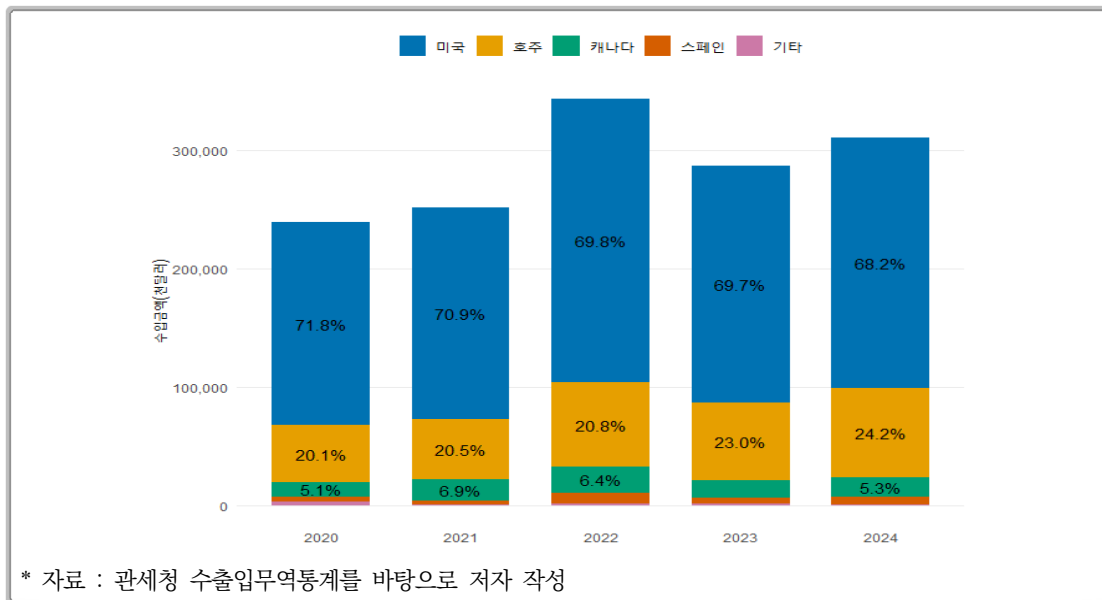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사료용 식물(HS 1214.90)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미국으로, 최근 5년간 미국산 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의 약 68~72%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약 20~25% 수준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주요 공급국이며, 그 외 국가는 모두 수입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수입금액은 2022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였으나, 2024년에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4] 제1214.90-9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1214.90호(사료용 식물)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6단위 이후에도 비교적 세분화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건초를 압축한 큐브 형태만을 별도 품목번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건초의 종류를 중심으로 알팔파, 티모시, 클로버 등을 세분하는 체계를 운용한다.

반면 호주는 단일 품목번호만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표 4-42〉 주요국 분류체계(제1214.9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미국		호주	
1214	90						
		010	In cube	00	Hay:	0033	Other
		090	Other	0010	Alfalfa, whether or not double compressed		
				0018	Timothy		
				0025	Other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미국		호주
			0030	Clover	
			009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제1214.90호(사료용 식물)의 하위 단위에는 총 4개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기타’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제1214.90-9090호는 2024년 기준 제1214.90호 전체 수입금액의 82.49%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품목번호에 수입량이 과도하게 집계되고 있다. 반면, 사료용 뿌리채소(HSK 1214.90-1000)의 최근 5년간 수입금액은 총 5천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1214.90-9090)에는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건초 유형별로 구분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귀리, 라이그래스, 버뮤다, 블루그래스, 오차드, 티모시, 페스큐, 클라인그래스 등 총 8개 건초 품목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이 실제 수입 유통되는 주요 건초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수입 식물검역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검역 데이터 확인 결과,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수입량을 기록한 품목은 페스큐 건초로, 해당 품목은 표준품명 07번과 대응된다.

반면 수입량이 상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품명 상에 별도 구분이 없어 ‘기타’ 코드로 포괄되고 있는 품목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혼합건초와 보리짚은 최근 3년 동안 10위 이내의 많은 수입량을 기록한 품목들이지만, 현행 HSK 체계와 표준품명 체계 모두에서 기타 품목으로만 분류되고 있다.

보리짚은 식물검역 수량이 2024년 기준 7위에 해당할 정도로 수입이 많은 품목이다. 다만 사료용 식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제1214.90호(사료용 식물)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식물검역 온라인민원시스템상에서는 보리짚이 제1214.90-9090호로 분류된다. 그러나 보리는 곡물에 해당하므로 그 짚(straw)은 호의 용어에 따라 제1213.00-0000호(곡물의 짚과 껍질)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213호에는 사료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곡물의 짚’은 원칙적으로 제1213호에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리짚은 주요 사료용 건초에는 해당하지만,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1214.90-9090)에 분류되지 않는다.

〈표 4-43〉 사료용 건초 식물검역 검사 수량

	품목명	표준품명 규격코드	식물검역 검사 수량(KG)		
			2024년	2023년	2022년
1	페스큐건초	07	333,610,137	309,181,462	331,933,744
2	귀리건초	01	264,699,846	228,903,283	275,272,091
3	라이그래스건초	02	185,256,044	155,735,868	174,780,040
4	티모시건초	06	151,588,262	134,072,202	130,312,696
5	혼합건초	-	119,426,237	185,746,154	332,871,229
6	클라인그래스건초	08	69,911,930	52,112,958	51,227,314
7	보리짚	-	20,465,458	22,784,390	23,537,060
8	블루그래스건초	04	17,551,651	16,105,676	14,508,747
9	오차드그래스건초	05	11,892,414	8,796,945	11,710,025
10	버뮤다그래스건초	03	3,684,158	4,308,045	8,024,840
11	메도우폭스테일건초	-	139,917	1,098,047	351,317

* 자료 :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한편 이 호에 분류되는 사료용 식물은 그 특성상 사람이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미 호의 용어에 ‘사료용’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루우산의 베일의 경우, 사료용(HSK 1214.90-9011)과 그 외 용도(HSK 1214.90-9019)를 다시 구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기타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제1214.90-9090호에 대하여 사료용과 비(非)사료용을 추가로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루우산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료용과 그 외 용도를 구분하였을 때 후자의 수입이 2022년~2024년까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사료용 식물도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용도에 따른 추가 세분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SK 개선안은 수입 실적이 다른 건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5개 유형을 선별하고, 이를 별도 품목번호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이때 품목명에는 ‘사료용’을 명시함으로써 분류 품목의 주요 용도를 명확히 하였다. 새롭게 신설되는 품목번호 중 ‘혼합건초’는 종전의 표준품명 체계에서도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던 품목으로,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독립된 품목번호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표 4-44〉 사료용 식물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1214	90				
		1000	사료용 부리채소류	1000	사료용 부리채소류
		90	기타	90	기타
		1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1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11	사료용	11	사료용
		19	기타	19	기타
		90	기타	91 (신설)	사료용 페스큐건초
			01 귀리건초	92 (신설)	사료용 귀리건초
			02 라이그래스건초	93 (신설)	사료용 라이그래스건초
			03 버뮤다그래스건초	94 (신설)	사료용 티모시건초
			04 블루그래스건초	95 (신설)	사료용 혼합건초
			05 오차드그래스건초	99 (신설)	기타
			06 티모시건초		
			07 페스큐건초		
			08 클라인그래스건초		
			09 기타		

3. 제3부 동물성·식물성 유지 등

1) 제1511.90-9000호(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기름야자나무의 과육에서 채취되는 팜유와 그 분획물은 제1511호에 분류된다. 이 호는 6단위 수준에서 조유(HS 1511.10)와 기타(HS 1511.90)으로 구분되며, 1511.90호는 HSK에서 팜 올레인(-1000), 팜 스테아린(-2000), 기타(-9000)로 세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조유(HSK 1511.10-0000)의 기본 관세율은 3%, 기타(HS 1511.90)의 각 품목번호는 2%로, 미가공 원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표 4-45〉 제1511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0	0000	조유(粗油)		
		90	기타		
	90	1000	팜 올레인(palm olein)		
	90	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90	9000	기타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1511.90-900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정제유와 팜유 분획물을 구분하고 있다. 이 호에서 분류되는 팜유 분획물은 다른 품목번호에 별도로 분류되는 올레인 분획(HSK 1511.90-1000)과 스테아린 분획(HSK 1511.90-2000)을 제외한 경우로, 대표적으로 팜 중간분획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4-46〉 제1511.90-9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정제유	-
02	팜유 분획물	-
03	기타	-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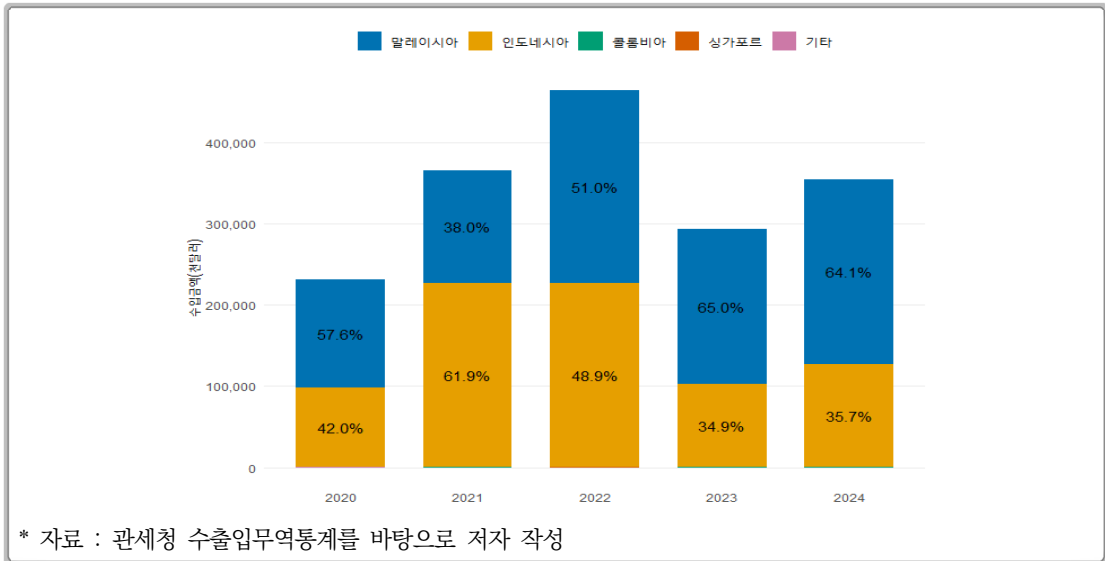
(2) 무역 패턴

팜유와 분획물(HSK 1511.90-9000)의 수입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액 비중이 인도네시아를 상회하였다.

전체 수입금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4-15] 제1511.90-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1511.90호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일본은 팜 스테아린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팜 올레인과 팜 스테아린을 모두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정제유(refined oil), 정제유의 분획물(fractions of refined oil), 비정제유의 분획물(fractions of unrefined oil)로 1차 구분한 뒤, 분획물에 대해서는 고체·액체 상태, 포장 중량, 요오드가(iodine value) 등을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는 방식으로, 가장 세밀한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표 4-47〉 주요국 분류체계(제1511.9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511	90						
		010	1 Palm stearin		-Other		-Other

	090	2 Other	2000	--Refined oil	20	--Refined oil
				--Fractions of refined oil		--Fractions of refined oil
				---Solid fractions		---Solid fractions
			3100	----With iodine value 30 or more, but less than 40	31	----With iodine value 30 or more, but less than 40
			3200	----Other	32	----Other
				---Liquid fractions		---Liquid fractions
			3600	----In packing of a net weight not exceeding 25kg	36	----In packing of a net weight not exceeding 25kg
			3700	----Other, with iodine value 55 or more, but less than 60	37	----Other, with iodine value 55 or more, but less than 60
			3900	----Other	39	----Other
				--Fractions of unrefined oil		--Fractions of unrefined oil
			4100	---Solid fractions	41	---Solid fractions
			4200	---Other, with packing of a net weight not exceeding 25kg	42	---Other, with packing of a net weight not exceeding 25kg
			4900	---Other	49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본 연구에서는 특정 품목번호(HSK 1511.90-9000)에 포괄되어 분류되고 있는 팜유 및 그 분획물에 대해, 공정 단계별 구분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기준은 팜 원유가 정제 및 분획 과정을 거치며 생성되는 생산물의 특성 차이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팜 원유는 불순물 제거(refining), 표백(bleaching), 탈취(deodorizing) 공정을 거쳐 정제유(RBD 팜오일)로 전환된다. 이후 팜유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차이를 이용한 분획 과정을 통해 고체 성분인 팜 스테아린과 액체 성분인 팜 올레인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슈퍼 팜 올레인(super palm olein), 팜 중간분획(palm mid fraction, PMF) 등이 추가 분획물에 해당한다.

현행 HSK 분류체계에서는 조유를 제외한 팜유와 그 분획물이 일부는 HSK 품목번호로, 일부는 기타 품목번호 내 표준품명으로 구분되어 있어, 분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팜유 분획물 가운데 올레인과 스테아린은 HSK에서 별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반면, 그 밖의 분획물은 ‘기타’ 품목번호(HSK 1511.90-9000)의 표준품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분획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정제유 또한 동일하게 기타 품목번호의 표준품명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팜유의 공정 단계별 생산물을 기준으로, HSK 체계 내에서 각각을 독립된 품목번호로 구분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선안은 정제유와 분획물을 HSK 체계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생산 단계를 HSK 10단위 품목번호 수준에서 일관되게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4-48〉 팜유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1511	90	기타			
		1000	팜 올레인(palm olein)	1000	(신설) 정제유
		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0	팜유의 분획물
		9000	기타	10 (신설) 20 (신설) 90 (신설)	팜 올레인
		표준 품명	01. 정제유: Refined Palm Oil		팜 스테아린
			02. 팜유 분획물: Palm Oil Fractions		기타
			03. 기타: Other	9000	기타

4. 제4부 조제 식료품

1) 제1701.99-0000호(기타 사탕수수당 등)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사탕수수당이 분류되는 제1701호는 조당이 분류되는 제1701.1-호와 그 외 사탕수수당이 분류되는 제1701.9-호로 구분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사탕수수당은 고체형(분말 포함)에 한정되며, 액상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제1701.9-호는 다시 향미제 또는 착색제의 첨가 여부에 따라 세분된다.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원료 형태에 가까운 비정제당인 조당(HS 1701.10)에 대해서는 3%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정제당 등 가공도가 높은 제1701.9-호의 사탕수수당에는 3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표 4-49〉 제1701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할당관세 (2025-01-01 ~ 2025-12-31)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2	사탕무당		
	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3%	
	2000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13 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	
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3%	
	2000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9	기타		
91 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5% (100,000톤)
99 0000	기타	30%	5% (100,000톤)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1701.99-000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은 사탕무 설탕과 사탕수수 설탕을 구분하고 있다. 두 설탕의 차이는 원료에 있으며, 사탕무당은 사탕무 뿌리에서 추출한 즙을, 사탕수수당은 줄기에서 짜낸 즙을 원료로 한다. 한편 기타 규격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자당(sucrose)이 포함된다.

〈표 4-50〉 제1701.99-0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사탕무 설탕	-
02	사탕수수 설탕	-
03	기타	-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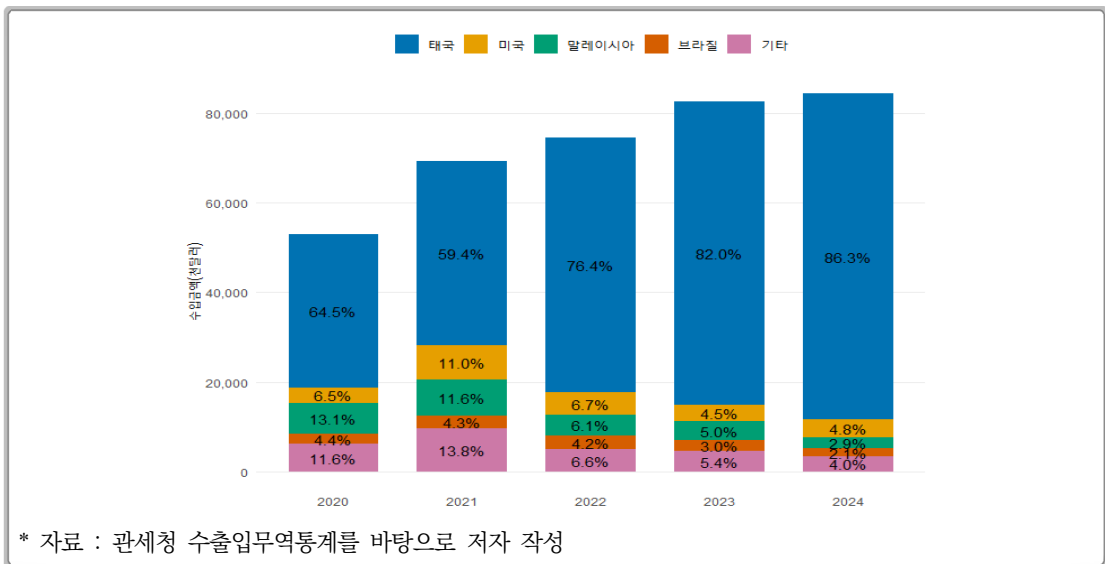
(2) 무역 패턴

① 수입 패턴

제1701.99-0000호의 수입은 주로 태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64.5%였던 태국의 수입 비중은 2024년 86.3%까지 크게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태국 이외의 국가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제2의 수입 상대국인 미국의 비중은 4.8%이며, 그 외 말레이시아 및 브라질 등에서도 일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6] 제1701.99-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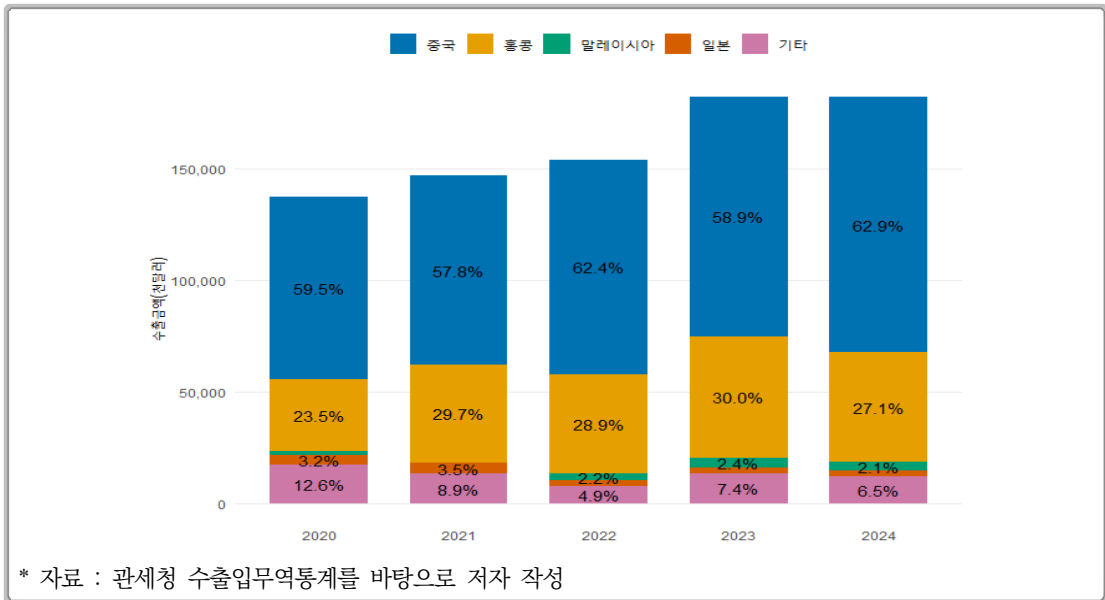


② 수출 패턴

제1701.99-0000호의 수출은 주로 중국과 홍콩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수출 비중은 약 60%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홍콩은 약 24~30% 수준으로 제2의 수출 상대국에 해당한다.

반면 말레이시아·일본 등 기타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4-17] 제1701.99-0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1701.99호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HSK 체계에서 추가적인 세분을 하지 않은 반면, 일본은 제품의 형태(예: 결정, 락 캔디 등)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고 있다. 태국의 분류체계는 정제 여부를 기준으로, 정제당을 별도 구분하는 구조이며, 중국은 과립당, 연백당, 기타 정제당으로 1차 분류한 후, 각 품목에 대해 관세율할당(쿼터 내/쿼터 외) 여부를 다시 세분하는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표 4-51> 주요국 분류체계(제1701.99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일본		태국		중국	
1701 99						
	100	1 Rock candy, cube sugar, loaf sugar and similar sugar	10	Refined sugar	10	granulated sugar
	200	2 Other	90	Other	10	granulated sugar(in-quota)
					90	granulated sugar(out-of-quota)
					20	Soft white sugar

						01	soft sugar(in-quota)
						90	soft sugar(out-of-quota)
					90		Other
						01	Other refined sugars(in-quota)
						90	Other refined sugars (out-of-quota)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현행 HSK 분류체계에서는 조당(1701.1-)과 향미제 또는 색을 첨가한 것(HS 1701.91)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류가 단일의 ‘기타’ 품목번호(HSK 1701.99-0000)에 포괄되어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전에 따른 설탕규격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방안은 설탕의 주요 수요처인 식품 산업에서 사용하는 설탕 규격과 HSK에 따른 품목분류 간에 정합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식품공전에서는 설탕류를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등에서 추출한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하여 제조한 ‘설탕’과,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기타 설탕’으로 구분한다. 식품용 설탕의 성상은 결정, 결정성 분말, 덩어리 형태로 구분되고, 색상에 따라 백설탕과 갈색설탕으로 나뉜다. 특히 백설탕은 당도 99.7% 이상, 갈색설탕은 97% 이상으로 각각 상이한 당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흑설탕은 일반적으로 백설탕에 카라멜색소 등을 첨가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식품공전상에서는 ‘기타 설탕’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향미제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으로 간주되어, HS 품목분류상 제1701.91호(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설탕 등)에 분류된다.

2024년 수입식품 검역자료에 따르면 ‘설탕’의 검사 중량은 약 111,253톤이며, ‘기타 설탕’은 199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설탕의 대부분이 식품공전상 일반 설탕 유형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표 4-52〉 식품공전상 설탕류의 규격

항 목	유 형	설탕	기타 설탕
(1) 성상		무색~갈색의 단맛을 가진 결정, 결정성 분말, 덩어리 형태이어야 한다.	-

(2) 당도(%)	99.7 이상 (단, 갈색설탕은 97.0 이상)	86.0 이상
(3) 사카린나트륨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납(mg/kg)	0.5 이하	1.0 이하
(5) 이산화황(g/kg)	0.020 미만	

* 자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설탕은 주로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지만, 일부는 사료, 제약, 화장품, 화학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식품용 설탕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규격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행 HSK 체계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설탕이 단일 품목번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식품용과 비식품용을 구분할 수 없다.

본 개선안은 설탕의 주요 용도인 식품용 설탕을 그 외 용도와 구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용도별 무역량 집계와 수입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식품공전의 설탕 규격을 바탕으로 10단위 품목번호를 신설하였다. 여기서 설탕을 색상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식품공전상 당도 기준이 색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는 표준품명 수준에서만 구분되는 원료(사탕무·사탕수수)를 HSK 체계에 반영함으로써, HSK를 통해 용도·식품 유형·원료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53〉 제1701호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1701	99	0000	기타	10	식품용
		표준 품명	01 사탕무 설탕	1	사탕무 설탕
			02 사탕수수 설탕		1 (신설) 백설탕
			03 기타		2 (신설) 갈색설탕
				9 (신설) 기타	
				2	사탕수수 설탕
				1 (신설)	백설탕
				2 (신설)	갈색설탕
				9 (신설)	기타
				90 (신설)	기타
				9000 (신설)	기타

2) 제1704.90-2090호(기타 캔디류)

(1) 분류체계

제1704호는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설탕과자를 포괄하는 호로, 각종 사탕과자·과자류 및 캔디류가 분류된다. 이 호는 두 개의 소호로 구분되며, 제1704.10호는 추잉껌을, 제1704.90호는 그 밖의 설탕과자를 분류한다.

제1704.90호는 HSK 체계에서 감초 추출물(-1000), 캔디류(-20), 기타(-9000)로 세분되며, 이 가운데 캔디류(-20)는 다시 드롭스(drops)(-2010), 캐러멜(-2020), 기타(-2090)로 나뉜다.

〈표 4-54〉 제1704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0	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90	기타			
		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20 캔디류			
		10 드롭스(drops)	8%		
		20 캐러멜	8%		
		90 기타	8%		
		9000 기타	8%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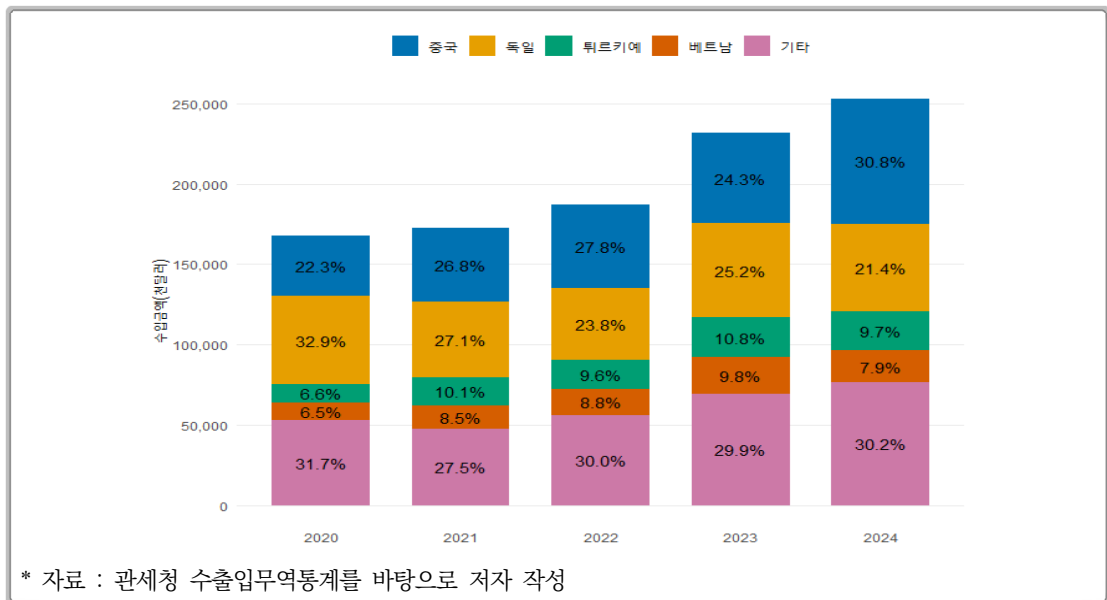
(2) 무역 패턴

① 수입 패턴

제1704.90-2090호(기타 캔디류)의 수입 금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과 독일로, 두 국가의 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 수입 금액의 과반을 상회한다.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한 반면, 독일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터키가 약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8] 제1704.90-209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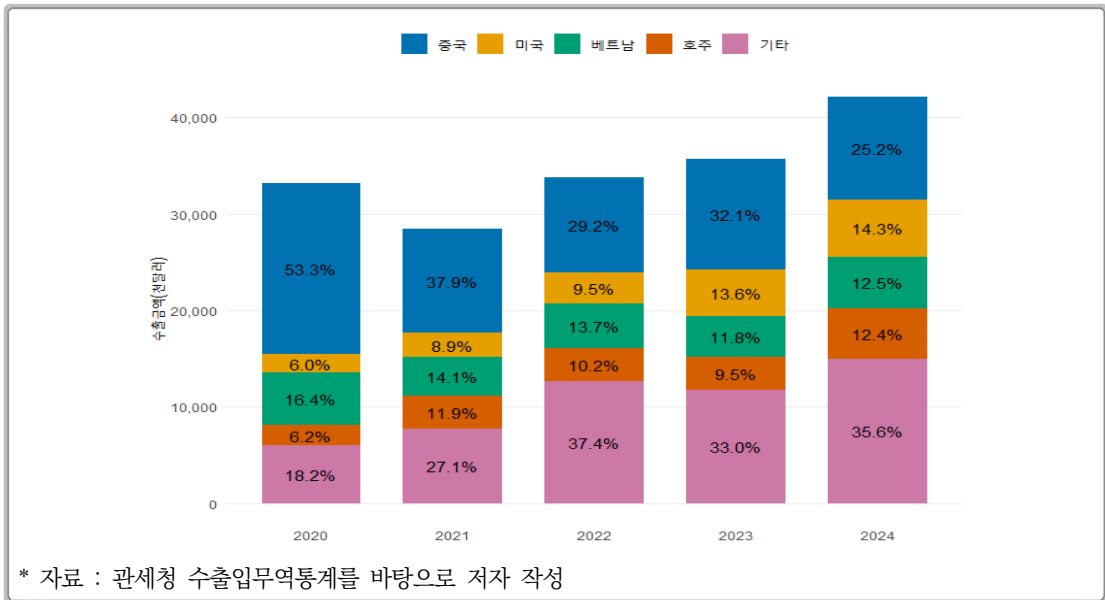
② 수출 패턴

제1704.90-2090호(기타 캔디류)의 수출 금액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2024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중국이 전체 수출 금액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25.2%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과 호주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6.0%에서 14.3%, 6.2%에서 12.4%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완화되었다.

[그림 4-19] 제1704.90-209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1704.90호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감초 추출물을 별도 품목번호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캐러멜을 캔디류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일본은 캔디와 캐러멜을 서로 다른 품목으로 분리하여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중국은 제1704.90호의 하위 단위에 단일 품목번호만을 두는 가장 단순한 체계를 운용한다.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설탕과자의 유형별로 캔디드 너츠, 목캔디, 땅콩-땅콩 버터, 유제품 포함 여부 등을 구분할 뿐 아니라, 설탕 함유량, 소매 판매용, 관세율할당(TRQ) 적용 수량 내 수입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1704.90호를 총 13개의 품목번호로 구분하고 있다.

<표 4-55> 주요국 분류체계(제1704.9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미국		중국	
1704	90						
		100	1 Licorice extract,		Confections or sweetmeats ready for	0000	Other

		not put up as confectionery		consumption:		
		2 Other	1000	Candied nuts		
210		Candies		Other:		
220		Caramels	2500	Cough drops		
230		White chocolate	35	Other		
290		Other		Put up for retail sale:		
			3520	Containing peanuts, peanut butter or peanut paste		
			3550	Other		
			3590	Other		
				Other:		
			5200	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Other:		
				Dairy products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 to chapter 4:		
			5400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5800	Other		
				Other:		
				Articles containing over 65 percent by dry weight of sugar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2 to chapter 17:		
			6400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7 to this chapter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6800	Other		
				Articles containing over 10 percent by dry weight of sugar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3 to chapter 17:		
			7400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8 to this chapter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7800	Other		
			900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세분화 기준

① 해설서에 따른 분류 품목

HS 해설서는 제1704호에 분류되는 주요 설탕과자 품목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독립된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HSK 체계에서는 해설서에 명시된 품목 중 추잉껌(HSK 1704.10-0000), 감초추출물(HSK 1704.90-1000), 드롭스캔디(HSK 1704.90-2010), 캐러멜(HSK 1704.90-2020)이 이미 별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른 개선안은 현행 체계에서 아직 품목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나머지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신설을 포함한다. 현재 별도의 품목번호가 없는 주요 품목에는 과실 젤리, 화이트 초콜릿, 인후용 정제, 코프 드롭스 등이 있다.

〈표 4-56〉 제1704호 해설서 상 설탕제품 유형

설탕제품 유형	
1	설탕을 함유한 껌
2	끓인 단 과자(boiled sweets)
3	캐러멜 과자·구중향정(cachou)·캔디·누가(nougat)·퐁당(fondant)·가당한 아몬드·터키 딜라이트
4	마지판(marzipan)
5	인후용 정제(throat pastille)나 코프 드롭프스(cough drops)로 포장된 조제품
6	설탕·코코아 버터·분유와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 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
7	자당(sucr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감초 추출물
8	설탕 과자의 모양으로 만든 과실 젤리와 과실 페이스트
9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한 페이스트(paste)(지방을 소량 첨가하거나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것)로서, 직접 이 호의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 적합하지만, 이 호나 다른 호의 물품에 대한 충전제(filling)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10	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설탕과자의 형태로 만든 것

* 자료 : HS 해설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② 식품공전에 따른 캔디류 규격

식품공전은 ‘캔디류’를 당분을 다량 함유한 주 원료에 식품첨가물 등을 더해 성형 등으로 가공한 감미의 기호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캔디류의 유형에는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이 포함된다.

이 방안은 식품공전상 규정된 식품 유형에 대응하는 HSK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5)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제1704.90호(설탕과자)의 하위 단위에는 총 5개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각 번호별 수출입 실적을 보면 수입은 제1704.90-2090호(기타 캔디류)에, 수출은 제1704.90-9000호(그 밖의 설탕과자)에 교역량이 특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57〉 제1704.90호 HSK 별 무역량(2024)

단위 : 톤(Ton), 천 불

HSK				품명	수출		수입	
					종량	금액	종량	금액
1704	90	10	00	감초추출물	36	156	0.2	5
		20		캔디류				
			10	드롭스	151	906	4,223	20,787
			20	캐러멜	190	307	694	2,461
			90	기타	5,998	42,157	45,343	252,881
		90	00	기타	27,237	55,540	10,927	49,720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제1704.90-2090호는 캔디류가 분류되는 품목번호로, 식품공전에서도 동일한 명칭의 식품 유형이 존재한다. 식품공전은 ‘캔디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캐러멜은 이미 별도의 품목번호(HSK 1704.90-2020)가 존재한다.

반면 양갱과 젤리는 캐러멜과 마찬가지로 캔디류 식품의 한 유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품목번호(HSK 1704.90-2090)에 포괄하여 분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품목을 HSK 체계에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도록 HSK 품목번호 신설을 개선안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설탕과자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HS 해설서가 제시하는 품목 중 하나인 백색초콜릿의 HSK 품목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백색초콜릿은 식품공전상 ‘초콜릿류’로 분류되며 코코아버터를 20% 이상 함유해야 한다. 그러나 HS 체계에서는 코코아

버터를 코코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백색초콜릿은 코코아 조제품(초콜릿)이 분류되는 제1806호에 분류할 수 없다.

즉, 백색초콜릿은 식품공전에서 초콜릿류로 분류되지만, HS 체계에서는 코코아 조제품(초콜릿)이 아닌 설탕과자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선안은 백색초콜릿에 대한 HSK 품목번호 신설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HSK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HSK에서 기타 품목번호에 포괄되어 분류되는 양갱, 젤리, 백색초콜릿을 각각 별도의 품목번호로 구분함으로써, 식품공전상 규격에 명시된 두 품목(양갱, 젤리)을 HSK 체계에서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식품공전과 HS 체계의 분류 기준 차이로 인해 품목분류상 이슈가 발생하는 품목(백색초콜릿)을 별도의 품목번호로 구분하여, 분류의 명확성을 제고한 점이 본 개선안의 주요 특징이다.

〈표 4-58〉 설탕과자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1704					
	10	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00	추잉껌 (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0		기타	90	기타
		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1000	감초 추출물 (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20	캔디류	20	캔디류
		10	드롭스(drops)	10	드롭스(drops)
		20	캐러멜	20	캐러멜
		90	기타	30 (신설)	양갱
		9000	기타	40 (신설)	젤리
				90	기타
				3000 (신설)	백색초콜릿
				9000	기타

3) 제2103.90-9090호(기타 소스·혼합조미료)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제2103.90호는 간장(HS 2103.10), 토마토 소스(HS 2103.20), 겨자(HS 2103.30)를 제외한 그 밖의 소스류 및 혼합조미료를 포괄하는 호이다. HSK 체계에서는 제2103.90호를 다시 장류(-10)와 기타(-90)로 구분한다. 장류에는 된장·춘장·고추장 등 각종 장류가 포함되며, 기타 범주에는 장류 외 소스류로서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및 그 외 소스류가 포함된다.

특히 2025년 HSK 개정을 통해 고추다진양념에 대한 품목번호(HSK 2103.90-9050)가 신설되면서, 이전까지 ‘기타’ 품목번호에 포괄되어 교역량 파악이 어려웠던 고추다진양념을 독립된 품목번호로 구분·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율 측면에서 제2103.90호의 기본 관세율은 8%이다. 다만, 일부 품목에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고추장에는 32%, 그리고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 합계가 40% 이상인 품목에는 45%의 조정관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고 있다.

〈표 4-59〉 제2103.90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조정관세 (2025-01-01 ~ 2025-12-31)
2103	90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등		
	10	장류		
	10	10 된장	8%	
	20	20 춘장	8%	
	30	30 고추장	8%	32% (고추장)
	90	90 기타	8%	45%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90	기타		
	10	10 마요네즈	8%	
	20	20 인스턴트 카레	8%	45%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30	혼합조미료	8% 45%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0	메주	8%
		50	고추다진양념	8% 45%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90	기타	8% 45%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2103.90-909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 '01'과 '02'는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를 대상으로 하며, '01'은 분말상, '02'는 페이스트상으로 구분된다. 두 코드 모두 공통적으로 세부 규격에서 용도(고추장 제조, 김치 제조 등)와 고추 함량을 나누고 있다.

표준품명 '03'은 기타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며, '01', '02'와 마찬가지로 세부 규격에서 고추장·김치 제조 등 용도 구분을 하고 있다. 다만 고추 함량뿐 아니라 마늘·양파·생강 및 이들의 합산 함량을 필수 규격 요소로 추가하여, 각 재료의 함량 또는 합계 함량이 각각 20%, 4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세부 규격을 구분하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는 HSK 10단위만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세율 상이 품목을 표준품명 단계에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 함량에 따라 한-미 FTA, 한-EFTA FTA, 한-캐나다 FTA의 관세율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조정관세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 합계가 40% 이상인 품목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표준품명·규격코드를 통해 이러한 품목별 세율 차이를 구분·관리하고 있다.

〈표 4-60〉 제2103.90-909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분말상의 것)	1. 용도 H : 고추장 제조 K : 김치제조 O : 기타용도 S : 탕 제조 2. 고추함량 H : 30%~35%미만 L : 20%~25%미만 M : 25%~30%미만 VH : 35%~40%
02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페이스트상의 것)	1. 용도 H : 고추장 제조 K : 김치제조 O : 기타용도 S : 탕 제조 2. 고추함량 H : 30%~35%미만 L : 20%~25%미만 M : 25%~30%미만 VH : 35%~40%
03	기타 혼합조미료	1. 용도 H : 고추장 제조 K : 김치제조 O : 기타용도 S : 탕 제조 2. 고추함량 H : 10%~15%미만 L : 5%미만 M : 5%~10%미만 UH : 20%이상 VH : 15%~20%미만 3. 마늘함량 U : 20%미만 UH : 20%이상 4. 양파함량 U : 20%미만 UH : 20%이상 5. 생강함량 U : 20%미만 UH : 20%이상 6. 마늘/양파/생강함량(합) U : 40%미만 UH : 40%이상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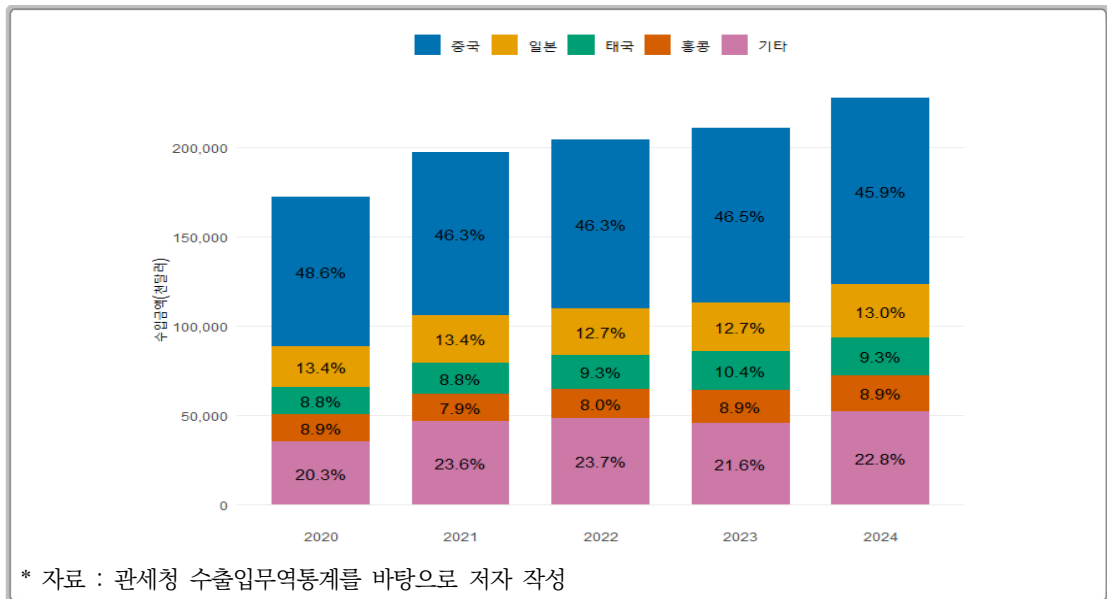
(2) 무역 패턴

① 수입 패턴

제2103.90-9090호(기타 소스·혼합조미료)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이 최대 수입 상대국으로 2020년 48.6%에서 2024년 45.9%로 소폭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과반에 근접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제2위의 수입 상대국인 일본은 같은 기간 13% 내외에서 큰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태국은 2020년 8.8%에서 2024년 9.3%로 소폭 상승했으며, 홍콩은 8%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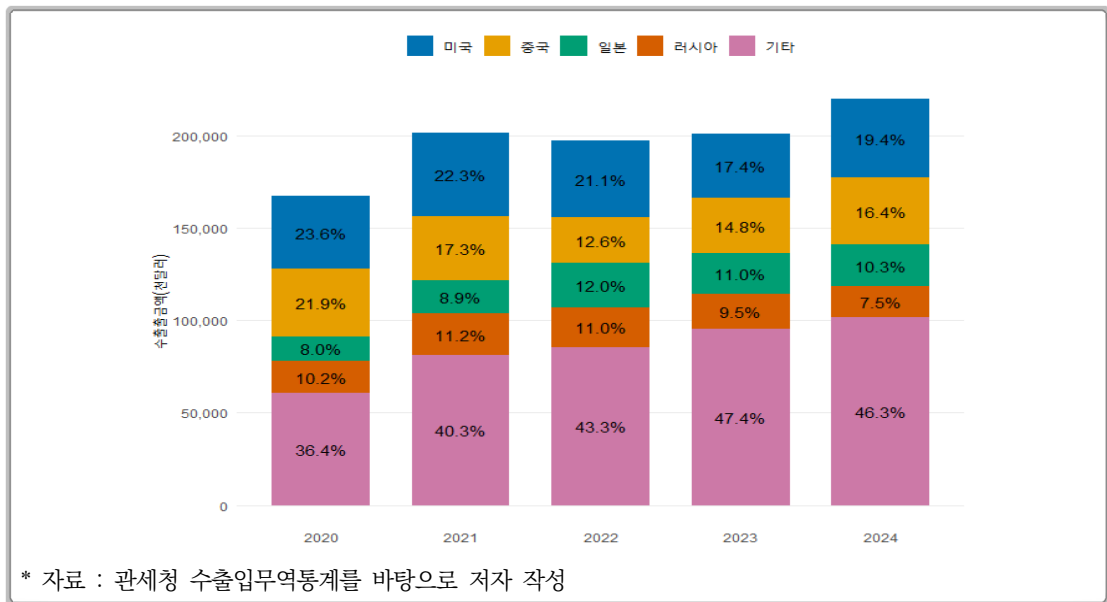
[그림 4-20] 제2103.90-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② 수출 패턴

제2103.90-9090호(기타 소스·혼합조미료)의 수출은 미국이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2020년 23.6%에서 2024년 19.4%로 비중이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2024년 기준 16.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일본, 러시아 등이 주요 수출 시장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고른 국가별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전체 수출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24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4-21] 제2103.90-9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2103.90호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일본은 소스류 가운데 마요네즈와 샐러드드레싱을, 그 밖의 소스용 조제품·조미료류 중에서는 인스턴트 카레 등 카레 제품과 글루탐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미료를 별도 품목번호로 구분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소스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대표적인 조미료인 MSG, 아로마틱 비터(aromatic bitters), 특수 와인(special wine) 등을 구분하는 단순한 분류체계를 운용한다.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류·효모추출물·토마토 등 특정 원료에 기반한 소스, 마요네즈·샐러드드레싱과 같은 대표적인 소스 품목, 당류 함유량, 소용량 용기 여부, 관세율할당(TRQ) 적용 수량 내 수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 2103.90호 하위에서 총 11개의 품목번호를 운용하고 있다.

<표 4-61> 주요국 분류체계(제2103.9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중국	미국
2103	90			

		1 Sauces	10		2000	Sauces derived or prepared from fish
	110	(1) Mayonnaise	1000	Gourmet Powder	4000	Nonalcoholic preparations of yeast extract (other than sauces)
	120	(2) French dressings and salad dressings	20	Aromatic bitters, 44.2%~49.2% of which....		Other:
	130	(3) Other	2000	Special wine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s:
		2 Other	90	Other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s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3 to this chapter:
	210	(1) Instant curry and other curry preparations	9000	Other condiments	7200	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2) Other			7400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4 to this chapter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221	A Consisting chiefly of sodiumglutamate			7800	Other
	229	B Other			8000	Other
					90	Other
					9020	Mayonnaise
					9040	Other salad dressings
						Tomato-based preparations for sauces:
					9051	In containers holding less than 1.4 kg
					9059	Other
					9091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제2103.90호에는 현행 HSK 체계상 10개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고추다진양념이 분류되는 품목번호인 제2103.90-9050호는 2025년에 신설되었다.

2025년¹⁶⁾ 1월부터 10월까지 제2103.90호로 집계된 무역 통계를 살펴보면, 기타 소스류가 분류되는 제2103.90-9090호에 교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 밖의 품목 중에서는 수입 중량 기준으로는 고추다진양념 품목이, 수출 중량 기준으로는 고추장 관련 품목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2〉 제2103.90호 HSK 별 무역량(2025년 1월 ~ 10월)

단위 : 톤(Ton), 천 불

HSK			품명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103	90		기타 소스류				
		10	장류				
		10	된장	4,524	8,568	2,150	2,544
		20	춘장	1,334	2,989	286	445
		30	고추장	21,943	52,831	81	398
		90	기타	5,442	11,188	1,281	4,490
		90	기타				
		10	마요네스	4540	12,082	1,017	3541
		20	인스턴트 카레	727	2,981	2,483	13,231
		30	혼합조미료	7342	33,613	5,655	28,657
		40	메주	6	42	1905	2,463
		50	고추다진양념	4	19	16,758	16,499
		90	기타	54,247	199,628	80,878	182,083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무역량이 가장 많은 제2103.90-9090호에는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으며, 해당 표준품명에 따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규격 01·02)와 그 외 혼합조미료(규격 03)로 구분된다. 그러나 표준품명의 ‘혼합조미료’라는 규격 명칭은 제2103.90-9030호의 품명인 ‘혼합조미료’와 동일하여, 두 품목번호 간의 분류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혼합조미료에 대한 품목분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16) 2025년 신설된 품목번호(2103.90-9050)의 무역량 파악을 위해 2025년 실적(1월~10월) 검토

아울러 혼합조미료를 별도의 품목번호로 구분하여 분류할 실익이 부족하다. 조미료는 일반적으로 음식의 맛과 풍미를 높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이다. 식품공전에 서는 조미식품을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스류는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식용유지 등을 가하여 혼합하거나 이를 발효·숙성시킨 제품을 의미하며, 복합조미식품은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질수분해물, 효모 또는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수분함량 8% 이하의 분말, 과립, 고형상으로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조미식품은 여러 재료가 혼합되어 제조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혼합 여부를 유의미한 분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추다진양념’과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요건¹⁷⁾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고추다진양념’의 경우 별도의 품목번호(HSK 2103.90-9050)로 구분되는 반면,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경우, 기타 품목번호에 포괄되고 있어 표준품명(규격 01·02)을 통해서만 식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현행 HSK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제2103.90-9030호(혼합조미료)는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고, 조미식품의 특성상 대부분이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혼합 여부만으로는 실질적인 품목 구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둘째, 2025년 개정에서 ‘고추다진양념’이 별도 품목번호로 신설된 사례와 동일하게,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분류 요건이 명확히 제시된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 대해 독립적인 품목번호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HSK 체계 내에서 조미료 관련 품목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17)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3호에 분류한다.

- 1)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할 것, 2) 전체 성분 중 고춧가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전체 성분 중 제9류 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나 조미료가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것, 4)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6을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3 이상일 것, 5)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로 혼합된 경우에는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당류(물엿·포도당·설탕에 한정한다)는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일 것, 6) 적색도(a값)가 34.76 이하일 것

셋째, ‘기타’ 품목번호인 제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소비자용 소매 포장 물품과 음식점·기업용 대용량 포장 물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소매 포장 여부에 따른 추가적인 세분화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세분화는 조미류의 용도별 수급 현황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품 관리, 물가 모니터링 및 식자재 수급 안정 등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높은 실효성을 갖는다.

〈표 4-63〉 기타 소스·혼합조미료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2103	90	기타 소스류		기타 소스류	
	10	장류		10	장류
	10	된장		10	된장
	20	춘장		20	춘장
	30	고추장		30	고추장
	90	기타		90	기타
	90	기타		90	기타
	10	마요네스		10	마요네스
	20	인스턴트 카레		20	인스턴트 카레
	30	혼합조미료		40	메주
	40	메주		50	고추다진양념
	50	고추다진양념		6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90	기타		1 (신설)	분말상의 것
		표준 품명	01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분말상의 것)	2 (신설)	페이스트상의 것
			02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페이스트상의 것)	9 (신설)	기타
			03 기타 혼합조미료	91 (신설)	소매포장한 것
				99 (신설)	기타

4) 제2106.90-9099호(기타 조제식료품)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제2106호는 다른 호에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포괄하는 잔여 호이다. 제2106호의 소호는 단백질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106.10호와 그 외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호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제2106.90호는 HSK 체계에서 음료베이스(-10), 당시럽(-20), 인삼제품류(-30), 기타(-90)로 구분되며, 각 범주는 식품의 유형 또는 성분에 따라 추가적인 세분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기타'(-90) 범주는 커피프리머, 버터 조제품,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알로에 조제품 등 다양한 조제품을 폭넓게 분류하고 있어, 제2106.90호의 세분류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다.

관세율 측면에서 제2106호의 조제식료품에는 대체로 기본세율 8%가 적용되지만, 홍삼제품류는 추천 여부에 따라 20% 또는 최대 754.3%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알코올 함량이 전체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음료 제조용 조제품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일부 품목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표 4-64〉 제2106.90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2106	90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10	콜라 베이스	8%		
	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90	기타	8%		
	20 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0	인삼제품류			
	1	백삼제품류			
	11	인삼차	8%		
	19	기타	8%		
	2	홍삼제품류			
	21	홍삼차	8%	20%	754.3%
	29	기타	8%	20%	754.3%

90	기타			
10	커피크리머	8%		
2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8%		
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8%		
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8%		
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8%		
50	향미(香味)용 조제품	8%		
60	도토리 가루	8%		
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9	기타			
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8%		
99	기타	8%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2106.90-9099)에는 식품의 향미 첨가 또는 착색 여부를 구분 기준으로 하는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품명 구분 기준은 특정 규격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EFTA FTA에서는 해당 품목번호에 대해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한 설탕 시럽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협정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격을 구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표 4-65〉 제2106.90-9099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기타	1. 체형 01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02 : 기타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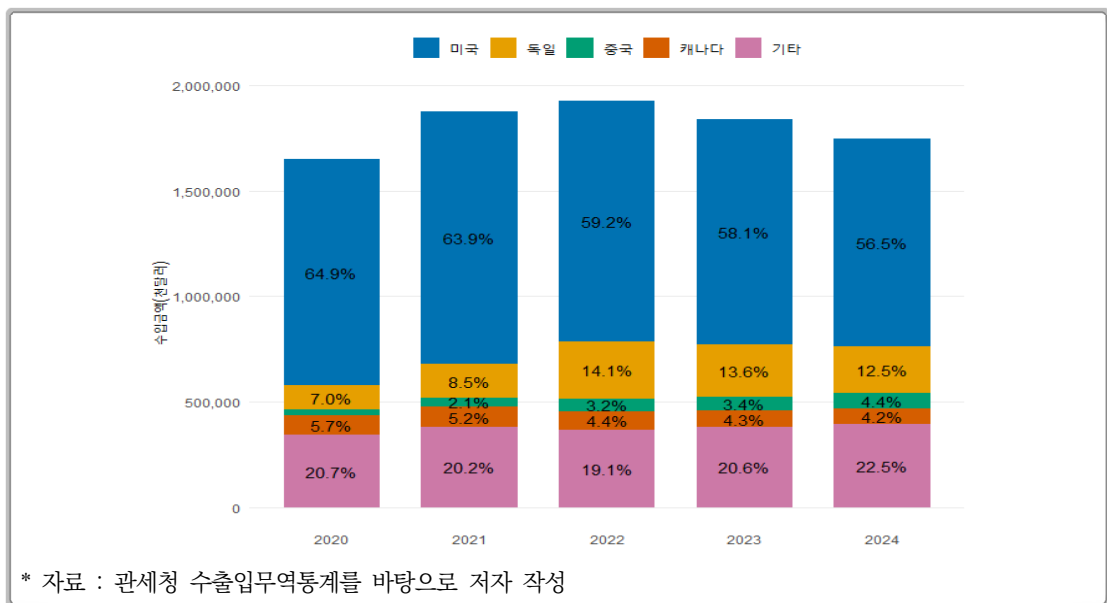
(2) 무역 패턴

① 수입 패턴

기타 조제식품류(HS 2106.90)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미국·독일·중국·캐나다이며, 2024년 기준 전체 수입 금액 중 이들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최대 수입 상대국은 미국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전체 수입 금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제2의 수입 상대국인 독일은 같은 기간 수입 금액 비중이 7.0%에서 12.5%로 확대되었다.

전체 수입 규모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2] 제2106.90-9099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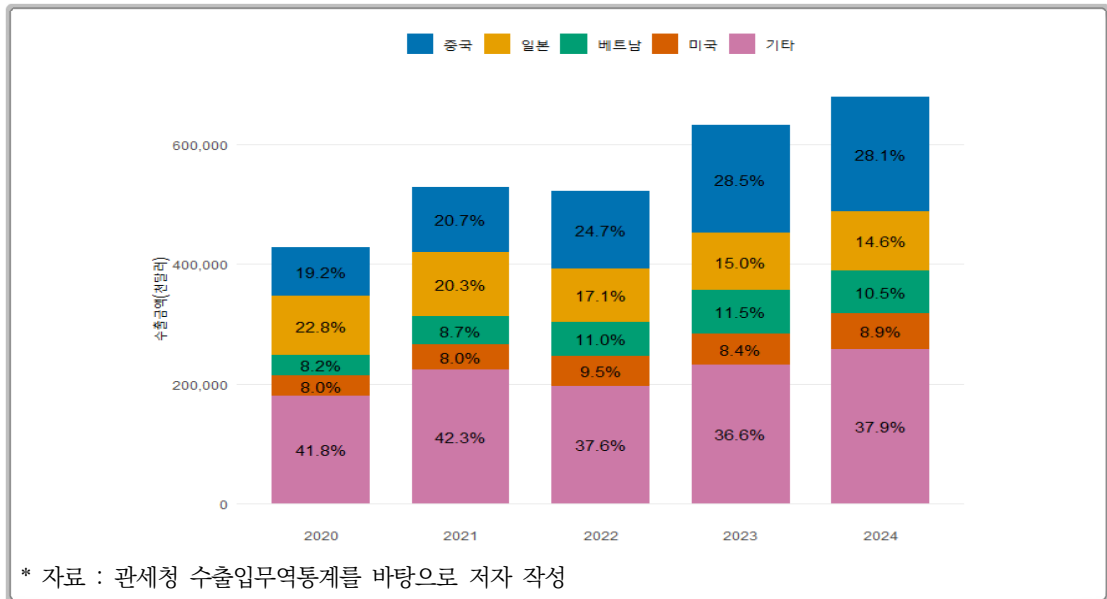


② 수출 패턴

조제 식품류(HS 2106.90)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중국·일본·베트남·미국이며, 2024년 기준 이들 국가가 전체 수출 금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비중은 2020년 19.2%에서 2024년 28.1%로 상승하며 최대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은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22.8%에서 14.6%로 하락하였다. 베트남은 2020년 8.2%에서 2023년 11.5%까지 비중이 확대했지만, 2024년에는 10.5%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 수출 금액은 2020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3] 제2106.90-9099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그 밖의 조제식품류를 포괄하는 제2106.90호의 특성상 각국의 분류체계는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세분화된 구조를 보인다. 일본은 제2106.90호를 43개 품목번호로, 미국은 56개 품목번호로 세분화하는 반면, 중국은 13개 품목번호만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별 주요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일본은 조제품에 함유된 유제품 함량, 비타민 및 식물성 단백질을 기제로 한 건강보충제 여부, 쌀·보리의 함유 중량, 설탕 함량 등을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한다. 중국은 음료 제조용 농축액, 로열젤리 제품, 코코넛 밀크 제품, 물개류 유래 제품, 설탕 함량, 비(非)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등을 구분 기준으로 활용한다.

미국은 음료 제조용 물품, 버터 대용품, 코프 드롭스, 젤라틴 제품, 설탕 함유 제품, 우유 함유 제품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복잡한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표 4-66〉 주요국 분류체계(제2106.9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중국		미국
2106	90				
		1 Preparations containing not less than 30 %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by weight,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10	Concentrates for manufacturing carbonated beverages	Products derived from the dried milk, dried buttermilk or dried whey of subheadings 0402.10, 0402.21.05, 0402.21.25, 0402.21.30, 0402.21.50, 0403.90.41, 0403.90.45, 0404.10.50 or 0404.10.90....
		(1) Of a milk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30%	1000	Manufacture of carbonated beverage concentrates	0300 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For "the Pooled Quota of other milk products"	20	--- Compound alcohol products for manufacturing beverages	0600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111	-- Base for non-alcoholic beverage, food supplement with a basis of vitamins and hydrolyzed vegetable protein	2000	Compound alcohol products for manufacturing beverages	0900 Other
	112	-- Other	30	--- Royal jelly preparation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0.5 percent vol.,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119	- Other	3010	Royal jelly preparations containing endangered plant	1200 Containing not over 20 percent of alcohol by weight

			ingredients		
	(2) Other	3090	Other royal jelly preparations	1500	Containing over 20percent but not over 50 percent of alcohol by weight
	- Prepared edible fats and oils, containing more than 30% and not more than 70% by weight of those of heading 04.05	40	--- Coconut juice	1800	Containing over 50 percent of alcohol by weight
	-- For the quantity (quota) stipulated by a Cabinet Order, on the basis of 18,977 ton for and....	4000	Coconut juice		Butter substitutes, whether in liquid or solid state, containing over 15 percent by weight of butter or other fats or oils derived from milk:
121	--- The place of origin, New Zealand	50	--- Seal oil capsules		Containing over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122	--- Other	5010	Endangered Seal Oil Capsules		Butter substitutes containing over 45 percent by weight of butterfat:
123	-- Other	5090	Other seal oil capsules	2200	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이하 생략)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제2106.90호는 현행 HSK 체계에서 총 20개의 10단위 품목번호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기타’ 품목번호인 제2106.90-9099호가 제2106.90호 전체 교역액의 81.76%를 차지하여(2024년 기준), 무역통계가 특정 품목번호로 과도하게 집계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28년 예정된 HS 협약 제8차 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분류되던 특정 품목군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기타’ 품목번호로 집계되는 교역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항목에서는 HS 개정에 따른 제2106.90호 내 품목분류 변경 내용과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① HS 협약 개정에 따른 분류체계 변경

2028년에 시행되는 HS 협약 제8차 개정은 제2106.90호의 품목분류에 있어 중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WCO HS 검토소위원회에서 최초로 식이보조제에 대한 별도 호 신설이 제안되었고, 2024년 WCO 제74차 HS 위원회는 제2107호(식이보조제 분류) 신설을 HS 2028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제2107호는 현행 HS 체계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 호로, 제2106.90호를 비롯해 여러 호에 분산되어 분류되던 식이보조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기 위해 신설된다. 제2107호가 신설될 경우, 현재 제2106.90호에 분류되고 있는 식이보조제가 대거 신설 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협약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 중 하나인 식이보조제는 HS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 4-67〉 HS 제2106호 해설 식이보조제 정의

21.06 -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1.06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p>(16) Preparations, often referred to as food supplements or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of, or based on, one or more vitamins, minerals, amino acids, concentrates, extracts, isolates or the like of substances found within foods, or synthetic versions of such substances, put up as a supplement to the normal diet. It includes such products whether or not also containing sweeteners, colours, flavours, odoriferous substances, carriers, fillers, stabilisers or other technical aids. Such products are often put up in packaging with indications that they maintain general health or well-being, improve athletic performance, prevent possible nutritional deficiencies or correct sub-optimal levels of</p>	<p>(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 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이 조제품들은 관련 영양성분의 결핍 이외에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p>

nutrients.

These preparations do not contain a sufficient quantity of active ingredients to provide herapeutic or prophylactic effect against diseases or ailments other than the relevant nutritional deficiencies. Other preparations with a sufficient quantity of active ingredient to provide a therapeutic or prophylactic effect against a specific disease or ailment are excluded (heading 30.03 or 30.04).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3호나 제3004호).

* 자료 : HS 해설서

HS 해설서상의 식이보조제는 통상적인 식단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건강 유지를 위해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내법상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유사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표 4-68〉 식이보조제와 건강기능식품 정의 비교

	식이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규정	HS 해설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능성	- 기능성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 없음 단, 표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 표시 가능)	-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 생리활성기능: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 영양소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형상	- 형상에 대해 명시된 내용 없음 단, HS 2028 개정 시, 신설되는 제21류 주 제5 ¹⁸)에 따라 캡슐, 알약, 정제, 앰플, 캐세이를 ‘일정한 용량’으로 포장한 식이보조제로 규정	- 정제·캡슐·환·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 상·시럽·겔·젤리·바·필름 -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
성분	-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 고시형 원료(영향성분, 기능성 원료) - 개별인정형 원료

-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 물질·캐리어·충전제·안정제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 함유 가능	※ 사용불가 원료는 별도 지정
---	------------------

* 자료 : HS 해설서, HS 2028 개정 제2107호(식이보조제) 신설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연구 (2024),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식이보조제와 건강기능식품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 범주에 속하는 물품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개념의 중요한 차이점은 기능성 성분을 규정하는 방식에 있다. HS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식이보조제는 일반식품과 구별되는 특징이 되는 기능성 성분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비타민·무기질 등 이에 준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성분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법령에 따라 기능성원료로 인정된 성분에만 한정된다.

이러한 규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기능성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국내법상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나, HS 체계상 식이보조제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기능성원료로 인정된 성분을 사용한 식품이라고 하여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서도 기능성 원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컨대 인삼, 홍삼, 비타민 등은 일반 식품의 원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표 4-69〉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규격

기준 및 규격		유형				
고시형 원료	영양성분 (28개)	1. 비타민 A	2. 베타카로틴	3. 비타민 D	4. 비타민 E	5. 비타민 K
		6. 비타민 B1	7. 비타민 B2	8. 나이아신	9. 판토텐산	10. 비타민 B6
		11. 엽산	12. 비타민 B12	13. 비오틴	14. 비타민 C	15. 칼슘
		16. 마그네슘	17. 철	18. 아연	19. 구리	20. 셀레늄
		21. 요오드	22. 망간	23. 몰리브덴	24. 칼륨	25. 크롬
		26. 식이섬유	27. 단백질	28. 필수 지방산		
	기능성 원료 (68개)	1. 인삼	2. 홍삼	3. 엽록소 함유 식물	4. 클로렐라	5. 스피루리나
		6. 녹차추출물	7. <삭 제>	8. 프로폴리스 추출물	9. 코엔자임 Q10	10. 대두이소 플라본
		11. 구아바잎 추출물	12. 바나나잎 추출물	13. 은행잎 추출물	14. 밀크씨슬 추출물	15.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18) Chapter 21. Note 5. For the purposes of heading 21.07, the expression “measured doses” means capsules, pills, tablets, ampoules and cachets intended for taking as single doses.

		(중략)				
		51. 프로바이오틱스	52. 홍국	53. 대두단백	54. 테아닌	55. MSM
		56. 폴리감마글루탐산	57. 히알루론산	58. 홍경천추출물	59. 빌베리추출물	60. 마늘
		61. 라피노스	62. 분말한천	63. 크레아틴	64. 유단백가수분해물	65. 상황버섯추출물
		66. 토마토추출물	67. 곤약감자추출물	68. 회화나무열매추출물	69.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개별인정형 원료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약 200여종 존재)					

* 자료 : 건강기능식품공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H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체계이므로, HS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정의가 국내 규정상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식이보조제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구별되는 기능적 특성(영양 보충·건강유지)을 공통적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물품의 범주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

2024년 건강기능식품의 수입검역 실적은 1,057,013천 달러로, 이는 같은 해 가공식품 전체 검역 실적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신설 호 도입 이후, 해당 호로 집계되는 수입량 역시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70〉 최근 5년간 품목군별 수입식품 검사 현황

단위: 천 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개년 평균
합계	27,262,396	32,577,910	38,110,296	34,825,722	35,761,939	33,707,653
식품 등 소계	16,590,156	20,072,521	23,192,886	21,508,766	22,855,475	20,843,961
농·임산물	5,144,519	6,098,385	7,120,188	6,271,053	6,559,684	6,238,766
가공식품	7,383,793	9,032,594	10,641,619	10,258,760	10,713,797	9,606,113
건강기능식품	912,150	1,098,762	1,161,944	1,069,058	1,057,013	1,059,785
식품첨가물	1,042,580	1,178,247	1,421,823	1,270,980	1,292,936	1,241,313
기구용기포장	2,107,113	2,664,533	2,847,312	2,638,915	3,232,045	2,697,984
축산물	6,519,128	8,034,055	9,944,221	8,733,165	8,836,771	8,413,468
수산물	4,153,112	4,471,335	4,973,189	4,583,792	4,069,693	4,450,224

* 자료 : 2025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건강기능식품은 분석 대상 품목번호인 제2106.90호 외에도 제1211호(식물성 원료), 제1806호(코코아 함유 조제품), 제2102호(미생물 조제품), 제22류(기타 음료류) 등 다양한 호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이들 호는 특정 원료나 제품군에 한정되어 분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반면, 제2106.90호는 그 밖의 조제식품류를 폭넓게 포괄한다. 따라서 제2107호 신설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분류 변경은 제2106.90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1〉 HS 2028 제2107호(식이보조제 분류)

HS 2028		Dietary supplements put up in measured doses specified in Note 5 to this Chapter; other dietary supplement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107		
	10	Put up in measured doses specified in Note 5 to this Chapter, whether or not in packings for retail sale
	90	Other

* 자료 : HS 2028 개정 제2107호(식이보조제) 신설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연구 (2024)

② 식이보조제 호 신설에 따른 HSK 세분화 방안

HS 2028 개정으로 식이보조제를 포괄하는 제2107호가 신설되면, 종전에 제2106.90호로 분류되던 건강기능식품은 제2106호(조제식료품)와 제2107호(식이보조제)로 품목분류 축이 이원화된다.

신설되는 제2107호는 소호 제2107.10호와 제2107.90호로 구분된다. 제2107.10호는 제21류 주5에서 정의하는 일정한 투여량 형태의 식이보조제를 포괄하며, 여기서 일정한 투여량이란 캡슐(capsules), 알약(pills), 정제(tablets), 앰플(ampoules), 캐세이(cachets)을 의미한다. 제2107.90호는 그 밖의 식이보조제로서, 일정한 투여량 형태(HS 2107.10)가 아닌, 소매용 포장 상태의 제품이 분류된다. 이 범주의 식이보조제는 통상 비타민·무기질 등 최소 둘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며, 포장 또는 사용 설명서 상에 유효성분 농도, 복용량, 사용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107호의 소호 구분은 식이보조제의 형상(캡슐, 알약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상 이외에 주 성분(기능성 성분)을 기준으로 한 HSK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규정상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나뉜다. 2024년 기준 생산량이 4천 톤을 초과한 주요 기능성 성분은 고시형 5개, 개별인정형 2개이다. 이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큰 성분은 프로바이오틱스이며, 수출 금액과 국내 판매액이 높은 성분은 각각 비타민·무기질과 홍삼 성분이다.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Lactobacillus 등 특정 미생물 또는 혼합 균주(및/또는 그 배양체)를 원재료로 하며, 배양을 위한 배지와 보호제 등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비타민 및 무기질은 일상의 식단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양 보완을 목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널리 활용되는 주요 성분이다.

〈표 4-72〉 2024년 건강기능식품 유형별 생산 현황

유형	품목명	생산량(Ton)	국내판매액(천원)	수출액(불)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	62,578	581,386,875	42,775,481
	비타민 및 무기질	18,822	599,544,700	73,042,636
	홍삼	10,448	781,493,957	60,144,748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4,537	28,376,739	1,627,589
	밀크씨슬 추출물	4,087	121,316,818	6,375,459
개별 인정형	해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6,179	46,249,854	29,044,598
	자일로올리고당분말	4,334	74,064,609	-

* 자료 : 2024 식품 등의 생산실적

본 연구에서는 고시형 성분 중 생산 및 수출 비중이 높은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주요 세분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능성 성분 중 홍삼의 경우 단순히 수출 규모가 크다는 점뿐 아니라, 관세율 체계상 고세율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품목번호 마련 필요성이 특히 크다.

현행 관세율표에서 제1302.19-12호에 분류되는 홍삼 수액 및 추출물은 추천 여부에 따라 20%에서 최대 754.3%까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2106.90-30호(홍삼 조제품) 및 제1211.20-13호(원료 상태의 홍삼) 역시 마찬가지로 미추천 품목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2107호 신설로 인해 홍삼을 원료로 한 식이보조제가 제2107.10호 또는 제2107.90호로 분류될 경우, 홍삼에 대한 고세율 체계를 신설 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독립된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HSK 2028 개정에 따른 신설 호에 반영할 경우, 기능성 성분(예: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홍삼)을 기준으로 주요 성분별 무역통계 작성과 수출입 패턴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세울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분류되는 같은 성분(홍삼)의 고세울 제품과의 관세율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표 4-73〉 HS 2028 제2107호 개정안

HS 2022 (현행)			HS 2028 (개정)		
2106		조제식료품	2106		조제식료품
	90	기타		90	기타
			2107		제21류 주5에서 규정한 일정한 투여량 형태로 포장된 식이보조제;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는 소매용 포장 형태의 식이보조제
			10		제21류 주5에서 규정한 일정한 투여량 형태로 포장된 식이보조제(소매용 포장 여부와 관계없음)
				1000 (신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2000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을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3000 (신설)	홍삼을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9000 (신설)	기타
			90		기타
				1000 (신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2000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을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3000 (신설)	홍삼을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9000 (신설)	기타

5) 제2202.99-9000호(기타 음료)

(1) 분류체계

① HSK 분류체계

제2202호는 비알코올성 음료가 분류되는 호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은 제2202.10호에, 그 밖의 음료는 제2202.9-호(기타)에 분류된다. 이 가운데 제2202.91호에는 비알코올 맥주가 분류되며, 제2202.99호는 HSK 체계에서 인삼음료(-1000), 과실주스 음료(-2000), 식혜(-3000), 기타(-9000)로 세분된다.

제2202.99호에 분류되는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8%이며, 이 중 과실주스 음료에 대해서는 9%의 WTO 협정관세율이 기본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표 4-74〉 제2202.99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2202	99					
		1000	인삼음료	8%		
		2000	과실주스 음료	8%	-	9%
		3000	식혜	8%		
		9000	기타	8%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② 표준품명 및 규격코드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2202.99-9000)는 다음과 같이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표준품명 체계는 음료의 주 성분을 기준으로 맥아음료와 알로에음료를 별도의 품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75〉 제2202.99-9000호 표준품명·규격코드

표준품명		표준규격
01	맥아음료	-
02	알로에음료	-
03	기타	-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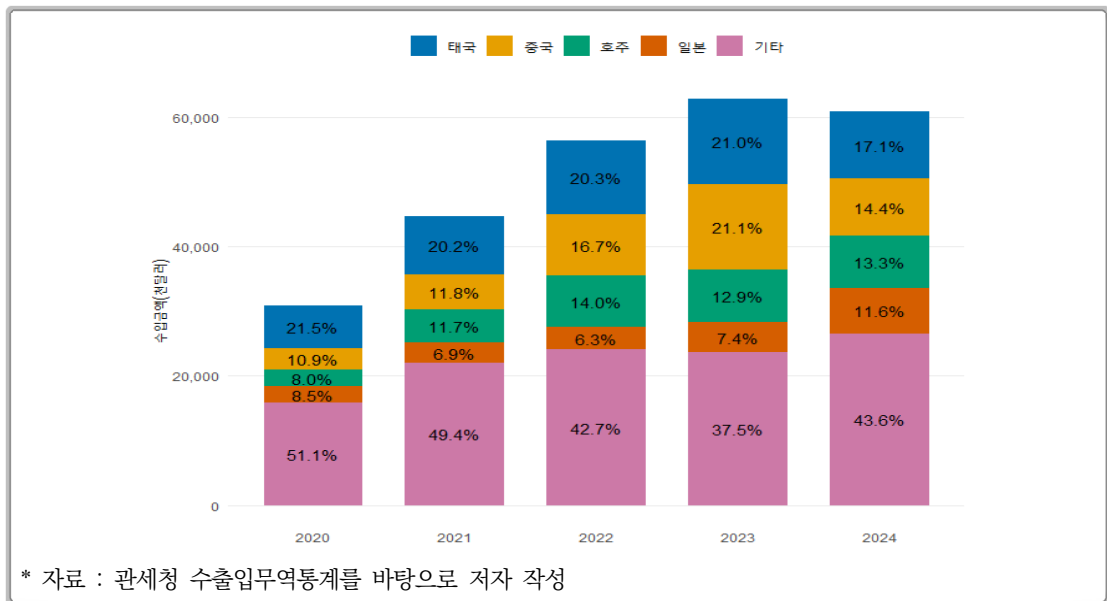
① 수입 패턴

기타 음료류(HSK 2202.99-9000)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태국, 중국, 호주, 일본이며,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수입 금액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한다. 2024년 기준 최대 수입국은 태국으로 17.1%를 차지하나, 이는 2020년 21.5%와 비교할 때 다소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호주·일본은 2020년 대비 2024년에 수입 비중이 모두 상승하는 추

세를 보였다.

전체 수입 규모는 2020년 이후 2023년까지는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24년에 소폭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4] 제2202.99-9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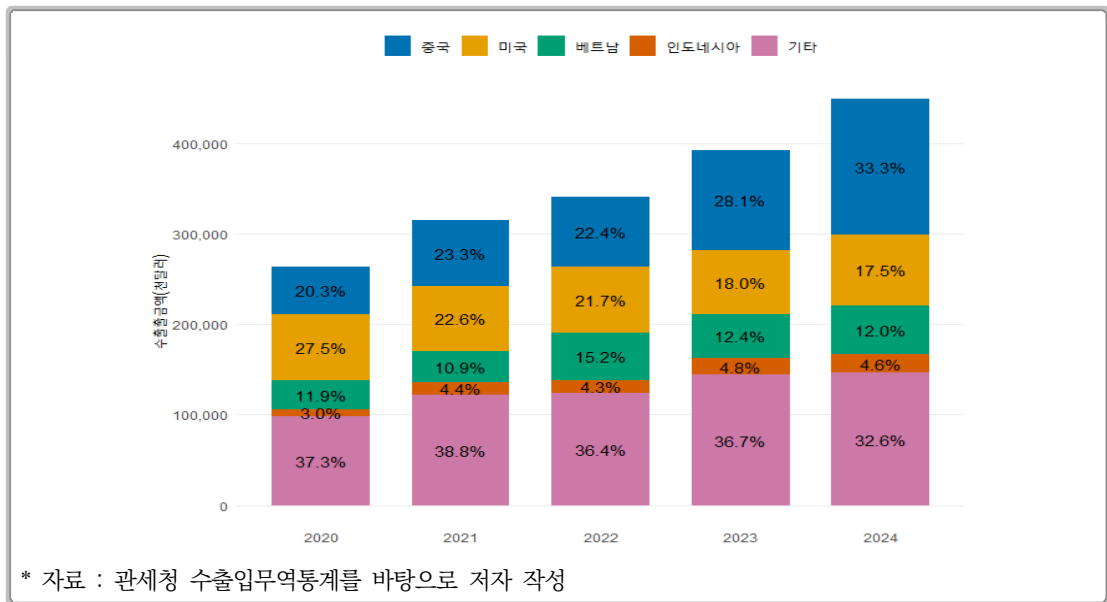


② 수출 패턴

기타 음료류(HSK 2202.99-9000)의 수출은 주로 중국, 미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20.3%에서 33.3%로 크게 상승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27.5%에서 17.5%로 낮아지며 비중이 축소되었다.

전체 수출금액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24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4-25] 제2202.99-9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2202.99호에 대한 주요국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세분화 기준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인삼음료, 식혜, 과일주스 음료를 별도의 코드로 구분하고 있어 식품 유형을 중심으로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설탕이 첨가된 제품만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 특정 성분(설탕) 함유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중국은 먼저 벌크(bulk) 형태 여부를 기준으로 1차 구분하고, 이후 멸종위기 동식물 성분 함유 여부를 다시 구분한다. 이는 포장 형태와 수출입 규제 대상 성분 포함 여부를 구분하는 체계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 중 가장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제품 기반 음료와 과일·야채 주스류를 비교적 세밀하게 구분하며, 주스류의 경우 비타민·미네랄 강화 여부, 농축도, 단일 주스 여부와 혼합 주스 여부 등을 기준으로 품목을 상세하게 세분화하고 있다.

〈표 4-76〉 주요국 분류체계(제2202.99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중국		미국
2202	99				
		100	1 Containing added sugar	00 Other	Other:
		200	2 Other	0011 Other bulk non-alcoholic beverages containing endangered animal and plant ingredients	Milk-based drinks:
				0019 Other bulk non-alcoholic beverages	1000 Chocolate milk drink
				0091 Other packaged non-alcoholic beverages containing endangered animal and plant ingredients	2200 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0099 Other packaged non-alcoholic beverages	2400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2800 Other
					Fruit or vegetable juices, fortified with vitamins or minerals:
					Orange juice:
					3000 Not made from a juice having a degree of concentration of 1.5 or more (as determined before correction to the nearest 0.5 degree)
					3500 Other
					Other:
					3600 Juice of any single fruit or vegetable
					3799 Mixtures of juices
					91 Other
					9110 In aluminum containers
					912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현행 HSK는 제2202.99호에서 인삼음료, 과실주스 음료, 식혜를 제외한 나머지 음료류를 ‘기타’ 품목번호인 제2202.99-9000호에 포괄하고 있어, 특정 번호로 교역량이 과도하게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음료류의 유형과 각 유형의 국내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주요 품목을 선별한 다음, 이들 품목을 독립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은 ‘음료류’의 식품 유형을 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액상차, 과채주스, 두유, 과채음료, 인삼·홍삼음료, 음료베이스, 침출차로 구분하고 있다.

〈표 4-77〉 음료류 식품 유형 및 정의

식품 유형	정의
다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풍차
커피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의 가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 조제커피, 액상커피(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포함)
과일·채소음료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음료, 탄산수
두유류	두류 및 두류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다만, 발효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인삼·홍삼음료	인삼, 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하는 것
기타 음료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

* 자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음료류의 식품 유형별 국내 시장규모는 다음〈표 4-78〉과 같다. 2022년 기준 국내 음료류 시장(10.3조 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품목은 커피와 탄산음료로, 각각 30.8%, 25.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혼합음료, 액상차, 과채주스, 두유, 과채음료, 인삼·홍삼음료, 음료베이스, 침출차 등이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8〉 국내 음료류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10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2022년)
합계	8,446	8,544	8,588	9,583	10,312	100.0
커피	2,576	2,664	2,718	3,117	3,172	30.8
탄산음료	1,878	1,940	2,015	2,296	2,626	25.5
혼합음료	943	903	910	983	1,172	11.4
액상차	602	651	640	697	716	6.9
과채주스	467	470	474	468	436	4.2
두유	481	419	413	432	433	4.2
과채음료	395	346	320	359	404	3.9
인삼/홍삼음료	305	308	304	286	325	3.1
음료베이스	278	299	252	266	305	3.0
침출차	212	222	219	288	304	3.0

* 자료 : 식품 등의 생산실적(2018~20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음료류의 식품 유형이 모두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2202.99-9000)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원재료 성분이나 성상에 따라 다른 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삼음료’는 음료류에 속하지만 제2202.99-1000호에 분류되며, ‘과실주스 음료’는 제2202.99-2000호, ‘탄산음료’는 제2202.10호에 각각 분류된다. 또한 명확히 ‘음료’로 보기 어려운 제품은 이 품목번호에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음료류의 유형에 따라 제2202.99-9000호의 세분화를 검토할 때에는, 상기와 같이 이미 특정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음료 유형을 대상으로한 품목번호 신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규모가 가장 큰 커피의 경우, 제2202.99호 이외에 제2101호에서 인스턴트 커피, 커피 농축액, 커피 조제품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 품목번호(2202.99-9000)에 분류되는 커피는 이들 제품을 제외하고, 커피를 함유한 음료류로 한정된다. 탄산음료는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이 분류되는 제2202.10호에 속하기 때문에, 제2202.99호 내에서 별도 품목번호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

혼합음료의 경우 제2202.99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개념상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독립된 품목번호를 통해 특정 품목을 식별·관리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액상차는 식품공전상 음료류 중 ‘다류’에 해당하나, 차의 추출물 및 조제품은 제2101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제2202.99호에서는 차 추출물을 함유한 음료에 한하여 분류 가능하다. 두유류는 원액두유와 가공두유를 포함하며, 제품 포장은 병·파우치·멸균팩·PET 등으로 다양하다. 콩을 고형분 상태로 만든 두유 원료를 제외하고 제2202.99호에는 음료로 된 두유 제품이 분류된다.

과채음료의 경우, 과실 주스 음료와 채소 주스 음료의 분류 방법이 각각 다르다. 현행 HSK 체계 내에서 과실 주스 음료는 이미 별도 품목번호(HSK 2202.99-2000)로 구분되는 반면, 채소류 음료는 그렇지 않다.

한편 인삼·홍삼음료는 이미 별도 품목번호(HSK 2202.99-1000)가 존재하고, 음료베이스는 제2106호에 분류되며, 침출차는 물에 침출하여 사용하는 식품으로서 제2202호의 음료로 보기 어렵고 차류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상기의 검토를 종합하면, 시장 규모는 크지만 현행 HSK 체계에서 특정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않으며,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2202.99-9000)에 포괄되어 있는 음료 품목을 ‘두유류’, ‘채소 음료’, 커피·차 추출물을 함유한 음료(추출물·인스턴트 등 조제품이 아니라 음료 형태의 제품)로 특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개선안에는 이들 품목에 대응되는 별도 품목번호 신설을 포함하였다. 이는 현행 HSK에서 기타 품목번호에 포괄되어 분류되는 주요 음료 제품을 독립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음료류 무역 패턴을 식품 유형 별로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4-79〉 음료류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2202	99				
		1000	인삼음료	1000	인삼음료
		2000	과실주스 음료	2000	과실주스 음료
		3000	식혜	3000	식혜
		9000	기타	4000 (신설)	커피 함유 음료
				5000 (신설)	차류 함유 음료
				6000 (신설)	채소주스 음료
				7000 (신설)	두유
				9000	기타

6) 제2203.00-0000호(맥주)

(1) 분류체계

맥주가 분류되는 제2203.00호는 HSK 체계에서 국제 공통 6단위 이후 추가 세분 없이 단일한 10단위 품목번호(HSK 2203.00-0000)만 존재한다. 이러한 단순한 체계는 맥주와 마찬가지로 주요 주류 품목에 해당하는 포도주의 분류체계와 대조된다. 제2204호에 분류되는 포도주는 스파클링 여부, 용기 규격, 포도 품종 등을 기준으로 세분되어 있어,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4-80〉 맥주와 포도주의 HSK 분류체계 비교

HSK			품명	관세율	
				기본	국제협력관세(F)
2203				30%	-
	00	0000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30%	15%
	2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000	붉은 포도주	30%	15%
		2000	흰 포도주	30%	15%
		9000	기타	30%	15%
	22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000	붉은 포도주	30%	15%
		2000	흰 포도주	30%	15%
		9000	기타	30%	15%
	29		기타		
		1000	붉은 포도주	30%	15%
		2000	흰 포도주	30%	15%
		9000	기타	30%	15%
	30	0000	그 밖의 포도즙	30%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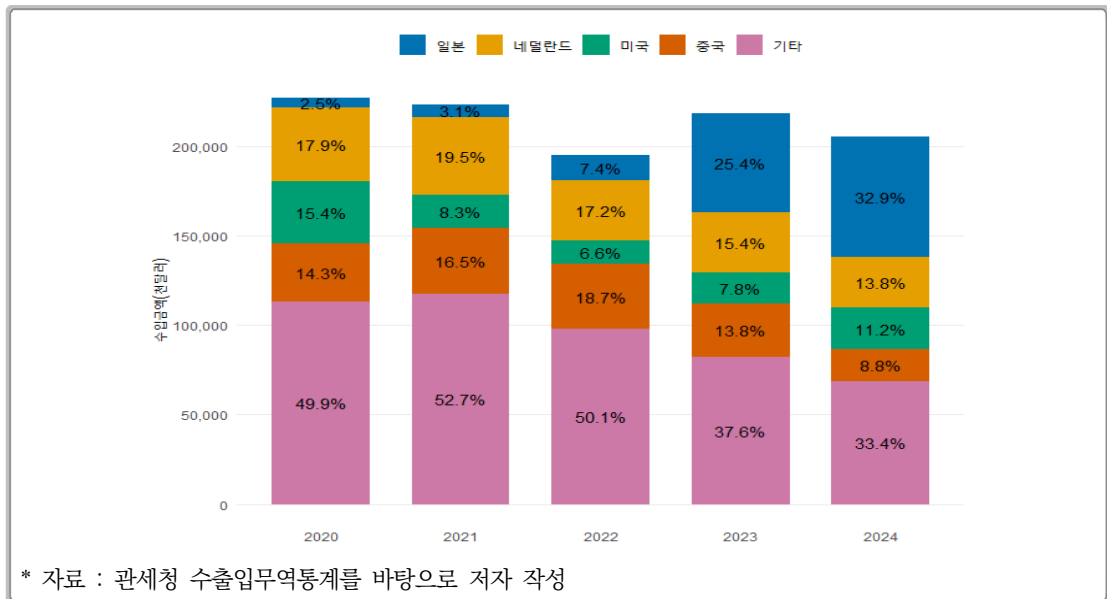
(2) 무역 패턴

① 수입 패턴

맥주(HSK 2203.00-0000)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2024년 기준 일본, 네덜란드, 미국, 중국 순으로 나타난다. 지난 5년간 일본산 맥주의 비중은 2020년 2.5%에서 2024년 32.9%로 급격히 확대된 반면, 중국산 맥주는 2022년 18.7%까지 증가한 이후 2024년 8.8%로 급감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수입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26] 제2203.0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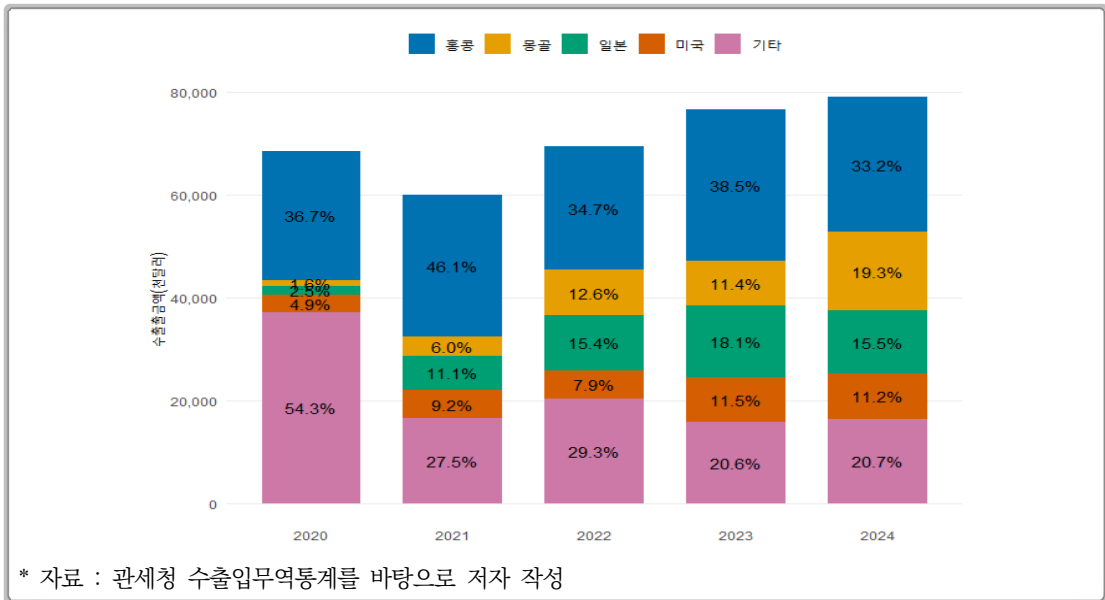


② 수출 패턴

우리나라 맥주 수출은 홍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홍콩이 전체 수출금액의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였다. 몽골은 2021년 6.0%에서 2024년 19.3%로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제2의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2020년 대비 일본 및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전체 수출금액은 202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4-27] 제2203.00-0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맥주(2203.00)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6단위 번호체계에서 추가적인 세분 없이 하위 단위에 단일 품목번호만을 두는 단순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EU와 미국은 맥주의 용기 용량과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운용한다. EU는 용기 용량을 10리터 기준으로 1차 구분한 후, 10리터 이하 구간을 다시 병(bottles)과 기타 품목으로 세분한다. 미국도 EU와 유사하게 용기 용량을 4리터 기준으로 1차 구분하고, 4리터 이하 구간을 유리 용기(in glass containers)와 기타 품목으로 나누고 있다.

<표 4-81> 주요국 분류체계(제2203.0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유럽연합		미국	
2203	00						
	0000	Beer made from malt		-In containers holding 10 litres or less	00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유럽연합		미국
					liters:
			0100	--In bottles	0030 In glass containers
			0900	--Other	0060 Other
			1000	-In containers holding more than 10litres	0090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본 연구에서는 특정 품목번호(HSK 2203.00-0000)에 포괄되어 분류되고 있는 맥주에 대하여, 용기 형태와 용량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 시장에서 맥주는 주로 캔, 페트병, 유리병 등 소매 판매에 적합한 용기와 생맥주를 담은 케그(keg) 형태의 대용량 용기로 유통된다. 따라서 용기의 유형과 용량에 따른 품목분류 구분은 국내 맥주 유통 실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발효주류에 속하는 맥주는 현행 「주세법」 제8조19)에 따라 1킬로리터당 885,700원의 종량세가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 세율의 20%가 감면된다. 이와 같은 감면 규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당시, 소상공인인 주점·음식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맥주의 주세를 인하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도입 당시에는 3년간의 한시적 조치였지만,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2026년 말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다.

이러한 주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법상 세율 구분 기준인 용량(8리터)에 따라 HSK 품목번호를 세분한 다음,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소포장(캔·페트병·유리병) 제품과 그 밖의 제품을 구분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19)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표 4-82〉 맥주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2203	00				
		0000	맥주	1000 (신설)	별도의 추출장치 사용하는 용기(8리터 이상)에 포장된 맥주
				90	기타
				10 (신설)	캔, 페트병, 유리병에 포장된 맥주
				90 (신설)	기타

7) 제2303.10-0000호(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류)

(1)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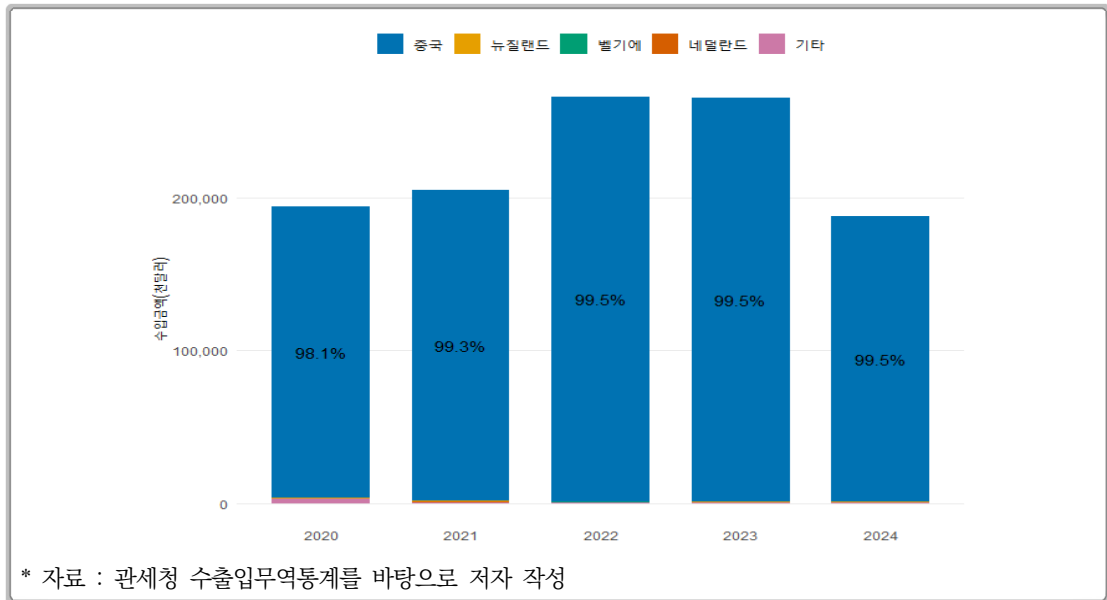
제2303.10호에는 옥수수·쌀·감자 등으로부터 전분을 추출한 후 남은 잔여물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보통 펠릿(pellet)이나 가루 형태로 제시되며, 경우에 따라 케이크(cake) 모양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현행 HSK에서는 제2303.10호를 추가로 세분하지 않고 단일 품목번호(HSK 2303.10-0000)에 모든 물품을 포괄하고 있으며, 동 품목번호에 대해서는 0%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된다.

(2) 무역 패턴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HSK 2303.10-0000)의 수입은 사실상 중국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수입금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상회하며, 최근 5년간 수입 실적에서도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나타난다.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으로부터도 일부 수입이 이루어지지만,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전체 수입금액 추이를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2024년에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8] 제2303.1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전분박(HS 2303.10)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은 모두 HS 6단위 수준에서 더 이상 세분하지 않고 단일 품목번호만을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EU의 분류체계는 먼저 원료를 기준으로 옥수수에서 얻어진 전분박을 구분한 후, 이를 다시 단백질 함량에 따라 세분화한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40%를 초과하는 물품 가운데서는 옥수수 글루텐(corn gluten)을 별도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옥수수 이외의 전분박 중에서는 건조 중량 기준 단백질 함유량이 65%를 초과하는 완두 유래 제품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표 4-83〉 주요국 분류체계(제2303.1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중국		EU	
2303	10					
		000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0000	Residues from starch manufacturing and	-- Residues from the manufacture of starch

		similar residues		similar products		from maize...
					11	--- Exceeding 40 % by weight
					1110	---- corn gluten
					1190	---- Other
					1900	--- Not exceeding 40 % by weight
					90	-- Other
					9010	--- High protein content pea protein, which contains more than 65 percent protein on a dry weight basis....
					9090	---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현행 HSK에서는 제2303.10호(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에 분류되는 품목을 단일 품목번호에 포괄하고 있어, 특정 품목번호에 교역량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전분박은 주로 사료용으로 활용되는 품목으로 농림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상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 4-84〉 전분박의 기준 및 규격

항 목	내 용
정의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및 밀, 카사바(매니옥) 등으로부터 전분을 빼내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영양정보	주성분인 가용무질소물 함량은 약 60~70%이다. 조단백질 함량은 약 7~8%로 상당히 낮으며 이용률도 좋지 않다. 칼슘 및 인 등의 광물질 함량도 낮으며, 비타민 A 및 D를 비롯하여 B군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다.
고려사항	건조하지 않은 전분박은 그 용적에 비해 영양소 함량이 상당히 낮아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많은 양을 급여할 경우 영양소 부족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자료 : 농림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전분박은 전분을 추출한 후 잔존하는 잔류물로서, 사용된 식물성 원료의 종류에 따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 카사바(매니옥) 전분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전분박의 용도는 사료용에 국한되지 않고, 벚꽃 배지, 퇴비 제조 등 산업용(비사료용)으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품목번호 체계로 인해 사료용 전분박과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전분박이 모두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된다.

전분박은 사용 용도에 따라 수입요건이 서로 다른 품목이다. 식물에서 유래한 물품이므로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은 사료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료용 전분박의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기타 폐기물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가 각각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입요건의 차이를 HSK 체계 상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용도를 기준으로 한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2303.10호 내에서 사료관리법 적용 대상인 사료용 전분박과 그 외 용도의 전분박을 별도의 품목번호로 구분함으로써, 수입요건 확인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나아가 주 용도인 사료용의 전분박에 대해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 카사바 등 원료 유형별 추가 세분화를 통해, 사료용 제품이 어떤 성분의 전분박인지도 HSK 품목번호를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85〉 전분박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2303	10				
		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10	사료용
				10 (신설)	감자에서 나온 것
				20 (신설)	고구마에서 나온 것
				30 (신설)	옥수수에서 나온 것
				40 (신설)	밀에서 나온 것
				50 (신설)	카사바에서 나온 것
				90 (신설)	기타
				90 00 (신설)	기타

8) 제2304.00-0000호(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고체 유박)

(1) 분류체계

대두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일 케이크 및 고체 형태의 유박이 분류되는 제2304.00호는 HSK 체계상 국제 공통의 6단위 번호 이후 별도의 세분 없이 단일 10단위 품목번호(HSK 2304.00-0000)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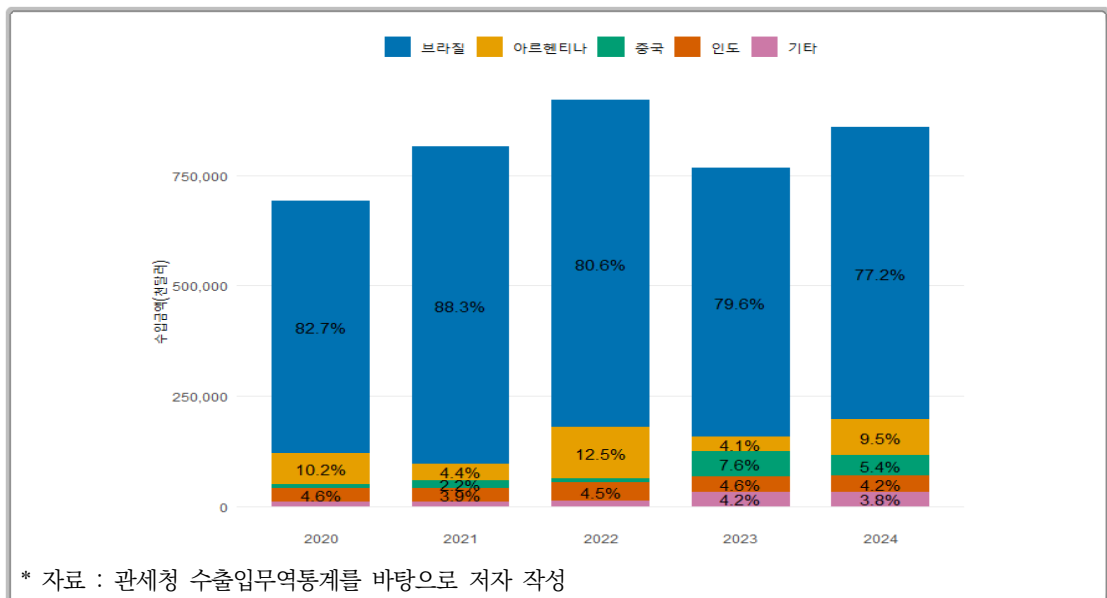
해당 품목번호에는 1.8%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료용 수입 물량 2,000,000톤을 한도로 관세율을 0%로 적용하는 할당 관세가 시행되고 있다.

(2) 무역 패턴

대두유 오일케이크(HSK 2304.00-0000)의 2024년 기준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전체 수입 금액 중 브라질이 77.2%, 아르헨티나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도 일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수입금액은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림 4-29] 제2304.0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대두유 오일케이크(HS 2304.00)의 국가별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HS 6단위 수준에서 더 이상 세분하지 않고 단일 품목번호만을 사용하는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반면, 브라질은 가루와 펠릿 형태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은 호의 용어에 따라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유박을 별도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4-86〉 주요국 분류체계(제2304.0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브라질		중국	
2304	00					
	000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soyabean oil	10	Flours and pellets	10	Oil-cake
			90	Others	00	Oil cake (soybean cake) obtained from refining soybean oil
					90	Other
					00	Other solid residues from soybean oil refining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현행 HSK에서는 제2304.00호(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유박)에 분류되는 품목을 단일 품목번호에 포괄하고 있어, 특정 품목번호에 교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대두박 역시 전분박과 마찬가지로 사료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품목이다. 다만, 두과 작물인 대두로부터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대두박과 전분박은 사용된 원료가 서로 다르다.

농림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단미사료 품목별 기준은 대두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4-87〉 대두박의 기준 및 규격

항 목	내 용
정의	두과 작물인 대두로부터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이다.
영양정보	식물성 단백질사료의 왕으로 불릴 만큼 모든 박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다. 대두박의 영양소 함량은 탈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탈피대두박은 조단백질 함량이 약 48~50%이고, 대두피를 혼입한 대두박은 약 43~45% 정도이다. 식물성 단백질사료 중 아미노산의 조성이 가장 우수하지만 어분에 비하여 메티오닌과 라이신이 부족하다.
고려사항	대두박은 가공 방법에 따라 영양가가 크게 달라지는데, 특히 생대두나 저온처리된 대두 속에는 성장저해인자가 함유되어 있다. 성장을 저해하는 항영양인자로는 트립신의 활성을 억제하는 인자, 헤마글루티닌 및 대두알러젠 등이 있다. 주요 항영양인자들은 열처리에 의해 대부분 불활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정 열처리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우레아제역가(U.A., 최대량) 및 수산화칼륨용액 단백질 용해도(최소량)의 측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자료 : 농림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전분박과 대두박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박 모두 식물성 원료에서 특정 물품을 생산하고 남은 잔여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전분박은 전분을 생산한 후 남은 잔여물인 반면, 대두박은 기름을 생산한 후 남은 잔여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분박은 여러 식물성 원료에서 유래할 수 있는 반면, 대두박은 대두라는 특정 원료에서 유래한다.

본 연구의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분박과 마찬가지로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로 수입·유통되는 대두박을 ‘사료용’ 품목번호로 분리하고, 그 밖의 비사료용 대두유박은 ‘기타’ 품목번호에 포괄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두박은 전분박과 달리 단일한 원료에서 유래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료별 세분화는 도입하지 않고 용도별 구분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사료용 대두박을 대상으로 한 수입요건 심사 및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료 원료에 대한 수입 통계를 다른 용도의 품목과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사료 산업계에 보다 유용한 무역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비사료용 대두박을 별도의 품목번호로 분류함으로써, 환경·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와 HSK 분류체계 간 연계도 용이하다.

〈표 4-88〉 대두박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2304	00				
		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000 (신설)	사료용
				9000 (신설)	기타

9) 제2306.60-0000호(팜 너트·핵 오일 케이크와 고체 유박)

(1) 분류체계

제2306호에는 앞선 호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원료로부터 얻어진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이 분류되며, 이 가운데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은 제2306.60호에 분류된다. 제2306.60호는 HSK 체계상 국제 공통의 6단위 번호 이후 별도의 세분 없이 단일 10단위 품목번호(HSK 2306.60-0000)만 존재한다.

동 품목번호에는 2%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사료용 수입물량 25,000톤을 한도로 관세율을 0%로 적용하는 할당관세가 운영되고 있다.

〈표 4-89〉 제2306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1	W2	할당관세 2025-01-01 ~ 2025-12-31
2306					
10	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20	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30	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4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41	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			
49	0000 기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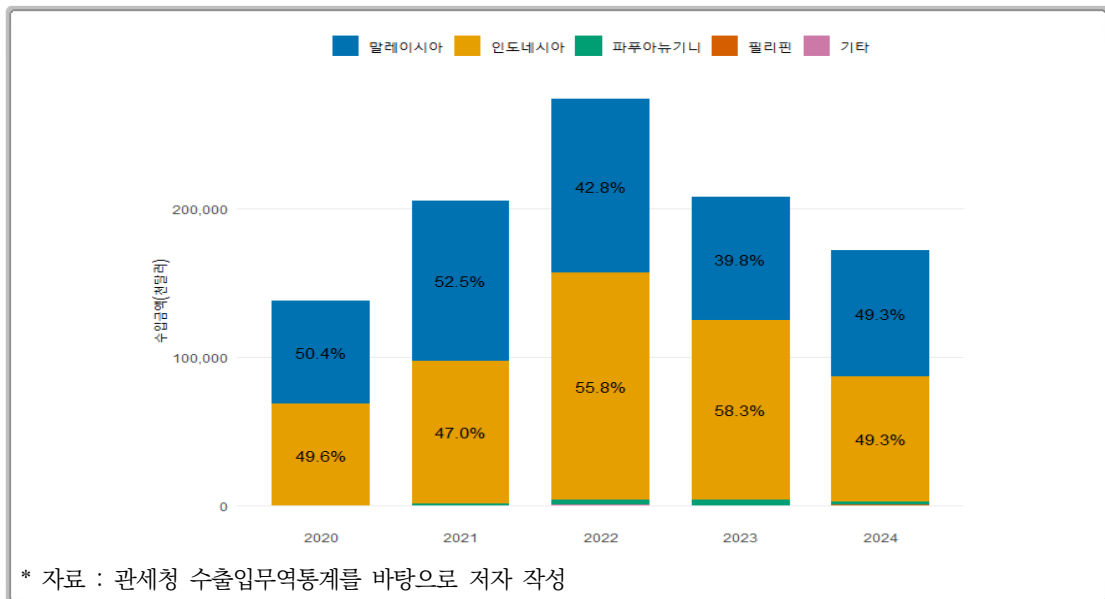
50	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60	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0% (25,000톤)
90		기타				
	1000	참깨에서 나온 것	5%	5%	63% 또는 72원	
	2000	들깨에서 나온 것	5%			
	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5%			
	9000	기타	5%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제2306.60-0000호의 수입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으며, 두 국가가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99%에 달한다. 그 외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으로부터도 일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수입금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0] 제2306.60-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팜 너트·핵 오일케이크(HS 2306.60)의 주요국 분류체계는 전반적으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HS 6단위 수준에서 더 이상 세분하지 않고 단일 품목 번호만을 사용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분쇄(ground) 여부와 펠릿 형태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개의 품목번호로만 구분하고 있어, 주요 교역 상대국 모두 단순한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표 4-90〉 주요국 분류체계(제2306.60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306	60						
		000	Of palm nuts or kernels	1000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10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9000	Other	9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현행 HSK에서는 제2306.60호(팜 너트(palm nut)나 핵(kernels)에서 나온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 잔유물)에 분류되는 품목을 단일 품목번호(HSK 2306.60-0000)에 포괄하고 있어, 특정 품목번호에 교역량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앞서 팜유박과 마찬가지로 식물성 원료의 잔재물에 해당하는 전분박과 대두박에 대해서는 용도 및 원료에 따른 세부 분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팜유박 역시 이들 박류와 마찬가지로 주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다. 다만 팜 나무의 과실부터 유래한다는 점에서 다른 박과 그 원료가 다르다. 농림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단미사료 품목별 기준은 팜유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4-91〉 팜유박의 기준 및 규격

항 목	내 용
정의	핵을 제외한 열매로부터 팜유를 짜고 남은 고형물을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항 목	내 용
영양정보	약 14~16%의 조단백질 및 약 14~20%의 조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고려사항	반추동물의 사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단위동물사료에 약 10%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료 : 농림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

팜유박이 앞선 두 박(전분박, 대두박)과 구별되는 점은, 팜나무 과실로부터 유래한 잔재물이라는 데 있다. 팜나무 과실은 오일 함량이 높으며, 이 오일(팜유)을 짜내고 남은 잔여물이 팜유박이다.

본 연구의 개정안에서는 앞서 검토한 두 박과 동일한 분류 원칙을 적용하여,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로 수입·유통되는 팜유박을 ‘사료용’ 품목번호로 별도 구분하고, 그 외 비사료용 팜유박은 ‘기타’ 품목번호에 포괄하도록 하였다. 또한 팜유박은 팜 과실 중 너트(nut) 또는 핵(kernel) 부위에서 유래할 수 있으므로, 원료의 부위를 기준으로 한 추가적인 세분화도 함께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사료용 팜유박에 대한 수입요건 심사 및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수입 통계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사료 산업계에 유용한 무역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비사료용 팜유박은 별도의 품목번호를 통해 구분 관리됨으로써, 환경·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와의 연계도 용이하다.

〈표 4-92〉 팜 너트·핵 오일케이크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2306	60				
		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10	사료용
				10 (신설)	팜 너트(palm nut)에서 나온 것
				20 (신설)	팜 핵(核)에서 나온 것
				90 (신설)	기타
				9000 (신설)	기타

10) 제2404.11-0000호(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1) 분류체계

제7차 HS 개정(2022년 1월 1일)으로 신설된 제2404호는 기존의 켈런·시가 등 전통적인 담배제품과 구별되는 새로운 담배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담배제품의 특징은 연소 없이 가열장치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흡입한다는 점이다. 전자담배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를 통해 흡입하는 제품 외에도,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하기 위해 씹기·용해·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경피흡수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된다.

제2404호 중 제2404.1-호에는 연소 없이 가열장치 등으로 흡입하는 물품이, 제2404.9-호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흡수하는 물품이 각각 분류된다. 제2404.1-호는 다시 담배 또는 재구성 담배 함유 여부에 따라 세분되며, 그 중 담배나 재구성 담배를 함유한 물품은 제2404.11호에 속한다. HSK 체계는 제2404.11호에서 추가적인 세분 없이 단일 10단위 품목번호(HSK 2404.11-0000)만 존재한다.

〈표 4-93〉 제2404호 HSK 분류체계

HSK	품명	관세율	
		기본	WTO 협정관세
2404			
1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11 0000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40%	
12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0 전자담배용 용액	8%	6.5%
	9000 기타	8%	6.5%
19	기타		
	1000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90 기타		
	10 전자담배용 용액	8%	6.5%
	90 기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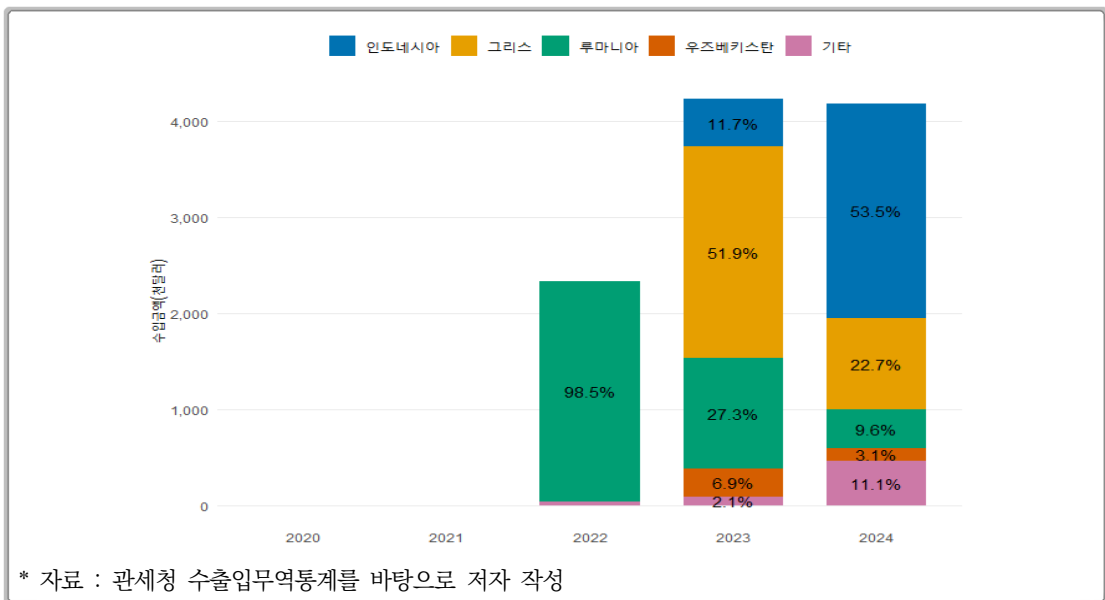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 무역 패턴

① 수입 패턴

제2404호는 제7차 HS 개정으로 신설된 호로서, 무역 통계는 2022년 이후부터 작성되고 있다. 제2404.11-0000호가 도입된 2022년에는 루마니아가 최대 수입 상대국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와 그리스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그림 4-31] 제2404.11-0000호 연도별 수입금액 및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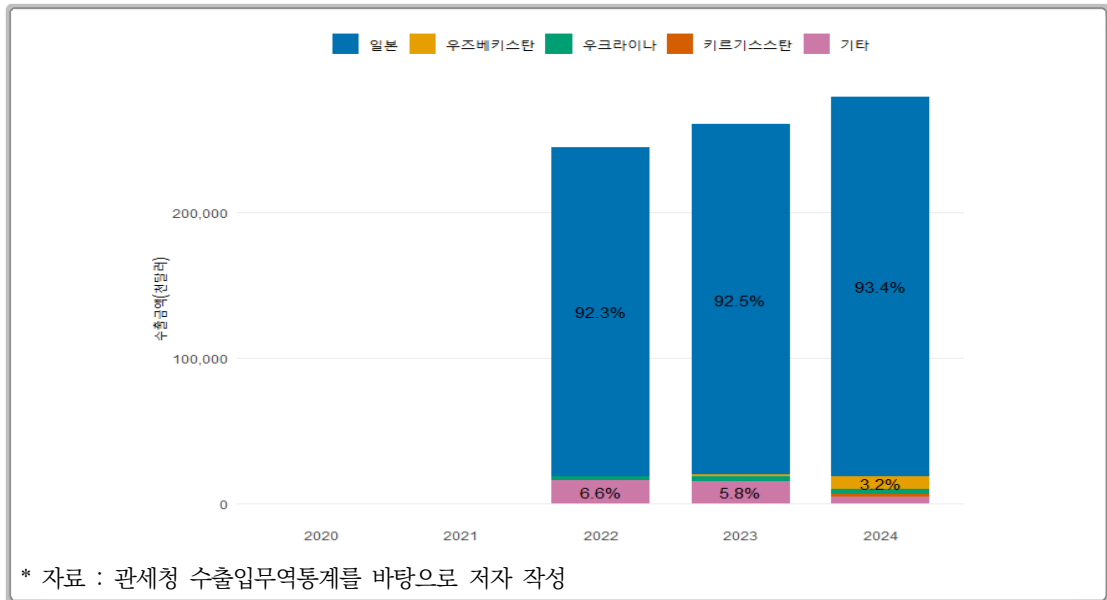
② 수출 패턴

2024년 기준 제2404.11-0000호의 최대 수출 상대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출 금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한다.

일본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으로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수출 금액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2] 제2404.11-0000호 연도별 수출금액 및 국가별 비중



(3) 주요국 분류체계

제2404.11호에 대한 주요국의 분류체계는 전반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일본은 해당 물품이 재구성한(reconstituted) 담배인지, 또는 균질화한(homogenised) 담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EU 역시 재구성 담배 함유 여부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404.11호를 HS 6단위에서 더 이상 세분하지 않고 단일 품목번호만 운용하고 있다.

<표 4-94> 주요국 분류체계(제2404.11호) 비교

HS(6단위)		국가별 분류체계			
국제 공통		일본	인도네시아		EU
2404	11				
	100	1 "Homogenised" or "reconstituted" tobacco	00	Containing tobacco or reconstituted tobacco	0010 Containing reconstituted tobacco
	200	2 Other			0090 Other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제2404.11-0000호에 분류되는 담배 제품은 2022년 해당 HS가 신설된 이후, 연간 수출액이 2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2022년 제2404호 신설에 따라 2404.11호는 HSK 체계에서 추가로 세분되지 않고 단일한 10단위 품목번호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교역국의 분류체계 또한 대체로 단순한 구조이며, 일본과 EU의 경우 제품에 함유된 담배가 ‘균질화한 담배’인지, ‘재구성한 담배’인지 여부에 따라 세분하는 정도에 그친다.

균질화 및 재구성한 담배의 개념은 HS 제2403호 해설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의 잎·담배 웨이스트(waste)나 담배의 부산물이나 더스트로부터 미세하게 분할한 담배를 응집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404.11호의 호의 용어상 “담배를 함유한 것(containing tobacco)”과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reconstituted tobacco)”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 둘을 기준으로 HSK 10단위 품목번호를 추가로 신설하여 구분하는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다만, 재구성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일반 담배와 구분되어 독립된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담배시장 규모 산정이나 유통 구조상 재구성 담배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구성 담배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된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구성 담배 여부에 따른 HSK 세분화보다는 수입 관리·통계 측면에서 보다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담배 제품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국민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품목인 가향담배를 중심으로 해당 품목을 품목분류 체계상에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가향담배의 분류 문제는 분석 대상 품목번호(HSK 2404.11-0000)에만 한정되는 쟁점은 아니다. 가향담배는 일반적인 흡연용 담배가 분류되는 HS 제2402호 및 제2403호에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향담배의 분류에 대하여 별도의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5. 그 외 품목

1) 즉석식품류

(1) 검토 배경

즉석식품은 식품공전에서 조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으로 정의된다. 즉석식품 유형에는 생식류, 만두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가 있다. 이 가운데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다시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의 네 가지 세부 유형으로 세분된다. 간편조리세트는 통상 ‘밀키트’로 불리는 제품으로, 즉석조리식품과 달리 자연산물(조리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을 함께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석식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집밥 수요 확대, 1인 가구 증가, 간단한 식사 선호 등 식문화의 변화가 즉석식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즉석식품의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4-95〉 즉석식품류 식품 유형 및 정의

항 목	내 용	
생식류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	
	세부 유형	
	1)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
	2)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3) 즉석조리식품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가열 등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국, 탕, 수프, 순대 등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간편조리세트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간편조리세트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는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만두류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성형한 만두피에 고기, 야채, 두부, 김치 등 다양한 원료로	

항 목	내 용
	제조한 소를 넣고 빚어 만든 것을 말한다.

* 자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즉석식품 산업의 확대에 따라 국내 출하액과 수출액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96>은 2024년 기준 식품 유형별 생산량, 국내 출하액 및 수출액을 정리한 것이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탄산음료, 맥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국내 출하액은 6조원을 넘어 가장 큰 규모이다. 수출액 역시 상위권에 위치하며, 유탕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표 4-96> 2024년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순위	품목명	생산량(Ton)	국내출하액(천원)	수출액(불)
1	탄산음료류	3,071,015	2,702,884,419	48,979,146
2	맥주	1,544,624	2,459,103,110	90,878,201
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1,457,503	6,342,478,757	787,172,641
4	소스류	1,408,402	4,963,135,707	150,858,259
5	기타 농산가공품류	1,084,098	2,873,571,746	35,949,882
6	커피	996,232	3,511,093,747	164,758,652
7	빵류	792,439	4,431,827,259	51,237,176
8	유탕면	788,891	2,291,732,400	1,186,329,128
9	기타가공품	501,225	2,300,981,223	204,590,723
10	기타 수산물가공품	388,658	3,428,306,376	359,009,189

* 자료 : 2024 식품 등의 생산실적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세부 품목별로 나누어 보면,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의 수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즉석조리식품(기타)의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석조리식품에는 수출 유망 품목으로 주목받는 즉석밥과 냉동김밥(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이 포함된다.

즉석조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은 추가적인 조리(가열 등) 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실제로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품목은 보관·유통상의 이유로 대부분 냉동 형태로 제조·유통되므로, 즉석조리식품의 수출 금액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통계상 즉석섭취

취식품(도시락)의 수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항공기 내에서 별도 조리 없이 바로 소비되는 기내식이 즉석섭취식품(도시락)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4-97〉 2024년 즉석섭취·편의식품류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순위	품목명	생산량(Ton)	국내판매액(천원)	수출액(불)
1	즉석조리식품(기타)	506,119	2,119,013,590	125,248,570
2	즉석섭취식품(기타)	271,438	1,170,387,158	1,118,646
3	즉석섭취식품(김밥)	198,703	890,442,851	304
4	즉석섭취식품(도시락)	128,636	568,983,884	652,594,559
5	즉석조리식품(탕)	94,253	327,825,257	4,796,289
6	즉석조리식품(순대)	67,241	276,722,884	97,117
7	즉석조리식품(국)	29,210	170,685,690	2,377,136
8	즉석섭취식품(햄버거)	20,796	140,217,938	-
9	즉석조리식품(수프)	9,265	61,298,472	53,047
10	즉석섭취식품(선식)	1,498	12,406,959	477,617

* 자료 : 2024 식품 등의 생산실적

(2) 즉석식품의 품목분류

즉석식품은 성분, 조리 상태,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품목번호에 분류된다. 이 가운데 성분 구성은 품목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 가운데 성분 구성은 품목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만약, 육류나 어류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6류(육·어류의 조제품) 분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육·어류 함량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16류에 분류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²⁰⁾ 이러한 품목에는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만두류), 제2103호의 소스류, 제2104호의 스프류가 있다.

육·어류 함량을 20%를 초과하지 않고, 찌거나 삶은 쌀(steamed or boiled rice)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 식료품이라면, 제1904.90-1010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품목에는 사전에 조리된 쌀에 각종 육류, 채소, 소스 등이 함께 제시되는 즉석식품이 있으며, 즉석밥, 도시락, 김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4-98〉은 식품공전상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요 품목분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20) 제16류 주2 규정

〈표 4-98〉 즉석식품 품목분류 사례

식품 유형	HSK 품목번호	제품 설명	제품 사진
냉동도시락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사전조리한 낱알상의 쌀 약 39.2%, 익힌 채소류(당근, 피망, 가지 등) 약 38.5%, 소스 약 22.3%를 칸막이로 분리된 지제 용기에 담고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	
냉동김밥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사전조리한 쌀, 조리한 채소류(마늘, 당근, 시금치, 우엉, 단무지 등을 김으로 말아 감싼 후 절단한 것을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	
즉석밥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열처리한 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냉동만두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	듀럼밀, 달걀, 우유 등을 혼합 반죽하여 조제한 황색 외피에 가재살, 달걀, 치즈, 야채 등으로 속을 채운 후 완전히 끝부분을 봉합한 사각형 만두형상을 냉동하여 수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수프	2104.10-2000 (수프·브로드)	절단된 명태 21.6%, 명태곤이 9.0%, 주름미더덕 3.6%에 무, 호박, 파 등의 절단된 채소를 정제수, 고춧가루, 소금, 된장, 마늘 등으로 조제된 액상과 함께 알루미늄 파우치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 검토 의견 및 개선안

현행 HSK 체계에서 즉석식품을 포괄하는 품목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즉석식품에 한정하여 교역량을 산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즉석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 확대를 고려하면, 해당 품목군에 대한 정확한 무역통계 작성이 필요하다. 이는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정책 지원 대상 선정 등 향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즉석식품을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식품공전 상의 유형만 보더라도 즉석식품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품목 중 별도 HSK 10단위 품목번호 신설이 가능한 유형을 선별하였다. 해당 유형은 사전에 조리된 쌀을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각종 채소·육류·소스를 혼합·조미한 제품으로, 대표적으로 김밥, 도시락, 즉석밥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추가적인 조리(가열 등) 필요 여부에 따라 즉석섭취식품과 즉석조리식품으로 구분되지만, 식품공전상 모두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속한다.

이들 제품은 공통적으로 쌀이 주성분이라는 점에서 HS 체계 내에서 하나의 품목군(사전조리된 곡류 조제품)으로 묶을 수 있으며, 동일한 6단위 HS 내에서 세분화된 HSK 10단위 품목번호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유망 즉석식품류에 대한 통계 기반 정책 수립과 수입·수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표 4-99〉 즉석식품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1904	90				
		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낱알 모양의 쌀	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낱알 모양의 쌀
		10	찌거나 삶은 쌀	1	찌거나 삶은 쌀
		90	기타	11 (신설)	즉석밥
		9000	기타	12 (신설)	김밥
				13 (신설)	도시락
				19 (신설)	기타
				90	기타
				9000	기타

2) 대체식품

(1) 검토 배경

2022년 제7차 HS 개정으로 식용 곤충이 분류되는 제0410.10호가 신설되었다. 해당 호의 신설은 식용 곤충의 무역량 증가와는 별개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FAO는 식량 자원과 관련된 HS의 개정에 적극적이고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FAO는 1970년대 초반 식량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 생산 및 식량 안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량 및 농업에 대한 지구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GIEWS;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GIEWS의 목적은 각국의 정책 담당자와 분석가들에게 식량의 수급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식량 위기로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경고하는 것이다²¹⁾.

HS 제7차 개정에서는 그동안 어느 HS에서도 특제되어 있지 않았던 식용의 곤충을 제0410.10호에 특제하고, 제16부의 주 규정과 호의 용어를 개정하여 곤충 또한 관세율표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그 조제품에 속함을 명시하였다. 식용 곤충의 품목분류는 곤충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미래 식량 위기를 대비한 대체식품 중 하나가 HS에 독립된 품목번호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 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 유지류(식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 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 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작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는 식품으로 정의된다.

세계 대체식품 유형별 시장규모는 식물성 단백질 기반 제품(식물성 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우유 및 음료 등), 곤충 단백질 기반 제품, 해조류 단백질 기반 제품 순으로 크며, 특히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은 전체 시장규모의 87.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품 유형별 시장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곤충 단백질 기반 제품(22.7%), 배양육(19.5%), 해조류 단백질 기반 제품(8.3%),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8.1%), 미생물 단백질 기반 제품(5.0%)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²²⁾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 자원에 대해 자급률이 낮은 대표적인 식량 수입국이다. 식물성 대체육을 비롯한 대체식품군은 단순히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체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평가된다. 현재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등 대체 식품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적·산업적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식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대체 식품을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중요물자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김성채, “HS 개정내용 해설”, 2022.

22) 박미성, 박시현, 이용선, “대체식품의 현황과 대응과제”, KREI 농정포커스, 2020.

이에 본 연구는 이미 별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고 있는 식용 곤충 이외에,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육, 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배양육 등의 주요 대체 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HSK 품목번호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대체식품의 품목분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체식품은 크게 2가지이다. 먼저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 그리고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배양육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식용 곤충은 제7차 HS 개정에서 특계가 되었으나 대체육 등의 물품은 HS에 명확히 특계된 바가 없다. 대체식품의 품목분류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00〉 대체식품의 품목분류 사례

식품 유형	HSK 품목번호	제품 설명	제품 사진
식물성 단백질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쌀에서 전분 등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미황색계 분말상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8.5%), 단백질 기능 강화용(음료, 건강기능식품)	
대체육 조제식품	2106.90.82 (기타 단백질 농축물)	탈지유, 빵가루, 해바라기유, 세포 배양육, 향료와 소금 등으로 구성된 너겟 형태 조제식품	
식물성 단백질 조제품	2106.90.99 (기타 조제식품)	물, 소스, 대두 단백질(textured soy protein)으로 이루어진 식물성 단백질 조제품,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우리나라 분류사례는 식물성 단백질을 크게 제2106.10호와 제2106.90호로 분류하고 있다. 제2106.10호에 분류되는 식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분말 상태로 식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반면에 제2106.9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식품 형태의 조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바로 공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의 분류 사례에서는 식물성 단백질과 배양육으로 만든 조제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CBP)는 대체육 조제 식품과 식물성 단백질 조제품 모두 제2106.90호에 분류하였다.

(3) 검토 의견 및 개선안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조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2106.90호의 기타 조제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세포로 만든 배양육의 경우 분류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류의 명확성이 떨어진다. 식물성 단백질과 배양육은 제조 및 가공 공정이 도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육류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체식품이 육류 산업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 식품과 같이 안전성 측면에서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대체식품은 수입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관세율 측면과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의 육류와 다르게 다루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제02류(육류)나 제04류(낙농품) 또는 제16부(육류 조제품) 등에 기존 식품과 함께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WCO HS 심포지엄에서는 대체육 등을 제2106.30호에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되는 형태의 대체육과 배양육 조제품이 차후 제2106.30호에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우리나라는 제2106.90호의 하위 품목번호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도출하였다.

〈표 4-101〉 대체식품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2106	90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베이스			
	2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인삼제품류	30		인삼제품류
			40	00 (신설)	식물성 단백질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50	00 (신설)	세포 배양육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90	기타	90		기타

3) 가향담배

(1) 검토 배경

담배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품목이다. 현행 국내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³⁾.

최근 이러한 담배의 법적 정의를 연초 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²⁴⁾. 이번 개정은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 규제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 흡연 문제와 맞물려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향담배는 담배제품에 인위적으로 맛이나 향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향료 등의 성분을 첨가한 제품을 말한다. 우리나라 담배시장에서 가향담배 소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년층의 흡연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향담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담배 총 판매량 중 가향담배 비중은 38.4%에 달한다.

23) 「담배사업법」 제2조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88)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규제, 온라인 판매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등 주요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결일 2025. 12. 2.)

〈표 4-102〉 국내 담배시장 중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판매 규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담배 총 판매량(억갑)	36.7	35.2	34.8	34.5	35.9
전체 가향담배(억갑)	7.6	8.6	10.7	12.3	13.8
비중(%)	20.7	24.4	30.8	35.7	38.4
금액(억원)	34,008	38,558	48,025	55,069	61,942
캡슐담배(억갑)	6.1	6.7	7.3	9.1	11.0
비중(%)	16.6	19.0	21.0	26.4	30.6
금액(억원)	27,431	29,887	32,893	40,885	49,350
캡슐 외*(억갑)	1.5	1.9	3.4	3.2	2.8
비중(%)	4.1	5.4	9.8	9.3	7.8
금액(억원)	6,577	8,671	15,132	14,184	12,592

* 캡슐 외 가향담배는 담뱃잎을 향료에 담그거나 향료를 분사하는 방식, 필러지에 향료를 도포하는 방식, 니코틴 용액에 향료를 첨가하는 방식 등을 말함

** 자료 : 가향담배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 및 시사점(2021), 원자료: 기획재정부, 담배5사

가향담배 유형으로는 필터 내 캡슐을 터트리면 첨가물이 방출되어 맛과 향이 나는 캡슐담배가 대표적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에 다양한 향료를 주입·혼합하는 방식이 있다.

국내에서도 가향담배 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담배에 가향 성분 첨가를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가향물질의 ‘표시’를 제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은 제조자 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문구·그림·사진 등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향 여부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할 뿐,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향물질 첨가 규제 및 담배 성분 정보 공개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수입 단계에서 가향담배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HSK 품목분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건강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이 분류되는 독립된 HSK 품목번호가 마련된다면, 수출입 무역량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관련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입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향담배의 품목분류

현행 HS에서는 가향담배를 별도로 분류하는 독립된 품목번호가 없다. 따라서 담배는 가향 여부와 무관하게 담배의 형태(잎담배, 시가, 껴련 등), 사용 방법(코 담배, 씹는 담배, 연소, 가열 등), 담배·니코틴 함유 여부 등에 따라 제24류 내에서 해당하는 품목번호에 분류된다.

다만, HS의 총설, 소호주에서 가향과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먼저 담배가 분류되는 제24류 총설에서는, 품질의 보존이나 향과 맛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나 습윤 물질을 첨가(포장)한 물품이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4류 소호주에 따르면, 제2403.11호에 분류되는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에는 방향성 기름·추출물(extract)과 당밀이나 당을 함유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한 물품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HS 체계에서는 가향담배를 비가향 담배와 구분되는 독립 품목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일한 품목번호 내에서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설서 및 주 규정에서도 담배에 방향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예시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며, 가향 여부를 기준으로 한 세부적인 분류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주요국 분류체계

주요국의 분류체계 중 가향담배를 별도로 구분하는 사례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의 분류체계는 제2404.12호 및 제2404.19호에서 개인용 전기·전자 기화장치에 사용되는 혼합물 중 가향물질이 중량 기준 5% 이상 함유된 제품을 별도 품목번호로 구분한다.

제2404.1호는 HS 2022 개정에서 신설된 호로, 연소 없이 흡입하도록 제조된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전자담배용 액상 등 기화장치를 통해 사용하는 담배제품을 들 수 있다. 이 중 미국은 니코틴을 함유한 물품(HS 2404.12)과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HS 2404.19)에 대하여, 하위단위에서 방향물질(aromatic substances)이 일정 비율 이상 함유된 제품을 별도의 품목번호로 규정하는 것이다.

미국 분류체계의 주요 특징은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향 여부에 따른 개별 품목번호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향 여부에 따른 세분은 개인용 전기·전자 기화장치용 혼합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또한 가향의 판단 기준을 방향성 물질 함량이 중량 기준 5% 이상인 경우로 설정함으로써, 가향 여부를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표 4-103〉 가향담배 품목분류 체계(미국)

HS(6단위)		미국 분류체계	
국제 공통			
2404	12	Other, containing nicotine	
			Mixtures for personal electric or electronic vaporizing devices: (개인용 전기·전자 기화장치용 혼합물)
	0500	Mixtures 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one or more aromatic or modified aromatic substances (방향족 또는 변성된 방향족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혼합물)	
	1000	Other(기타)	
	9000	Other(기타)	
2024	19	Other	
			Mixtures for personal electric or electronic vaporizing devices: (개인용 전기·전자 기화장치용 혼합물)
	0500	Mixtures 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one or more aromatic or modified aromatic substances (방향족 또는 변성된 방향족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혼합물)	
	1000	Other(기타)	
	9000	Other(기타)	

* 자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S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검토 의견 및 개선안

담배 제품은 크게 일반담배(궐련)와 전자담배로 구분할 수 있다. 궐련은 절단한 담뱃잎을 권련지에 말아 만든 물품에 불을 붙여 사용하는 전통적인 담배 제품이며, 전자담배는 전기식 기화장치를 이용하여 니코틴 용액 또는 전용 담배 스틱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새로운 제품이다.

이와 같은 제품 유형의 차이는 HS 품목분류에도 반영된다. 일반 궐련 제품은 제2402호에,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담배 스틱, 니코틴 용액 등은 제2404호에 각각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주요 담배 유형을 대상으로, 가향 여부를 기준으로 한 추가 세분화 방안을 HS 품목분류 개선안에 반영하였다.

〈표 4-104〉 담배 종류별 정의 및 주요 유형

	일반담배(꺾련)	전자담배
정의*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꺾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꺾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주요 유형	- 꺾련담배 - 필터담배 - 캡슐담배	- 액상형(니코틴 용액) 전자담배 - 꺾련형 전자담배
품목 분류	- 꺾련형 담배(HS 2402.20) - 필터담배(HS 2402.20)	- 액상형(니코틴 용액) 전자담배(HS 2404.12) - 꺾련형 전자담배(HS 2404.11)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본 연구의 개선안은 주요 담배 제품이 분류되는 HSK 품목번호에 대한 추가 세분을 통해, 가향담배와 비가향 담배를 품목분류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 대상은 기존의 5개 HSK 품목번호이며, 각 품목 내에 가향물질을 함유한 담배가 독립적으로 분류되는 신규 품목번호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가향물질을 함유한 담배를 일반 담배와 구분하여 무역 통계 작성이 가능하며, 나아가 가향담배에 대한 수입 관리 및 규제 정책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표 4-105〉 가향담배 HSK 분류체계 개선안

HS(6단위)		HSK(10단위)			
국제 공통		현행 분류체계		개선안	
2402	20		꺾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0	필터담배	10	필터담배
		9000	기타	1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90 (신설)	기타
				90	기타
				1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90 (신설)	기타
2404	11	0000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100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9000 (신설)	기타
2404	12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0	전자담배용 용액	10	전자담배용 용액
		9000	기타	1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90 (신설)	기타
				90	기타
				1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90 (신설)	기타

제3절 개선안

본 절에서는 제2절에서 제시한 품목별 검토 의견을 토대로 HSK 개선안을 하나의 표로 일괄 정리하였다.

〈표 4-106〉은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HSK 품목번호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따른 HSK 변경 사항, 신설 품목번호 및 품명, 비고를 각 행별로 제시한다. 전체 분석대상 품목번호 33개 중 개선 사항이 없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품목번호는 5개이며, 나머지 28개 품목번호는 세분화를 통해 총 99개 품목번호로 확대되었다.

개선안을 마련한 품목번호는 HS 제1부부터 제4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며, 세분화 기준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부위, 성분, 포장 형태, 용도 등으로 다양하다.

〈표 4-106〉 제1부~제4부 품목별 HSK 개선안

부	류	HS (6단위)	현행	개선안				
			HSK (10단위)	HSK 변경 사항	품명	비고		
제1부	제02류 (육류)	0201.30	0201.30-0000	HSK 1개→6개		부위별 세분화		
				0201.30-1000 (신설)	갈비			
				0201.30-2000 (신설)	양지			
				0201.30-3000 (신설)	앞다리			
				0201.30-4000 (신설)	등심			
				0201.30-5000 (신설)	목심			
				0201.30-9000 (신설)	기타			
			0202.30	0202.30-0000	HSK 1개→6개		부위별 세분화	
					0202.30-1000 (신설)	갈비		
					0202.30-2000 (신설)	양지		
					0202.30-3000 (신설)	앞다리		
					0202.30-4000 (신설)	등심		
					0202.30-5000 (신설)	목심		
					0202.30-9000 (신설)	기타		
				0203.29	0203.29-9000	HSK 1개→5개		부위별 세분화
						0203.29-2000 (신설)	앞다리	

부	류	HS (6단위)	현행	개선안		
			HSK (10단위)	HSK 변경 사항	품명	비고
제2부				0203.29-3000 (신설)	목심	
				0203.29-4000 (신설)	등심	
				0203.29-5000 (신설)	뒷다리	
				0203.29-9000 (유지)	기타	
	제03류 (어류)	0302.14	0302.14-0000	현행 유지	-	
		0303.67	0303.67-0000	현행 유지	-	
		0306.17	0306.17-1090	현행 유지	-	
		0306.33	0306.33-9000	현행 유지	-	
		0307.43	0307.43-2090	현행 유지	-	
				개선안 ① HSK 1개→6개		부위별 세분화
				0307.43-2091 (신설)	전체	
				0307.43-2092 (신설)	동체	
				0307.43-2093 (신설)	지느러미	
				0307.43-2094 (신설)	다리	
				0307.43-2095 (신설)	슬라이스	
				0307.43-2099 (신설)	기타	
				개선안 ② HSK 1개→4개		종별 세분화
				0307.43-2020 (신설)	Todarodes pacificus 종	
				0307.43-2030 (신설)	Dosidicus gigas 종	
				0307.43-2040 (신설)	Illex argentinus 종	
		0307.43-2090 (유지)	기타			
제08류 (과실·견과류)	0803.90	0803.90-0000	HSK 1개→3개		상태별 세분화	
			0803.90-10	신선한 것		
			0803.90-1010 (신설)	그린 바나나		
			0803.90-1020 (신설)	기타		
			0803.90-2000 (신설)	건조한 것		
	제09류 (커피차 등)	0901.11	0901.11-0000	HSK 1개→3개		품종별 세분화
				0901.11-1000 (신설)	아라비카	
			0901.11-2000 (신설)	로부스타		

부	류	HS (6단위)	현행	개선안			
			HSK (10단위)	HSK 변경 사항	품명	비고	
		0901.21	0901.21-0000	0901.11-9000 (신설)	기타	품종·포장 세분화	
				HSK 1개→6개			
				0901.21-10	소매용 포장 (1kg 이하)		
				0901.21-1010 (신설)	아라비카		
				0901.21-1020 (신설)	로부스타		
				0901.21-1090 (신설)	기타		
				0901.21-90	기타		
				0901.21-9010 (신설)	아라비카		
				0901.21-9020 (신설)	로부스타		
				0901.21-9090 (신설)	기타		
	제10류(곡물)	1001.99	1001.99-2090	현행 유지			
	제12류 (채유용 종자·과실)	1214.90	1214.90-9090	HSK 1개→6개		건초별 세분화	
				1214.90-9091 (신설)	사료용 페스큐건초		
				1214.90-9092 (신설)	사료용 귀리건초		
1214.90-9093 (신설)				사료용 라이그래스건초			
1214.90-9094 (신설)				사료용 티모시건초			
1214.90-9095 (신설)				사료용 혼합건초			
제3부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1511.90	1511.90-1000	삭제	-	성분별 세분화	
				1511.90-2000	삭제		-
				1511.90-9000	HSK 3개→5개		
				1511.90-1000 (변경)	정제유		
				1511.90-20	팜유의 분획물		
				1511.90-2010 (신설)	팜 올레인		
				1511.90-2020 (신설)	팜 스테아린		
				1511.90-2090 (신설)	기타		
				1511.90-9000 (유지)	기타		
				제4부	제17류 (당류· 설탕과자)		1701.99

부	류	HS (6단위)	현 행	개선안				
			HSK (10단위)	HSK 변경 사항	품명	비고		
				1701.99-10	식품용			
				1701.99-101	사탕무 설탕			
				1701.99-1011 (신설)	백설탕			
				1701.99-1012 (신설)	갈색설탕			
				1701.99-1019 (신설)	기타			
				1701.99-102	사탕수수 설탕			
				1701.99-1021 (신설)	백설탕			
				1701.99-1022 (신설)	갈색설탕			
				1701.99-1029 (신설)	기타			
				1701.99-1090 (신설)	기타			
				1701.99-9000 (신설)	기타			
				1704.90	1704.90-2090	HSK 1개→3개		식품유형 세분화
						1704.90-20	캔디류	
						1704.90-2010 (유지)	드롭스	
						1704.90-2020 (유지)	캐러멜	
						1704.90-2030 (신설)	양갱	
						1704.90-2040 (신설)	젤리	
						1704.90-2090 (유지)	기타	
		1704.90	1704.90-9000	HSK 1개→2개		식품유형 세분화		
						1704.90-3000 (신설)	백색초콜릿	
						1704.90-9000 (유지)	기타	
		제19류 (곡물 조제품)		1904.90	1904.90-1010	HSK 1개→4개		식품유형 세분화
						1904.90-1011 (신설)	즉석밥	
						1904.90-1012 (신설)	김밥	
1904.90-1013 (신설)	도시락							
1904.90-1019 (신설)	기타							
제21류 (조제 식료품)		2103.90	2103.90-9030	삭제	-			
				2103.90	2103.90-9090	HSK 2개→5개		유형·포장 세분화
					2103.90-906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2103.90-9061 (신설)	분말상의 것		

부	류	HS (6단위)	현 행	개선안				
			HSK (10단위)	HSK 변경 사항	품명	비고		
				2103.90-9062 (신설)	페이스트상의 것			
				2103.90-9069 (신설)	기타			
				2103.90-9091 (신설)	소매포장한 것			
				2103.90-9099 (신설)	기타			
		2106.90	2106.90-9099				대체식품 세분화	
				2106.90-4000 (신설)	식물성 단백질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2106.90-5000 (신설)	세포 배양육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2107.10	HS 2028 신설호	HSK 0개→4개			성분·세울 세분화	
						2107.10-1000 (신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2107.10-2000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을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2107.10-3000 (신설)	홍삼을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2107.10-9000 (신설)	기타	
		2107.90	HS 2028 신설호	HSK 0개→4개			성분·세울 세분화	
						2107.90-1000 (신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2107.90-2000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을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2107.90-3000 (신설)	홍삼을 기본 재료로 한 식이보조제	
						2107.90-9000 (신설)	기타	
		제22류 (음료·주류등)		2202.99	2202.99-9000	HSK 1개→5개		식품유형 세분화
						2202.99-4000 (신설)	커피 함유 음료	

부	류	HS (6단위)	현 행	개선안				
			HSK (10단위)	HSK 변경 사항	품명	비고		
				2202.99-5000 (신설)	차류 함유 음료			
				2202.99-6000 (신설)	채소주스 음료			
				2202.99-7000 (신설)	두유			
				2202.99-9000 (유지)	기타			
		2203.00	2203.00-0000	HSK 1개→3개		용기·포장 세분화		
						2203.00-1000 (신설)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용기(8리터 이상)에 포장된 맥주	
						2203.00-90	기타	
						2203.00-9010 (신설)	캔, 페트병, 유리병에 포장된 맥주	
						2203.00-9090 (신설)	기타	
		제23류 (조제사료)	2303.10	2303.10-0000	HSK 1개→7개		용도·성분 세분화	
					2303.10-10	사료용		
					2303.10-1010 (신설)	감자에서 나온 것		
					2303.10-1020 (신설)	고구마에서 나온 것		
					2303.10-1030 (신설)	옥수수에서 나온 것		
					2303.10-1040 (신설)	밀에서 나온 것		
					2303.10-1050 (신설)	카사바에서 나온 것		
					2303.10-1090 (신설)	기타		
	2303.10-9000 (신설)		기타					
	2304.00		2304.00-0000	HSK 1개→2개		용도별 세분화		
					2304.00-1000 (신설)	사료용		
2304.00-9000 (신설)					기타			
2306.60	2306.60-0000	HSK 1개→4개		용도·성분 세분화				
				2306.60-10	사료용			
				2306.60-1010 (신설)	팜 너트에서 나온 것			
				2306.60-1020 (신설)	팜 핵에서 나온 것			
				2306.60-1090 (신설)	기타			
2306.60-9000 (신설)	기타							
제24류	2402.20	2402.20-1000	HSK 1개→2개		성분별			

부	류	HS (6단위)	현 행	개선안		
			HSK (10단위)	HSK 변경 사항	품명	비고
						세분화
				2402.20-101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2402.20-1090 (신설)	기타	
		2402.20	2402.20-9000	HSK 1개→2개		성분별 세분화
				2402.20-901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2402.20-9090 (신설)	기타	
		2404.11	2404.11-0000	HSK 1개→2개		성분별 세분화
				2404.11-100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2404.11-9000 (신설)	기타	
		2404.12	2404.12-1000	HSK 1개→2개		성분별 세분화
				2404.12-101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2404.12-1090 (신설)	기타	
		2404.12	2404.12-9000	HSK 1개→2개		성분별 세분화
				2404.12-9010 (신설)	가향물질을 함유한 것	
				2404.12-9090 (신설)	기타	

제5장

결론

1. 시사점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식량 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또한 수입 식량의 가격 변동은 국내 먹거리 물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 생활과 가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서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와 수급 관리는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식량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품목이나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교역량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HSK 체계에서는 여러 품목군에서 교역 물품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단일 품목 번호에 포괄되어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품목 단위의 수입 관리와 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수출 지원 측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은 가공식품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농·임·축·수산물 등의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진다. 해외 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수출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유망 수출 품목이 독립된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않아 품목별 수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수출 지원 정책의 효과를 수출 증가 여부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거나, HSK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지원 산업과 대상 품목을 식별·선정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산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요 수

출 품목을 중심으로 HSK 품목번호 신설 및 세분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HSK 분류체계 개선과 함께 표준품명 제도의 개선 및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일부 품목번호들에는 표준품명이 제정되어 있어 HSK에서 구분되지 않는 품목들을 보다 상세한 규격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세율 적용, 세관장 확인, 원산지표시 등 통관 절차상의 주요 확인 사항이 HSK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신고인이 표준품명을 정확히 기재할 유인은 크지 않아, 실제로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무역통계는 기본적으로 HSK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표준품명 단위의 무역량 통계가 현재 대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²⁵⁾, 표준품명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표준품명 체계에서만 활용되는 품목 구분을 HSK 분류체계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식의 개선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표준품명상의 물품 구분 기준이 HSK 분류체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부 사례를 검토한 결과, 표준품명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준품명 상의 세부 규격이 실제로는 해당 HSK 품목번호에 분류되기 어려운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HSK는 해설서와 분류 사례 등을 통해 분류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표준품명은 규격 정보 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앞으로 표준품명 체계의 개선 방안 마련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식량 자원은 국가 안보와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기후 후 위기, 무역 분쟁, 자원 무기화, 국제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외부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보다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HSK 분류체계 가운데 농축산물·식품 분야를 대상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수출입 관리와 무역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 체계로서 HSK가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 분류체계의 정비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식품 분야 HSK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해당 분야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무역통계 데이터를 공개하는 주요 사이트(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TRASS), K-stat 무역통계)에서는 HSK 품목번호 별 수출입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HSK에 제정된 표준품명 구분에 따른 세부 수출입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다.

2. 연구 한계점

본 연구의 개선안은 현행 HSK 분류체계에서 농축산·식품에 대한 세부 분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기타’ 품명 품목번호와 같이 물품 식별이 어려운 일부 품목번호에 무역통계 집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품목번호 세분화를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특성상 HSK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전체 품목번호 가운데 제한된 범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분석 대상 품목번호의 수가 전체 대비 적더라도, 해당 품목번호로 집계되는 수출입 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번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선안은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분류체계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 품목번호에 포괄되어 분류되는 개별 품목을 어떠한 기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품목별로 참고할 만한 상업적 분류체계가 부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 유통 형태, 관련 법령상 상품의 정의·분류, 검역·수입신고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등 가능한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물품 유형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안 도입 시 무역량 집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사전에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축적되는 규격 정보를 분석하여, 품목번호 세분화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품목번호별 교역량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의 실효성과 무역통계 작성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는 농축산물·식품 산업의 생산물이 분류되는 HSK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은 2028년 예정된 HS 개정에 따른 HSK 수정안 준비 과정에서 함께 검토·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정 HS에 따라 기존 HSK 품목번호를 단순히 재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HSK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반영함으로써, HS 개정을 계기로 분류체계의 실용성과 무역통계의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HSK 세분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물품 분류에 활용되고 있는 구분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검토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분류 기준을 무역통계 활용과 연계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수출입 통관 단계부터 국내 유통·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농축산물·식품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산업 분야의 분류체계로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HSK 체계 개선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HS 차원의 개정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체식품과 같은 신식품 분야처럼 국제적으로 분류 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분류 기준과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공통 기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최세균 외. (2006).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 이정환 외. (2007).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낙농육우협회 연구보고서.
- 임정빈·서진교·정혜련. (2008).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35(2), 447-480.
- 진현정 외. (2016). 가공식품 표준분류체계 구축 사전연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정민국 외. (2017). 농축산물 품목분류 및 HS 코드 도감(모니터링 품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희진 외. (2018). 담배 첨가물 규제 및 담배성분 정보 공개를 위한 연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박미성·박시현·이용선. (2020). 대체식품의 현황과 대응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190호, 4.
- 신성식·최해범. (2020). HSK의 개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1(2), 63-85.
- 문심명. (2021). 가향담배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변재연. (2021).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 김성채. (2022).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김진규·박신성. (2024). 우리나라 농림축수산물 AG 품목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세학회지, 25(2), 53-71.
-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이희영·엄지혜·윤호정. (2024). HS 2028 개정 제2107호(식이보조제) 신설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연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024 식품 등의 생산실적
- 이지수. (2025). 대체식품의 HS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법학회, 10(1), 37-61.
- 통계청. (2025).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5). 2024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간편식.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5). 2024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커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인터넷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URL:<https://tradedata.go.kr/cts/index.do>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URL:<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URL:<https://www.pqis.go.kr/minwon/index.html>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URL: <https://impfood.mfds.go.kr>

한국무역협회. K-stat. URL:<https://stat.kita.net/>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25 HTS Revision 32). URL:<https://hts.usitc.gov/>

USMEF. U.S. Pork Exports Record-Large in 2024; Beef Export Value Trends Higher(2025.02.06.). URL:<https://www.usmef.org/news/u-s-pork-exports-record-large-in-2024-beef-export-value-trends-higher-1>

부록

인덱스 (품목별 검토 의견)

	품목번호	품목	쪽 번호
1	0201.30-0000	신선·냉장 쇠고기	52
2	0202.30-0000	냉동 쇠고기	52
3	0203.29-9000	냉동 돼지고기	61
4	0302.14-0000	신선하거나 냉장한 연어	68
5	0303.67-0000	냉동 명태	71
6	0306.17-1090	기타 냉동 새우류	75
7	0306.33-9000	살아있거나 신선·냉장한 게	79
8	0307.43-2090	냉동 오징어	82
9	0803.90-0000	신선하거나 건조한 바나나	88
10	0901.11-0000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92
11	0901.21-0000	로스팅한 커피	92
12	1001.99-2090	제분용 밀과 메슬린	97
13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물	102
14	1511.90-9000	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107
15	1701.99-0000	기타 사탕수수당 등	111
16	1704.90-2090	기타 캔디류	117
17	2103.90-9090	기타 소스·혼합조미료	124
19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	133
20	2202.99-9000	기타 음료	145
21	2203.00-0000	맥주	153
22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류	157
23	2304.00-0000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고체 유박	161
24	2306.60-0000	팜 너트·핵 오일 케이크와 고체 유박	164
25	2404.11-0000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168
26	-	즉석식품류	172
27	-	대체식품	176
28	-	가향담배	180

농축산식품(제1부~제4부) HSK 품목분류체계 개선방안



(07788)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7층

Tel 02-3416-5000 Fax 02-512-8888 Email cs@kctdi.or.kr



ISBN 978-89-6162-178-6